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01-10

#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www.mss.go.kr](http://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1-1①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
1-1②	• 신성장기반자금	20
1-1③	• 재도약지원자금	26
1-1④	• 긴급경영안정자금	30
1-1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4
1-1⑥	• 정책자금 이차보전	38
1-2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40
1-3	• 수출바우처	44
1-4	• 수출인큐베이터	48
1-5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52
1-6	• 글로벌협력기반구축	55
1-7	•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57
1-8	•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60
1-9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62
1-10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사업	65
1-11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69
1-12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72
1-13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76
1-14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78
1-15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81
1-16	• 연수사업	84

1-17	• 청년창업사관학교	87
1-18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91
1-19	•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94
1-20	• 레저정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97
1-21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100
1-22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103
1-23	• 구조혁신지원사업	107
1-24	•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110
1-25	•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113
1-26	• 진로제시 컨설팅	115
1-27	• 회생 컨설팅	118
1-28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122
1-29	• 내일채움공제	125
1-3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28
1-31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130

## 제2부 | 신용보증기금

2-1	• 신용보증	134
2-2	•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139
2-3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42
2-4	• 보증연계투자	145
2-5	• 투자옵션부보증	149
2-6	• 유동화회사보증	153
2-7	•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58
2-8	• 매출채권보험	161
2-9	• 잡매칭(Job Matching)	166
2-10	• 컨설팅	168
2-1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171

2-12 • 중소기업팩토링 .....	174
2-13 • 녹색보증 .....	177
2-14 • 녹색 공정전환 보증 .....	180

## 제3부 | 기술보증기금

3-1 • 2023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84
3-2 • 기술보증 .....	186
3-3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189
3-4 •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192
3-5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	196
3-6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	200
3-7 •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제도 .....	203
3-8 •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	207
3-9 • 클린플러스 보증 .....	211
3-10 • 원클릭 보증 .....	215
3-11 • 문화산업완성보증 .....	218
3-12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221
3-13 • 기후환경보증 .....	224
3-14 • 신재생에너지보증 .....	226
3-15 • 탄소가치평가보증 .....	229
3-16 • R&D 보증 .....	232
3-17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236
3-18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239
3-19 • 기술평가 .....	243
3-20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	246
3-21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249
3-22 • 지식재산공제 .....	252
3-23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	255

3-24	· 기술신탁관리	258
3-25	· 기술임치	261
3-26	· TTRS(증거지킴이)	263
3-27	· 보증연계투자	265
3-28	· 벤처투자연계보증	268
3-29	· 엔젤투자연계보증	271
3-30	· VC투자매칭특별보증	275
3-31	· 벤처확인평가	279
3-32	·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282
3-33	· 중소기업팩토링	285

## 제4부 | 기업은행

4-1	· 2022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288
4-2	·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289
4-3	· IP사업화자금대출	291
4-4	· IBK강소기업대출	293
4-5	·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295
4-6	· IBK문화콘텐츠대출	296
4-7	· IBK시설투자대출	298
4-8	· IBK토지분양협약대출	300
4-9	·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302

##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5-1	· 202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306
5-2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307
5-3	·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309
5-4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311

5-5 • 기술금융 프로그램	313
5-6 •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316
5-7 •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318
5-8 •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320
5-9 •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322
5-10 •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324
5-11 •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327
5-12 •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330
5-13 • 해외사업금융	332
5-14 • 수입금융(수입자금)	335
5-15 • 이행성보증	337
5-16 • 무역금융(수출관련)	339
5-17 • 해외온렌딩	342

## 제6부 | 한국산업은행

6-1 • 온렌딩대출	348
-------------	-----

## 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7-1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352
7-2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55
7-3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57
7-4 • 수출신용보증(매입)	359
7-5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361
7-6 • 단기수출보험	363
7-7 • 중소기업Plus+보험	367
7-8 • 환변동보험	369
7-9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373
7-10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376



##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 R&D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384
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87
1-3 • 창업성장기술개발	391
1-4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395
1-5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398
1-6 • 산학연 Collabo R&D	402
1-7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405
1-8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408
1-9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411
1-10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414
1-11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417
1-12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421
1-13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423
1-14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425
1-15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R&D 지원	427
1-16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430
1-17 •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433
1-18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436
1-19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439
1-20 • 지역특화산업육성+(R&D)	442

1-21	지역특화산업육성	445
1-22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448
1-2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452
1-2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455
1-25	AI 문제해결 컨설팅 실증(정보화)	457
1-26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460
1-27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463

##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468
2-2	사업조정제도	473
2-3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478
2-4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481
2-5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484
2-6	수출컨소시엄 사업	487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490
2-8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493
2-9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495
2-10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497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502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507
2-13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510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513
2-15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516
2-1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519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522
2-18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525
2-19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527

2-20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529
2-2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	532
2-22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535
2-23	중소기업 ESG 경영·탄소중립 대응지원	538

##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42
3-2	상권정보시스템	546
3-3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549
3-4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552
3-5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554
3-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556
3-7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559
3-8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562
3-9	경험형 스마트마켓	565
3-10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568
3-1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570
3-1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572
3-1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576
3-14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579
3-15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582
3-16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585
3-17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588
3-18	온라인 판로지원	590
3-19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592
3-20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596
3-2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599
3-22	희망리턴패키지	602

3-2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606
3-24	· 소공인특화자금	609
3-25	· 성장촉진자금	612
3-26	· 일반경영안정자금	614
3-27	· 특별경영안정자금	617
3-28	· 스마트자금	621
3-29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624
3-30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627
3-31	· 온누리상품권 발행	631
3-32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635
3-33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639
3-34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사업	642
3-35	· 전통시장 화재공제	646
3-36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649
3-37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52

##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4-1	· 코참경영상담센터	656
4-2	· 계약서 검토 서비스	658
4-3	·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660
4-4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662

##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 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	668
5-2	· 이동 KOTRA	671
5-3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674
5-4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676

5-5 • 수출상담회 .....	678
5-6 • 무역사절단 .....	680
5-7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682
5-8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684
5-9 • 한국우수상품전 .....	686
5-10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	689
5-11 • 디지털 마케팅(buyKOREA) .....	691
5-12 •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	692
5-13 • 수출바우처사업 .....	694
5-14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697
5-15 • 지사화사업 .....	700
5-16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702
5-17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	705
5-18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 사업 .....	708
5-19 • CES 혁신상 수상 지원 .....	710
5-20 • KOTRA 글로벌점프300 .....	712
5-21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715
5-22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	718
5-23 •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	721
5-24 • 해외IT지원센터 .....	723
5-25 • GMV (Global Mobile Vision) .....	726
5-26 •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	728
5-27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	731
5-28 •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	733
5-29 • 서비스 BM 사업 .....	735
5-30 • 에듀테크 해외 진출 지원 .....	737
5-31 •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	738
5-32 •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	740
5-33 •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사업 .....	741
5-34 • 서비스 수출대전(Korea Service Market) .....	743

5-35	•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745
5-36	• 방산물자 교역지원	746
5-37	•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749
5-38	•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	751
5-39	•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753
5-40	•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755
5-41	•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757
5-42	• 경제외교 활용포털	759
5-43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760
5-44	• 수출인큐베이터	763
5-45	•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765
5-46	•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767
5-47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769
5-48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771
5-49	• 국내복귀기업 지원	775
5-50	• 글로벌 M&A 지원사업	777
5-51	• KOTRA 글로벌 ESG + 사업	779
5-52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782
5-53	•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784
5-54	• 열린무역관	786
5-55	• 경제외교 활용 사업	788

## 제6부 | 한국무역협회

6-1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790
6-2	•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792
6-3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794
6-4	•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796
6-5	•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798

6-6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800
6-7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803
6-8	•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805
6-9	•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806
6-10	•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808
6-11	• 해외 현지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810
6-12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812
6-13	•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814
6-14	•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816
6-15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818
6-16	•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821
6-17	•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823
6-18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825
6-19	•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830
6-20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832
6-21	•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834
6-22	•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836
6-23	•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838
6-24	• 한·중 FTA, RCEP 현장방문컨설팅	840

##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1	• 기업간 거래공정화	844
7-2	• 성과공유제	849
7-3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852
7-4	• 상생결제제도	855
7-5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858
7-6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861

7-7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864
7-8 · 기술보호 지원반 .....	866
7-9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868
7-10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	871
7-11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	874
7-12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876
7-13 · 기술자료 임치제도 .....	879
7-14 · 기술보호 역량강화 .....	882

## 제8부 | 창업진흥원

8-1 · 예비창업패키지 .....	886
8-2 · 초기창업패키지 .....	889
8-3 · 창업도약패키지 .....	892
8-4 · 재도전성공패키지 .....	895
8-5 · 팁스(TIPS) .....	897
8-6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902
8-7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904
8-8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906
8-9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909
8-10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육성) .....	912
8-11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915
8-12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918
8-13 · 창업중심대학 .....	921
8-14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924
8-15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	927
8-16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930
8-17 · 창조경제혁신센터 .....	932



8-18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934
8-19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937
8-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940
8-21	판교 창업존 운영	943
8-2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946
8-23	청소년 비즈쿨	949
8-24	혁신창업스쿨	951
8-25	메이커 활성화 지원	954
8-26	도전! K-스타트업	957
8-27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959
8-2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961
8-29	창업지원포털(K-Startup)	964
8-30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966

## 제9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9-1	전경련경영자문단 무료경영자문	970
9-2	경영닥터제	973
9-3	중소기업 경영진단	975
9-4	맞춤형 교육	977
9-5	자문 우수기업 선정	979
9-6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981
9-7	중장년내일센터	983

## 제10부 | 기타

10-1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사업 공모전)	988
10-2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991
10-3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993

10-4	•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997
10-5	•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999
10-6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001
10-7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1005
10-8	•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1007
10-9	• 문화산업완성보증	1010
10-10	• 스포츠 창업 지원	1015
10-11	•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1017
10-12	•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1020
10-13	• IP제품혁신 지원	1022
10-14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舊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1025
10-15	•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舊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028
10-16	•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사업	1031
10-17	•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034
10-18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1036
10-19	• 환경창업대전	1039
10-20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1041
10-21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1045
10-22	•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지원	1048
10-23	• 미래환경산업산업육성용자	1050
10-24	•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1054
10-25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1057
10-26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1060
10-27	•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1063
10-28	•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사업	1065
10-29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1068
10-30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1072

10-31	•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 .....	1076
10-32	•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	1078
10-33	•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 .....	1080
10-34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	1083
10-35	• 탄소중립, 그린 ODA 사업(프로젝트 ODA) ...	1085
10-36	•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	1086
10-37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088
10-38	• 다자개발은행(MDB)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 .....	1090
10-39	• 환경산업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	1092
10-40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사업 .....	1094

# 제 1 편

---



# 유관기관 (금융기관)

## 제1편

### 유관기관 (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2부 ▶ 신용보증기금
- 제3부 ▶ 기술보증기금
- 제4부 ▶ 기업은행
-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 제6부 ▶ 한국산업은행
- 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2편

###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제6부 ▶ 한국무역협회
-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8부 ▶ 창업진흥원
- 제9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제10부 ▶ 기타

# 제 1 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5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재산업
  -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에 공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에 공지
-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별 대출 금리에서 0.3%p 차감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대기업, 자금조달 취약계층, 성과창출 기업 등에 최대 0.5%p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정책우대)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및 여성기업 0.1%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 '고용증가+수출향상+탄소저감' 등 대출건당 최대 3개 유형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 가능
    -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스케일업금융, 청년전문창업자금 등)

- (고용증가)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 전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출향상)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탄소저감)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 전연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 4.17% 이상 감축한 탄소감축 우수기업

## 용자방식

- (직접·대리 대출)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성장공유형 대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

## 용자절차



- \* 인천 및 부산 지역 신청기업의 경우 상기 절차와는 별도로 「접수기간 내 전수 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절차 운영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용자 절차 운영
-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용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 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증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 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④ 온라인 용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 까지 증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⑤ 기업심사 : 증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 ⑥ 용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용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차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작간점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 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 가능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기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3,68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2,3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원), 신성장기반 자금(1조 4,8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03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2022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 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 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 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증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증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증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지역조례·규칙, 부처별 지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 ● 창업기반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및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용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용자결정 후 직접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대출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기간

-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방식으로 지원 불가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300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전환, 스케일업(Scale-up)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 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용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용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용자방식

- 혁신성장지원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증권화하여 민간 매각 및 중진공이 인수하고 회사채 인수 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 조달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 범위 :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용자공고 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천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스케일업금융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자금지원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구분이 없음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자금, 제초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스케일업금융)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적용
  -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스케일업 금융 발행 별도 공고 참조([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스케일업금융
  - 일반사채(SB) : 5년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 주식연계형사채(CB, BW)
    - \* (CB) 5년 만기 일시상환, (BW) 5년 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 스케일업금융
  - 120억원 이내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 스케일업금융은 융자공고 별도 게시('23.3월 예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및 성장공유형 대출



- 스케일업금융



## 지원규모

---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4,850억원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재도약지원자금

신사업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재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li> <li>•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li> <li>•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li> <li>•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li> <li>•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li> </ul>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 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계획</li> </ul>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자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li> <li>• Sales &amp; LeaseBack 참여(선정)기업</li> <li>• 국세 물납 법인</li> </ul> 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구분	지 원 요 건
재창업 자금	<p>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 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p> <p>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자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 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p> <p>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p> <p>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li> <li>•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li> <li>•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li> </ul>

##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li> </ul>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li> <li>•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선제적 구조개선 - 2.5%고정금리, 운전자금(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포함 및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10년, 거치 (담보)4년, 신용(3년) 포함) 지원</li> </ul>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li> </ul>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총 4,030억원
  - 사업전환 2,500억원, 구조개선자금 780억원, 재창업자금 750억원
  - \* '22년 지원현황 : 재도약지원자금 4,200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2, 9922)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 ‘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 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 ‘용자제한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④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참고15는 홈페이지 내 융자공고 참고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용자방식

- 직접대출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1,500억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용자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 용자범위

- (직접대출) 운전자금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포함)·매입 목적은 지원 불가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기간

- (직접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30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1,000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



## 정책자금 이차보전

산업구조 변화 대응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민간금융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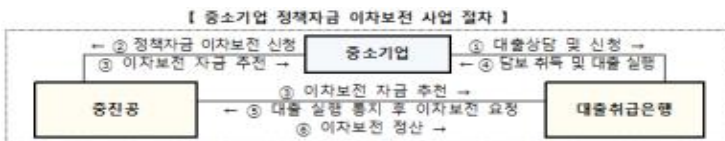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 KDB, IBK,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



## 신청·접수

---

- 추후 별도 공고 예정('23년 3월 중)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

### 지원범위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 신청전월 1일 이후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할인율

- 연 3.40%~4.55% 내외(구매기업의 신용위험등급,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이 결정)

### 지원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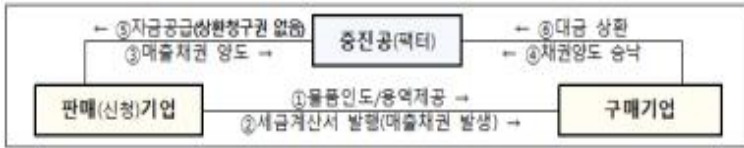
- 90일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지원한도

- (판매기업)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연간 30억원 이내
  -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의 1/3 (회계정보 기준)

## 지원방식

- 증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신청·접수

- 증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375억원

## 팩토링 제한기업

- 공통사유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 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판매기업

⑩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 상기내용은 '22년 지원기준으로 변동가능, 상세사항 '23년 공고 참조

### 용어 설명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수출바우처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 물류전용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 \* 트랙별 40~120백만원 지원 (바우처 발급 총액 기준)

트랙		기업 수	
신시장 개척 (1,200개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000	
	튼튼한 내수기업	100	
	수출국 다변화	2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 $\alpha$ )	성장 단계	글로벌 유망기업	500
	글로벌 성장기업	300	
	글로벌 강소기업	200	
	글로벌강소기업+	$\alpha$	
전략분야 (200개사)	브랜드K	100	
	부처 협업(문체, 복지부)	100	
일반		500	
물류전용 바우처		2,500	
합계		5,400+ $\alpha$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법인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차·향락, 건강유해 등)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매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li> </ul>
홍보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li> </ul>
조사/일반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 바이어 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li> </ul>
통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li> </ul>

지원영역	지원항목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li> </ul>
해외규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li> </ul> <p>*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p>
특허/지재산권/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특허·지재산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li> </ul>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 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li> </ul>
홍보/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li> </ul>
브랜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li> </ul>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li> </ul>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li> </ul>
국제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국내 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li> </ul>

###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 선발절차, 일정, 기준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수출기업 지정제도(두드림, 유망, 글로벌강소)를 통합하고, 수출바우처 트랙으로 신설
  - \* 수출지정제도 트랙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 시, 지정증 발급 및 바우처·R&D·금융을 패키지로 지원 (1,000개사 내외)
- ▶ 바우처 사용을 제고를 위해 상반기 모집 비중 확대 (80→90%) 및 하반기 모집 기업도 차년도 2월에 바우처 사용 종료
  - \* 하반기 모집기업 사용기간 : (기존) '22.7~'23.4 (10개월) (변경) '22.7~'23.2(9개월)

###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처리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출마케팅활동

### 지원규모

- 5,400개사 내외

### 문의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출장지원, 현지파견직원의 행정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수시(일부 사업은 공고 예정)
- (입주)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공고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코트라 공동 물류사업 참여기업, 혁신성장포럼기업(구\_중진공 Family 기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기업/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12개국 20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 ('22년 10월 기준) 총 267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중국)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선전, (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알마티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6, 967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예비창업자 등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연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용어 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국가별 혁신거점에 설치된 7개국 K-스타트업 센터에서 현지시장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국가

- 7개국(스웨덴, 핀란드,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프랑스)  
\* (거점형) 시애틀, 파리, 스톡홀름, 싱가포르, (프로그램형) 텔아비브, 헬싱키, 뉴델리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투자 및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KPI워크숍 : 참가기업-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목표 및 세부 활동계획 등 현지진출 KPI 최종 수립
  - 진출준비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를 매칭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현지 진출전략 최종 점검 및 수정
  - 현지 프로그램 : 8주 동안 참여 창업기업의 KPI 달성을 위해 BM 고도화, 협력 파트너사 발굴, 투자사 매칭 등 현지 밀착지원
  - 통합 데모데이 : 우수 창업기업의 더 넓은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KSC 통합 데모데이' 개최



- 현지 사무공간 입주지원(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 패키지 지원 : 현지 창업정책 및 투자 동향, 법률/규제, 특화업종의 시장현황, 주요 경쟁사, 비자취득, 법인설립, 생활정보 등 상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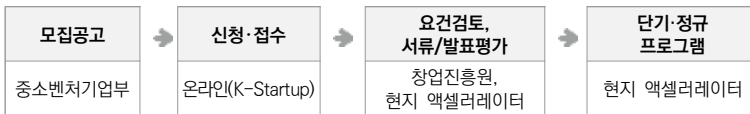
## 신청·접수

- '23.3월

## 제출서류

- 국·영문 사업신청서 등

## 처리절차



\* 위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센터입주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규모

- 프로그램 지원 120개사 내외

## 문의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 02-2039-1652, 168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2, 9676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형은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만 수행하는 KSC이고, 거점형은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입주공간, 법인설립, 법률·회계·마케팅 컨설턴트의 자문 등의 후속지원을 포함하는 KSC입니다.

## 용어 설명

**엑셀러레이팅** :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 노하우, 시장 접근법, 투자 유치를 위한 IR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글로벌협력기반구축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

###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분야별지원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li> <li>- 해외 협력파트너 일선(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li> <li>-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li> </ul> </li> </ul>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li> <li>-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상담회 지원</li> </ul> </li> </ul>

### 신청·접수

-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확정시 ‘중진공 및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kosmes.or.kr, www.gobizkorea.co.kr)’의 ‘공지사항’ 및 ‘수출지원/마케팅’을 통해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92, 968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APEC 역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 · 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신흥국과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기 원하는 현지 기업과 해외로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발굴하여 매칭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 \* (기술수출유형) 라이선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공정이전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수출금지 품목 및 기술을 신청하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술교류단 파견 및 온라인상담회 참여 기회 제공

- 통역비, 현지 이동차량비, 기술교류상담장 등 수출활동 지원
- 현지기업발굴 및 매칭, 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상 중재 지원
- 국내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용 지원
- 현지 기업과의 교류성과달성 가능 시, 별도 검토를 통한 현지 이동차량 및 통역, 계약서 법률자문 등 상시교류 지원
- 기술교류플랫폼(www.G-TEP.or.kr)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교류 사업 참여기업의 기술DB구축 및 국내외 기업간 상시교류 지원
-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 협력(G2G)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에 기술 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교류지원
  - (개소)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존 온라인상담회 형식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상황에 따라 현지 기술교류단 파견방식과 병행 가능

#### 신청·접수

- [공급기술등록 및 진단]
  -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 접속하여 공급기술 등록
  - www.g-tep.or.kr접속 및 로그인 → PMS클릭 → 공급기술등록
  - 기술사업화 코드를 통한 공급기술 진단
- [정기 기술교류 신청]
  - 공급기술이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수행기관별, 국가별 모집 시기에 따라 정기 기술교류 신청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 신청 온라인화

- \* 정기기술교류, 상시기술교류 등 사업 신청 시 평가서류, 승인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출 가능

### 문의처

- 해외기술교류 홈페이지(www.g-tep.or.kr)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7, 9678
- 이노비즈협회 : 031-628-9625, 9697
- 기정원 : 044-300-0445



### Q&A

**Q**

현지 기술교류상담회 참여시 항공, 숙박비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기술소개서 영문번역, 현지통역, 현지 상담장 및 차량임차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료, 숙박비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 용어 설명

**공급기술** :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하는 기술

**수요기술** : 해외 현지기업이 국내기업에게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



##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 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학연 기술교류 및 R&D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중소기업의 기술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 \* 연구기관·대학 보유기술 기반 기술교류회, R&D전문가의 1:1 자문·코칭 기반 R&D멘토링 등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포럼·세미나, IR·피칭, 협력R&D 발굴·기획, 정책제안 등 네트워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율 구성·운영
  - (참고) '22년 네트워크 분야 : 시스템반도체,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바이오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지역기업의 기술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위해 기술교류회 등을 온·오프라인 운영방식으로 병행 운영

###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접수 후, 기술교류 프로그램 참여  
- [bridge.smtech.go.kr](http://bridge.smtech.go.kr)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각 네트워크별 지원기관에 기술교류 프로그램 참여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044-300-0442, 0444, 031-739-6910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044-300-0442, 0446



### Q&A

- Q**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등 기술교류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인가?  
**A** 맞습니다. 기술혁신센터 프로그램(기술교류회, R&D멘토링 등),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프로그램(포럼·세미나, IR·파칭 등)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전시관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활성화
  - ①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교육,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
  - ②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물류 및 인프라 구축
  - ①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량집적 등을 통한 물류비 할인 지원

- ② (온라인수출 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운영,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지원규모 확대

##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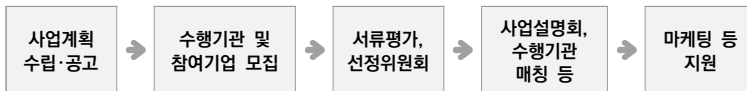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통 : 상품의 시장 경쟁력(수출품목 시장성,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해외 규격인증 획득 여부, 현지어 포장) 등
- ▶ 공동물류 : 주요 수출국, 역직구 쇼핑몰 사이트 보유 여부,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 희망 물류사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6,000개사 내외(393억원)

## 문의처

---

- 고비즈코리아 : [kr.gobizkorea.com](http://kr.gobizkorea.com)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http://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kr.gobizkorea.com](http://kr.gobizkorea.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사업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현장코칭(실습), 취업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지원대상

-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 (지원기업) 구인애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지원기업) 대·중견기업 사업단의 협력 중소기업
  - (지원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지원기업) 현장 숙련인력 확보가 어려운 제조 중소기업, 숙련 기술 전수가 필요한 중소기업(150개사)
  - (지원인력) 해당 직무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300명)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 (지원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중소기업(200개사)
  - (지원인력) 스마트공장 취업희망 구직자(300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 진로직업 상담, 입사지원서류 및 면접 코칭 등 일대일 맞춤 취업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AI모의면접, 인적성검사 등), 취업연계 등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맞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
    - \* (사업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주당 10만원 상당 훈련수당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직무교육과 1:1 현장코칭·실습을 통해 기업현장에 적합한 숙련 인력을 육성, 공급하여 구인난 및 구직난 해소 지원
    - \*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 (현장코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등을 통한 전문가 코칭(최대 12회)
    - \* (기업보조비) 기업에게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 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매칭, 직무 교육을 통해 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급
    - \* (직무 기초교육) 스마트공장 도입 및 구축, 운영 관련 온라인 연수(3개 과정)
    - \* (직무 심화교육) 스마트공장 현장맞춤연수 심화교육(5회, 1회/5시간)
    - \* (기업보조비) 기업에게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최대 3개월)
    - \* (참여보조비) 참여자에게 실습기간 내 월 20만원(최대 3개월)

## 신청·접수

- 구직자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https://jobkosmes.or.kr>)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구인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https://jobkosmes.or.kr>)  
사업별 구인공고 등록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모집공고 상 참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지원
-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및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유의사항
  - 기업 당 지원한도 : 제조업 3명, 기타 업종 1명
  - 채용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무기계약직(6개월 이상 계약직), 정규직 등

## 처리절차

-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회원가입, 구인공고

상담·매칭

취업연계

사후관리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사업단  
선정

기업선정·  
과정개발

구직자  
선정·매칭

직무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모집·  
매칭

협약체결

직무교육

현장코칭·  
실습 실시

취업연계

사후관리

-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사업

모집·  
매칭

협약체결

직무교육  
(기초교육)

심화교육  
(현장강의, 실습)

취업연계

사후관리

## 문의처

---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https://job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유의사항) 산학 맞춤형교육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사업단(컨소시엄)
  - 사업단은 전문대 1개, 직업계고 2개 이상, 중소기업 20개 이상으로 구성
  - \* 전문대 30명 이내 (단, 직업계고는 학교당 20명 내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 유희주점업, 무도 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핑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학생활동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직업교육, 전문대 진학,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우대
기업	전문기술인력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우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참여고교-전문대학 협약범위 확대
- \* (기존) 특성화고-전문대학, (확대) 직업계고-전문대학

##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단 사업 추진 절차



- 지원대학(10개대학, 22개 직업계고) (예산 3,220백만원)
  - \* '21년 지원현황 : 9개대학, 17개 특성화고 지원 (예산 2,898백만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운영계획 및 전략
  - \*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협력기관과의 연계·사후관리 방안 등

- 교육 수행여건

\* 당해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경쟁우위 강점 등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044-204-7797,779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75,9876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Q&A

Q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대응자금** :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참여 학교, 참여기업 등에서 별도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 2년과정)을 개설하여 중소·중견 근로자(취업예정자) 직무역량 향상 및 학위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학과별 학생 정원은 20명 내외로 운영(박사과정은 10명 내외)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입학 가능
    - \* 학과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채용형 방식 가능
  - 채용조건형 영마이스터 학과 신입생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졸업생(졸업예정자)만 가능
    - \* 우선선발 조건 : ①기능경진대회 입상자, ②성적 상위 10% 이내
- (유의사항)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3자 계약 체결 후 학위과정 이행,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1~2년) 협약기업에서 의무근무
  - 졸업 후 재교육형은 1년, 동시채용형·채용조건형은 2년간 협약 기업에서 의무근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 내용

- ‘재교육형’ 및 ‘채용조건형’ 등 2개 유형 지원

구분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참여 요건	학생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참여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지원 내용	학생	기준 등록금 65%(석·박사), 85%(전문학사·학사)	기준 등록금의 100%
	대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운영형태		주말·야간 과정	전일제 과정
의무근무		졸업 후 1년(동시채용형은 2년)	졸업 후 2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준등록금 인상
  - \* 기준등록금('22년 기준) : (석·박사) 292만원, (학사) 235만원, (전문학사) 200만원
  - \*\* 석·박사 65%, 학사·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채용조건형(학위와 상관없이 100%), 중견기업 40%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대학은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 사업 추진 절차



● 지원대학 (51개 대학, 79개 학과) (예산 129억원)

\* '21년 지원현황 : 48개 대학, 69개 학과 지원 (예산 119억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운영계획 및 전략
  - \*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협력기관과의 연계·사후관리 방안 등
- 교육 수행여건
  - \* 당해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경쟁우위 강점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044-204-7797, 779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75,9876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Q&A**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자는 계약학과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합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 1.성과급, 2.성과보상공제, 3.임금수준, 4.우리사주, 5.복지기금 운영, 6.스톡옵션 7.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등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 지원 내용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상
①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취업(산학)맞춤반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3학년생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중소기업, 1~3학년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교사
②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활동	중소기업, 1~3학년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1~3학년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학교
③ 특성화 마인드 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1~3학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교사, 1~3학년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교사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학교)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http://smes.go.kr/sanhakin))에 게시된 공고통해 확인)
  - (참여희망기업) 회사소개서(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고용보험가입내역서(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제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승인 후 특성화고와 협약 진행
- 사업 추진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육성과 : 044-204-7794
- 중소기업청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http://smes.go.kr/sanhakin)) 참고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참조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

### 지원대상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 ② 성과보상기금공제
- ③ 임금상승률
- ④ 우리사주조합
-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⑦ 기타유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참여, 복지플랫폼 활용 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반영
- 중기부 공모사업 평가 시 점수반영
- 성과공유 우수기업 대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세계 혜택(단, 성과급 유형으로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한함)

-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성과급 수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공제

###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19조 개정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10% → 15% 법인세 공제액 증가
- ▶ (추가유형) 여가친화인증기업을 성과공유 유형으로 편입시켜 성과공유 저변 확대

## 신청·접수

- 산학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서류 검토 후 승인
- (제출서류) 고시\* 유형별 도입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 중소기업부 고시(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 (승인과정)

신청·접수(상시)

제출 서류 확인

승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통)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 여부 확인
- ▶ (도입) 성과공유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서류(도입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평가하여 지정)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035, 9825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Q&A

Q

세제지원 혜택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A

성과공유 유형 중 경영성과급 유형으로 도입 지정을 받아야 하며,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35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 용어 설명

**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1.성과급, 2.성과보상공제, 3.임금수준, 4.우리사주, 5.복지기금 운영, 6.스톡옵션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등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교육훈련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및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50% 감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평가지표 개선) 서면·현장 평가 등에서 중복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표를 세분화하여 업종별 객관적인 평가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평가 신뢰도 향상
- ▶ (가점부여)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기업 가점 부여

###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 (선정과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정성평가) CEO 의지, 일자리 양·질, 교육 훈련 정도 등을 방문하여 평가
-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심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 Q&A

**Q**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 전 재신청 하시면 지정일로부터 다시 3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Q** 3년 미만의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 3년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재무제표 평가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여 진행합니다.

### 용어 설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지원내용

- (직무역량향상연수) 스마트제조, 기술, 품질, 창의인재(경영) 등 공개집합교육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정책연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 교육 등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 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부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기업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부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DX, ESG 등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스마트제조 수준별 교육 세분화, 지역특화산업 연수 확대

### 신청·접수

- (직무·정책·맞춤연수) <http://sbti.kosmes.or.kr>
- (이러닝연수) <https://cyber.kosmes.or.kr>
- (마이크로러닝) <https://micro.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 직무역량향상연수는 연수비 할인제도 운영,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22년 신규 개설)	30%

\* 연수비 할인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증빙서류는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직무·정책·온라인 연수), 맞춤형연수 400개사 내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벤처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 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 중소벤처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 중소벤처기업충청연수원(천안) : 041-559-922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 기업인력연수처(온라인연수) : 031-490-1288



##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 \* 투자 역량을 보유한 민간운영사가 청년창업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부터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22년 대전 시범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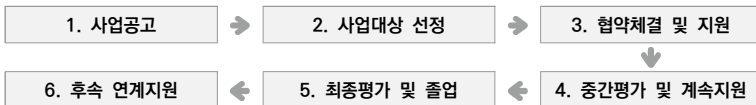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3년 사업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915명(개사), 예산 845억원
  - \* '22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915명(팀)

## 문의처

###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 (안산, 구리)	(안산) 031-490-1351, (구리) 031-554-2784~8
	서울	02-2130-1431~6
	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6, 9268-9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2-9
	충북(청주)	043-903-9357~8
호남권 및 제주	광주	062-250-3031~2, 303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8~20
	전남(나주)	061-331-8708
	제주	064-759-9649
영남권	대구	053-656-8176-8
	경북(경산)	053-819-5053
	부산	051-305-9930~3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 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D.N.A.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지원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 (예비)창업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글로벌 D.N.A. 교육)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 ① D.N.A 특화교육 : 국내 D.N.A 기술교육 및 현업전문가의 기술 사업화 사례교육

- ② 실전 프로젝트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술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 ③ 글로벌 대기업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기술교육
  - \* 글로벌 D.N.A 선도기업(AWS, MS, NVIDIA, Googlecloud 4개사, '21년 기준) 참여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탐티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여 밀착·보육 실시
  - \* Techstars, 500 Startups, SOSV, Startupbootcamp, Plug and Play 참여 (5개사, '21년 기준)
- (사업비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 입교팀 평가(중간·성공)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지급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G-ROUND) 운영
  - \* 사업화 지원체계 다양화 및 스케일업을 위해 졸업/입교기업 대상 투자유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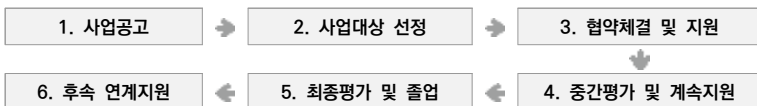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60명(개사), 예산 109억원
  - \* '22년 지원현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팀)(예산 109억원)

##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02-6735-1333)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 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mismatch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학력·전공과 무관,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지원이 안 되는 자

-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공지능 특화교육)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4단계에 걸쳐 10개월간 집중 운영
    - ① 인공지능 초급과정 :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 공통과정 운영
    - ② 인공지능 중급과정 :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관리 등 운영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이해
    - ③ 인공지능 특화과정 : 데이터 엔지니어링(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처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머신러닝·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이해)
    - ④ 산업 융합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캐글(Kaggle)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벤처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
- \* 전세계 시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시경진대회 플랫폼(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 (스타트업 채용기회 마련) 인공지능 개발자 채용 의사가 있는 스타트업 풀을 구축하여 교육생과의 매칭데이 운영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인공지능 개발자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 데이터엔지니어(DE),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DS) 분반 운영
- ▶ 이어드림 창업트랙 정규과정 편성
  - \* 창업 기본·역량강화 교육 및 실전 데모데이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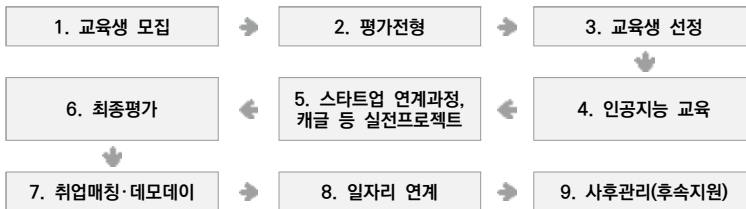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류평가(요건확인) → 적성검사 → 심층면접
  - \* 적성검사 : 자격검토, 인적성(IT분야 등) 및 인공지능 상식 평가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0명, 27억원

##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2-6735-1342~3)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A

교육 장소는 서울 홍대 스파크플러스(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86, LC홍대타워)입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A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 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 우대조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비율)	항 목	내 용	비 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 2년 이내</li> <li>•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li> </ul>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 2년 이내</li> <li>•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li> </ul>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23년 1월~2월중 사업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 평가로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3년 사업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 055-751-9854, 9858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A

Q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지원제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내 '23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등의 지원으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뿌리기술,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기업 중 탄소중립이 시급히 필요한 공정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상세 지원업종은 별도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사업공고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진단·설계 컨설팅) 기업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 에너지 현황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지원



-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혁신 솔루션(FEMS, MES 등)과 연계된 제어기, 계측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고효율 설비개체)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에너지 절감 성과의 명확한 측정을 위해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내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의무화

## 신청·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http://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구축 가능성,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활용 계획의 적절성, 기업의 추진의지, 고용창출, 경영성과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588
- 사업관리시스템 : [smart-factory.kr](http://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 Q&A

**Q**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3대 요소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고도화1 20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부담입니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 13개 지방청별 탄력적 우대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 경비의 50~90% 차등지원
  - \*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하며,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90% 일괄 지원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 바우처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기술사업화, 노무, 인사, 회계, 구조개선 등
	스마트공장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IP 컨설팅	분쟁 IP 분석 및 대상 IP 무효화, IP 분쟁 공동대응 등
기술지원	(별도트랙) 탄소중립 경영혁신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아이템 발굴, 인식개선 활동 등
	(별도트랙) 재기컨설팅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 및 재기 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 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재권 획득(특허출원, 상표 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규격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제품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마케팅	설 계	시제품 설계, 공정설계 등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브랜드 지원	C디자인개발, B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접수

- 혁신바우처 플랫폼 (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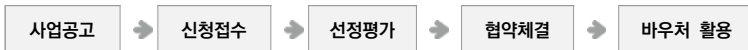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100여개 사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Q&A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혁신마우처플랫폼([www.mssmiv.com](http://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컨설팅이 필수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필수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구조혁신지원사업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디지털·노동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도박, 향락, 건강유해 등)

### 지원 내용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일자리·디지털전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법인과 연계하여 심층 컨설팅 지원(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일자리전환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금융, 세제, 직무전환, 전직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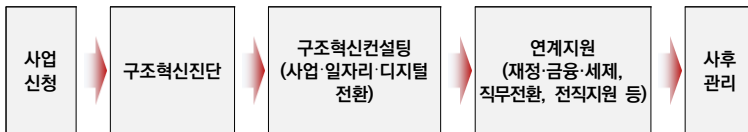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사업전환자금 용자,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연계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재무제표 필수 제출(간편장부대상자 예외)

## 신청 · 접수

- 구조혁신지원사업([www.kosmes.or.kr/3t](http://www.kosmes.or.kr/3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시기 별도공지 예정)
  - (제출서류)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 처리절차



## 문의처

-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http://www.kosmes.or.kr/3t))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은 가능하지만, 구조혁신진단 결과에서 희망하는 컨설팅분야를 추천받아야만 컨설팅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사업전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으로 업종전환(신규사업 비중 100%), 업종추가(신규사업 비중 30%)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

**상시종업원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별도 산정



##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민간 구조조정 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 중소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골든타입 확보 및 자율구조개선 추진

### 지원대상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 중소기업 중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구 분	대 상
업력/형태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
자산규모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제한요건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 회생절차 신청 전인 기업
외감기업	▶ 최근 결산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 지원 내용

- 중진공 및 협약체결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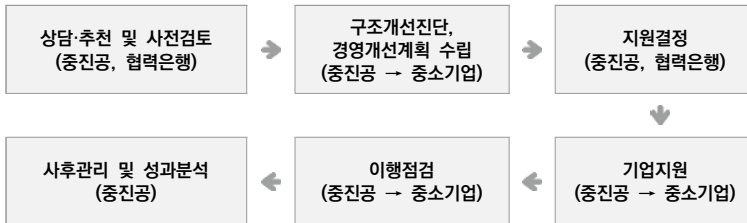
구 분	지 원 내 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경영목표 수립	

\* 협력은행 금융지원(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세부조건은 개별협약

## 신청·접수

- 전국 19개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및 협력은행 지점에서 상담 후 접수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총 90개사 내외 (총 450억원) 예정
- \* 미정인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개선센터 : 055-751-9924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붙임)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번호	지역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층	02-2106-7458
2	서울동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32
3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031-260-4971
4	경기북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관리동 102호	031-920-6714
5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3
6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 1층	051-630-7404
7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10 엑스코 4층	053-606-8433
8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24
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1
10	세종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044-860-8310
11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67
12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74 W-Center 14층	052-703-1139
1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7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2
14	강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39
15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14
16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7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산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6
18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280-8031
19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6



##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중 심층평가 신청자

###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단,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별도 신청 불필요

- 재창업자금(중진공)
-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 재창업자금-신복위(신·기보)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기정원)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 공역량(준비도) 등을 심층평가하여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 우대사항 : 재창업자금(중진공) 전용트랙 신청권한,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서류평가 면제, R&D(기정원) 우선추천 등

## 평가방법

- (성실경영평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최소요건 충족 시 통과
  - \* 재창업 전 기업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 등
  -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탈락 결과 이의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재심 평가 진행
- (성실경영 심층평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으로 판정 시 통과
  - \*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준비도) 등 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02-3211-5609, 5610)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challenge.or.kr)



## Q&A

Q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경우, 평가결과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A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경우, 통과한 날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평가 결과가 유효합니다.

Q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면 재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실경영평가는 재기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 각 사업 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또는 재창업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각 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공고의 용자 제한 업종 참고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지원 내용

- (기초 진로제시)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지원)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90% 지원(기업부담 10%)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사업정리에 필요한 3가지 전문분야* 중 2가지 분야 * 세무/노무/법무분야	-	총 240만원 (분야별 1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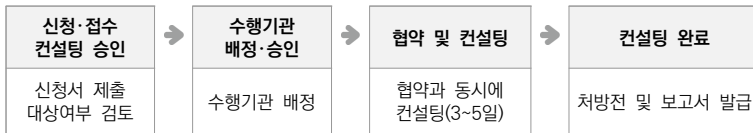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http://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사업공고 후 연중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http://www.mssmiv.com)) 공고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340여개 기업(예산 약 7억원)
  - \* 미정인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 \* '22년 지원현황 : 340여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1백만원 지원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 홈페이지([www.mssmiv.com](http://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회생 컨설팅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진행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개인회생(개인) 〉

-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 기업회생(개인, 법인) 〉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협업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협업법원 :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법원에 의해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된 경우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지원 내용

### ● 개인회생

- (기본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
  - \* 법률구조 : 법률적,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 \*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 의 대표자 한정
- (그 외 중소기업인) 재기컨설팅을 통해 법률대리인(변호사) 지원
  - \* 보수한도 : 업체당 240만원 적용(보수한도의 10% 및 제반 소송비용은 기업부담)

### ● 기업회생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자문, 회생계획안 자문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유형	구 분		지원금액
	채무액	신청사건	
개인	담보채무 15억 및 일반채무 10억 이하	개인회생사건	240만원 (기업부담 10%)
	담보채무 15억 및 일반채무 10억 초과	기업회생*	회생단독사건 회생합의사건
법인	무관		

\* 간이회생사건(총 채무액 50억 이하) 포함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전평가시 대표이상의 횡령, 배임사유가 확인되면 지원불가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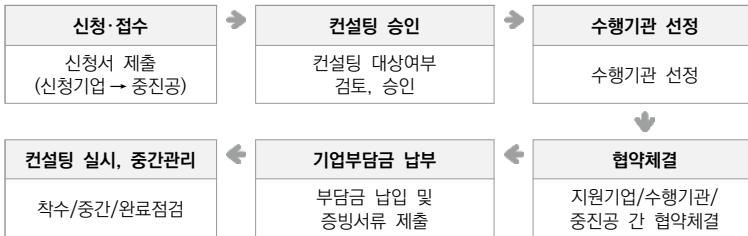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 처리절차

- 개인회생



- 기업회생



## 지원규모

- 170여개 기업(예산 약 39억원)
  - \* 미정인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 \*\* '22년 지원현황 : 11월 현재 102개사 지원, 기업당 평균 22백만원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 각 지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회사는 2달 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개시결정이 공고된 이후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회생컨설팅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시에 이미 조사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 컨소시엄(필수)
  - 광역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앵커(민간)기업이 투자 가능한 지역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 필수
- (지원조건) 국비와 지방비 등 대응자금(현금) 1:1 매칭 가능
  - \* 민간 앵커기업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예정지역 내 투자 필수
  - \*\* 사업 신청 시점에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원 확보 필수
- (지원예산) ('23년) 4,000백만원
  - (신규지원) '23년 선정지 2개소 × 4,000백만원 × 50%(지방비 50% 매칭)
  - \* '22년 선정지역 대상, 사전컨설팅 완료후 '23년 사업대상지 2개소 내외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을 마련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내 그린 스마트화 관련 사항 중점 추진
  - (스마트 공동시설) IoT, AI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Post-코로나 대비 비대면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친환경 인프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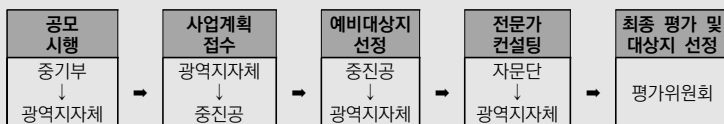
지원 항목		세부 지원내용
스마트 공동시설	스마트 제조	• 빅데이터, AI, 로봇 등을 도입한 시험 및 테스트베드 공간, AR 기술을 도입한 시제품 시물레이션 공간 등
	스마트 물류	• IoT, AI 기술 등을 활용한 다품종 공유형 디지털 물류시스템 등
	Post-코로나	• 비대면 회의시스템, 제품홍보를 위한 AR/VR 활용 스튜디오 등
친환경(그린) 인프라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폐기를 처리 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 신청·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23년 사업은 '22년 컨설팅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24년도 신규 공고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예비대상지 선정(4개소) → 예비대상지 전문가 컨설팅 → 최종 대상지 선정(2개소)
  - \* 사업필요성, 앵커기업 투자 및 권원확보, 추진전략, 공간 조성·운영전략, 지속 가능성 등 평가
- ▶ 처리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55-751-928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A

**Q**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A**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23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Q** 앵커기업의 투자가 필수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공간 조성, 스마트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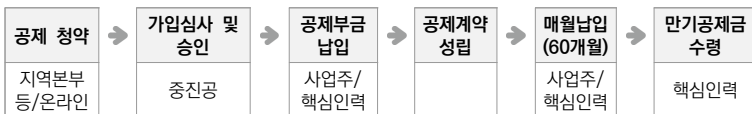
## 가입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30%)

## 가입방법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3년)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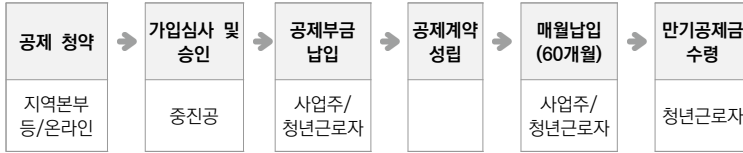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가입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 (적립금액) 3년간 1,800만원(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청년)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매월 16.7만원)
  - (기업)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매월 16.7만원)
  - (정부) 3년간 600만원 적립(3년 6회 분할 적립)

###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3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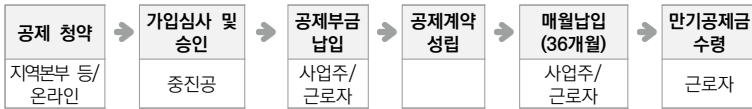
###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인력육성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만 가입가능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지원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제 2 부

---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용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제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보증 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장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li> </ul> </li> </ul>	1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li> </ul>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li> <li>■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li> <li>■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li> </ul>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 신청·접수

###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 집(제 출)자료	자료수 집 경 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초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li> <li>• 해외이주신고확인서</li> <li>• 보험료 납부(완납)증명</li> </ul>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과세표준증명</li> <li>•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li> <li>• 재무제표</li> </ul>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확인서</li> </ul>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li> <li>• 주주명부</li> <li>• 기업개요표</li> </ul>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li> <li>•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li> </ul>
↓	
자료수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li> <li>•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li> </ul>
↓	
보증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li> <li>•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li> </ul>
↓	
약정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li> <li>•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li> </ul>

## 지원규모

- 보증잔액 61.5조원으로 운용예정
  - \* '22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61.8조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지원
문화산업 정책보증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 타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 기업 우대보증 등

---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



##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 첨단제조,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탈락·포기자
  - \* 유사 지원사업 예시: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 신청·접수

- 신보ON-Biz([www.kodit.co.kr/sut/index.do](http://www.kodit.co.kr/sut/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상·하반기 연 2회 공모)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지속성장가능성, 사업화가능성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선정절차)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선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준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의 보증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스타트업 도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펍킨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3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Pre-ICON 보증
  - 창업 후 2년 초과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5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 및 보증발급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용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 문의처

---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별로 차등적용

미래성장성등급	인수한도
K1등급 ~ K6등급	30억원
K7등급 ~ K8등급	15억원
K9등급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등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 이내

##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 지원규모

-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 '22년 지원현황 : 563억원 투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상환전환우선주

-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 전환사채

-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프로젝트 투자

- ☞ 중소기업이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발 및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후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 대상은 주로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장르입니다.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기업가치 산정 없이 선투자 후, 기업이 적격 후속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시 후속투자자가 선정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신보에게 신주를 교부(자본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용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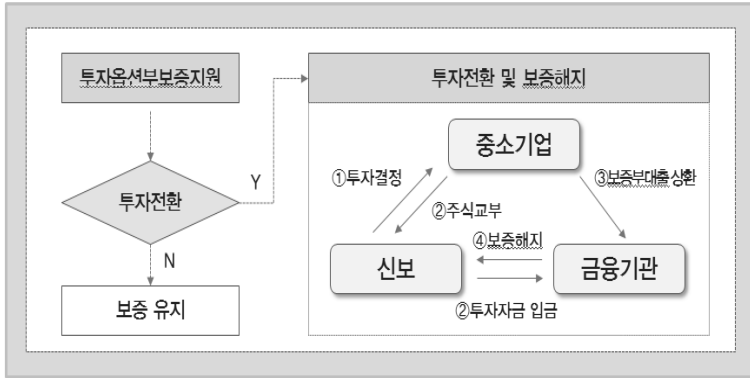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 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 신청·접수

####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처리절차

- 투자옵션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상담·접수

신용조사

심사

보증서 발급

##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2년 지원현황 : 400억원 지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 용어 설명

### 증자참여권

-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후속투자

-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동화회사보증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li> <li>■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li> </ul>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li> </ul>

###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li> <li>■ 변제 이행기간 3년 미만 또는 변제이행률 60% 미만 회생 조기종결 기업</li> <li>■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li> </ul>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li> </ul>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영위 기업</li> </ul>

## 지원 유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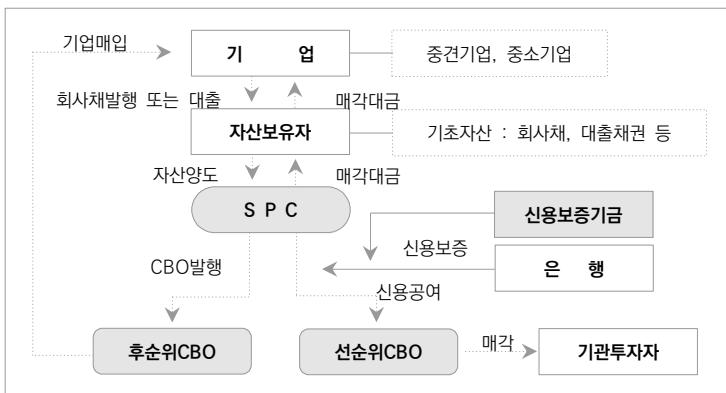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제 이행기간 3년 초과 &amp; 변제이행률 60% 초과 회생 조기종결 기업</li> </ul>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li> <li>■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li> <li>■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li> </ul>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li> </ul>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중견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일반	350			300	250	170	100

- 중소기업

(단위:억원)

미래성장성등급	K3이상	K4	K5	K6	K7	K8	K9	K10
일반	200	170		140	80	50	40	30

(주1) CPA 감사보고서 비보유기업은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주2) 지원 한도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상향 가능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및 유통·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li> <li>•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li> </ul>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li> </ul>

(주)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기준으로 편입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 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 처리절차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용어 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 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보가 주도적으로 기업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계속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총여신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경영상태 취약지표) 2년 연속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부(-), 자본잠식 상태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매출 30억원 미만 및 종업원 5인 미만인 기업, 업력 5년 이하, 부적합 업종\*  
\*개인서비스, 농업·육가공, 인력공급, 슈퍼마켓, 의류소매, 음식점, 건설기계 임대 등
- ▶ 직접보증잔액 5억 미만, 최근 1년 이내 신규증액보증 취급기업
-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 지원내용

구 분	V(I) 프로그램	V(II) 프로그램
지원방식	신보 단독지원	채권은행과 공동지원
지원기간	3년+1년(연장가능)	좌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보증(최고 50억원)</li> <li>▶ 컨설팅(외부 경영진단)</li> <li>▶ 보증료 차감</li> <li>▶ 만기연장 보장</li> <li>▶ 보험료 할인(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 지원</li> <li>▶ 협약은행여신금리인하 - 최대 2%p 금리인하</li> <li>▶ 만기연장</li> </ul>
협약은행		기업, 하나, 농협, 신한

##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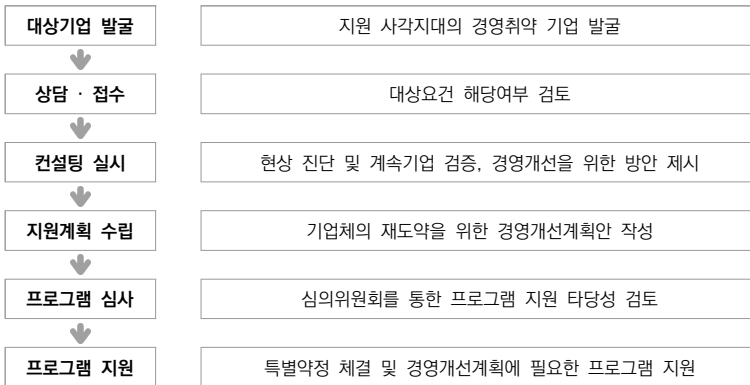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컨설팅을 통한 만성적 위기기업 선별, 심사 시 재도약평가표 및 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有) 운용

##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경영개선계획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연 100개 업체 이상 지원 예정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밸류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심사 이전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종류에 따라 1~2개월의 수행기간이 필요하며, 컨설팅 완료 이후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므로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
- 구매자의 폐업, 해산,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실시간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 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 인감증명서 등
  - \*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험인수 21.2조원으로 운용
  - \* '22년 지원현황 : 21조원 전망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 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 잡매칭(Job Matching)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지원내용

- 잡클라우드
  - 신보 채용포털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상시 구인·구직 활동 지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채용전문포털사 연계를 통해 신보 추천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일자리 매칭 지원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기업의 채용수요에 맞게 인재를 선별, 추천

### 신청·접수

-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절차

- (잡클라우드)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문의처

- 기업컨설팅부 컨설팅운영팀(☎ 053-430-4689)
-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신보 On-Biz - 잡클라우드



## 컨설팅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영진단과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ESG경영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기업공개(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사업화, 가업승계, 지식재산(IP)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 One-Point 화상컨설팅
  - 중소기업의 단편적 경영 애로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및 자문해주는 비대면 화상 컨설팅 서비스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위탁보증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상황에 따른 레벨업(경영개선)·체인지업(채도전 지원)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전액 무료

## 신청·접수

- (경영·특화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경영지원플랫폼\* 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컨설팅) 경영지원플랫폼에서 다운받은 컨설팅신청서를 영업점 담당자에게 신청
  - \* 경영지원플랫폼 주소 : [www.kodit.co.kr/apps/index.do](http://www.kodit.co.kr/apps/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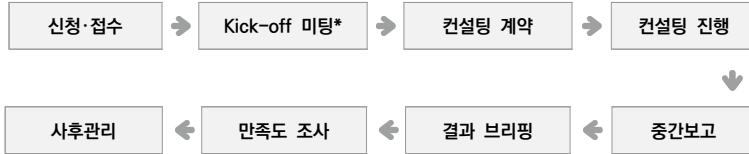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 처리절차



\*Kick-off 미팅 : 기업, 컨설턴트, PM이 대면하여 컨설팅 방향 및 과업 범위, 진행일정, 컨설팅 비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미팅

## 지원규모

- (경영·특화컨설팅) 年 18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22년 지원현황(11월말) : 경영컨설팅 191건, 특화컨설팅 305건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年 42억원 내외(~'26년도까지 연간 3,500건 지원)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688~8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692~9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 경영지원플랫폼이란?

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비금융종합지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우대 (0.1%p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 매출채권보험 우대 (보험료 15% 차감, 보험인수비율 최대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 \* 중소기업은행: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 시중은행별로 보증료 차감 또는 지원(은행별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 (80%비용지원, 4백만원 한도)
    -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
- 인증발급 소요기간: 1개월 이내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연간 경영혁신기업 4,000여건 선정
  - \* '22년 11월 말 기준 선정현황 : 3,953건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7 ([www.mainbiz.go.kr](http://www.mainbiz.go.kr))

### 용어 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팩토링

신보가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Factoring)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 지원대상

구 분	대상요건
판매기업	원활한 물품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구매기업	대기업, 외감법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과세대상 매출채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구매기업과의 거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판매기업
-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한도  
(판매기업) 최고한도 100억원, (구매기업) 최고한도 30억원 거래 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고한도 이내에서 기업별 한도 차등 운용

● 지원효과

구분	효과		
구매기업	신규 결제수단	금융비용 無	보증료 차감 등
판매기업	금융기관 최저수준 할인료	신속한 현금화	상환청구권 無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판매기업 팩토링 한도 확대 : (기존) 최고 10억원 → (변경) 최고 100억원

**신청·접수**

- 신규 고객은 팩토링 전담팀을 통한 유선상담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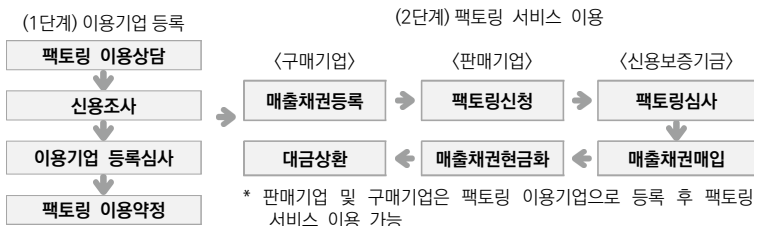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 경영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신용도,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서류**

- 고객정보활용동의서, 기업 재무자료(재무상태표 등), 주주명부 등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3년 6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 \* '22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570억원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팩토링 전담팀 (☎ 02-710-4634, 4639)



## Q&A



안심거래플랫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안심거래플랫폼([www.kodit.co.kr/safe](http://www.kodit.co.kr/safe))으로 접속하시면 서류제출부터 약정 및 팩토링 신청까지 비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대표이사 개인용) 필요



## 녹색보증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및 관련 기업의 발굴·육성 기반 확대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및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전기, 열 등)를 생산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품목 등을 제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상환 기업 등 (보증제한기업) 휴업 중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기업 등
- ※ 세부지원대상 요건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보증사업 공고문에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유망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된 기업에 대해 '기후기술역량평가' 등 보증 심사를 통해 운전·시설자금 보증지원

● 세부내용

구 분	탄소중립 특화보증	탄소중립 프로젝트보증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생산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에 보증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보증지원
대상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보증료율	· 0.2%p 차감	· 0.5% 고정요율
보증비율	· 95% (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지원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ESG보증팀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보증사업 공고 이후 신청·접수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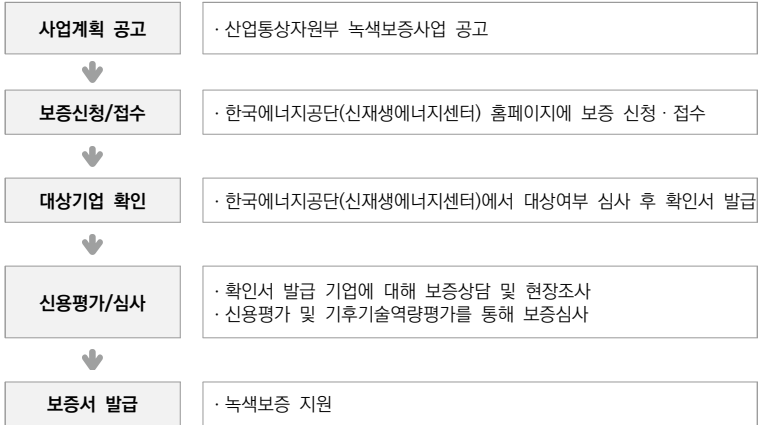
-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기후기술역량평가를 통해 보증심사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어려운 자료(사업계획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3년도 연간 1,400억원 지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1, 0784)

### 용어 설명

**기후기술역량평가**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해 사업화 역량, 기술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총 10개 등급으로 산출



## 녹색 공정전환 보증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 보증비용, 보증료율 등 지원조건 우대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노력을 지원

###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 저탄소 설비 도입,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추진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 친환경 분야 제품·기술 생산 또는 개발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 미상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 중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저탄소·친환경 제품 및 기술의 생산확대 등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 보증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 보증비율
  - 95%(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영업점 또는 ESG보증팀 방문, 유선 신청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 신청기업의 신용평가 외에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를 추가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 \* 생산공정이나 제품·기술의 에너지(전기·연료) 사용량 등의 절감효과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사업계획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서 등)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 및 보증발급

## 지원규모

---

- '23년도 연간 5,000억원 지원(예정)

## 문의처

---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제 3 부

# 기술보증기금





## 2023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단위 : 조원)	보증잔액(계획)				보증공급(계획)			
	'22년		'23년 (B)	증감 (B-A)	'22년		'23년 (D)	증감 (D-C)
	계획 (A)	실적 (11월)			계획 (C)	실적 (11월)		
총 보증	26.5	27.0	29.0	+2.5	24.8	25.0	26.7	+1.9
신규					4.2	4.2	5.7	+1.5
갱신·만기연장					20.6	20.8	21.0	+0.4
기술보증	26.3	26.8	28.7	+2.4	24.7	24.9	26.4	+1.7
신규					4.2	4.2	5.5	+1.3
갱신·만기연장					20.5	20.7	20.9	+0.4
유동화회사보증	0.2	0.2	0.3	+0.1	0.1	0.1	0.3	+0.2
신규					-	-	0.2	+0.2
차환					0.1	0.1	0.1	-

\* '23년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화산업완성보증 계정, 신재생에너지보증 계정 및 기후대응보증 계정은 미포함

● 중점지원분야

(단위 : 억원)

구 분	구 분	2022년		2023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공급	혁신성장산업	55,000	102,827	80,000	+25,000
	수출중소기업	32,500	34,004	33,000	+500
신규공급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3,000	3,730	17,000	+14,000
	청년창업기업	4,000	4,050	4,500	+500
	스케일업 보증	( 신 설 )		3,000	+3,000

\* '23년도 총보증 공급규모는 26.7조원으로, 신규보증 5.7조원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술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한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의 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등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이 아닌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지원규모

- '23년 26.4조원 공급 예정(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용어 설명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 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  
에서부터 예측 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주요 내용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창업멘토링을 통해 창업정보 제공</li> <li>창업 즉시 창업자금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 성과와 애로사항 등 점검</li> <li>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를 우대(전액보증)</li> <li>보증료 0.7%p 감면</li> <li>1억원 이하 기술평가료 면제</li> </ul>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사업계획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li> <li>*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li> </ul>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명부</li> <li>신분증 사본</li> <li>인차계약사본 (사업장 거주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li> </ul>	-
기금 수집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등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li> <li>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li> </ul>	사전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거래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li> </ul>

##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기술력 기반의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li> </ul>
청년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li> </ul>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li> <li>(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li> </ul>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우대사항						
맞춤형 창업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별로 구분된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li> <li>*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0%~100%)</li> <li>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 이내 1.0% 고정보증료)</li> <li>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 한도가산(2억원 이내)</li> <li>*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li> </ul>						
청년 창업기업 보증	기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5%)</li> <li>* 창업후 1년 또는 1억원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li> <li>보증료 0.3%p 감면</li> </ul>						
	추가 우대	<table border="1"> <tr> <td>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td> <td>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한도 3억원</li> <li>보증비율 우대(95%)</li> <li>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li> </ul> </td> </tr> <tr> <td>청년 테크스타 보증</td> <td>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100%)</li> <li>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li> <li>*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li> </ul> </td> </tr> </table>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한도 3억원</li> <li>보증비율 우대(95%)</li> <li>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li> </ul>	청년 테크스타 보증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100%)</li> <li>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li> <li>*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li> </ul>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한도 3억원</li> <li>보증비율 우대(95%)</li> <li>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li> </ul>					
청년 테크스타 보증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100%)</li> <li>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li> <li>*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li> </ul>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우대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5%)</li> <li>보증료 최대 0.7%p 감면</li> </ul>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청년테크스타 보증대상 확대하여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통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



## Q&A

Q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 창업	• 혁신형지식서비스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 챌린저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 부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부리 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 연계창업	• <b>(첨단산업)</b>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 성장산업 영위기업 • <b>(유관기관 선정자)</b>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되어 2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 굿잡보증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amp; 20% 이상 고용증가</li> </ul>
	쉐어링잡 (Shar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li> <li>(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li> <li>(지방고용) 지방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li> <li>(장애인가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li> <li>(특성화고)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li> <li>(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li> <li>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기업 제외)</li> <li>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li> </ul>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li> <li>*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li> </ul>

####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신규고용인력별 보증지원 한도가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고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 ● 곳잡보증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 지원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보증비율 우대(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보증비율 우대(90%) • 보증료 0.3%p 감면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 자금 3억원까지 지원

###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한도 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고용인력 1인당 가산 금액은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에 따라 차등 결정

구 분	한도가산금액(1인당)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1.2조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소셜벤처기업 전용보증상품으로서 보증우대지원을 통해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을 견인합니다.

###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충족기업



\*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의 합계가 각각 70점이상인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에 해당하는 기업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기술사업타당성평가등)
- ▶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혁신성장성(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포함) 위주로 종합평가 하며,보증심사 시 소셜벤처 판별 동시 검토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소셜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에게 적정보증금액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우 대 사 항
대상자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산정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2년	'18년 ~ '22.11월(누적)
지원계획 / 지원현황	1,500 / 2,060	5,000 / 6,301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사회성 및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소셜벤처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소셜벤처 판별 및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소셜벤처 판별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성, 기술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승인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에서 상시접수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02-3407-2900), 고객센터(☎ 1544-1120),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 Q&A

Q

소셜벤처(S-Venture)임팩트 보증은 소셜벤처기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셜벤처(S-Venture)임팩트 보증은 소셜벤처기업 전용 보증상품이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를 통해 판별 인정받거나, 보증신청 시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인정될 경우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Q

우리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인지 사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스스로 판별표를 작성하여 소셜벤처 판별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가진단 후 소셜벤처 판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https://sv.kibo.or.kr>) → 소셜벤처 판별 → 소셜벤처 자가진단

## 용어 설명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 소셜벤처기업 판별,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소셜벤처 관련 지원사업소식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소셜벤처 전용 사이트



##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제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서비스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li> </ul> </li> <li>•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li> <li>•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li> </ul>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li> <li>-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li> <li>- 기업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li> <li>-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li> </ul> </li> <li>•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li> <li>-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li> </ul> </li> <li>• 스마트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품목을 생산하며 별도 판별기 충족하는 기업</li> </ul> </li> </ul> </li> </ul>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 \*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를 적용 가능
  -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1.4조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사업계획서</li> <li>주주명부</li> <li>신분증 사본</li> <li>인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li> <li>*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li> </ul>	서식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li> </ul>	-
기금 수집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li> <li>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li> <li>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li> </ul>	사전 동의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거래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li> </ul>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문의처

---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혁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



##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기업 및 디지털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쉐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 Data, Network, AI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
  - (핵심기업) '비대면기업' /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최근 6개월 이내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증지원 한도가산(고용인원 1인당 최대 75백만원)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1조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비대면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콘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 (식품 등) 제조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현실 (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 클린플러스 보증

별도의 중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자기반의 간편하고 안정적인 운영자금 집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고객의 보증부대출 이용 편의성을 모두 향상한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외주비 포함),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결제목적 회전성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지원(근보증)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근보증 채무에 대해 우대지원

- ▶ 보증비율 95%(최초 취급후 5년간)
- ▶ 보증료 0.5%p 감면(최초 취급후 5년간)
- ▶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모니터링 실시
  - (자금집행 모니터링) 중개사업자는 보증기업이 플랫폼에 입력한 자금용도 정보와 자금용도별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일치여부 등을 검증
  -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보는 중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 요청 정보에 대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며, 필요할 경우 사전 통제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3,000억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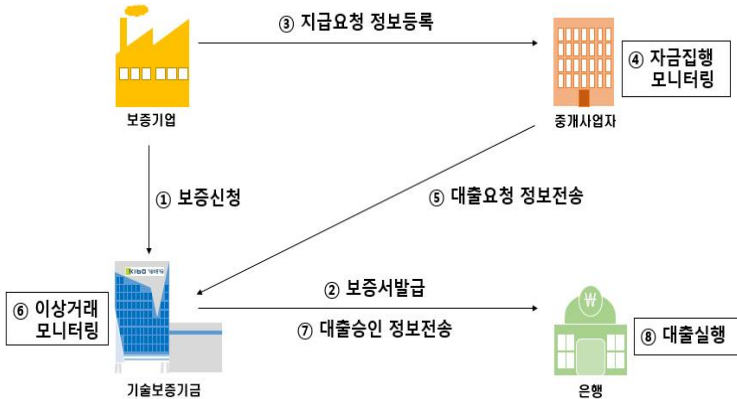


##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업계획서</li> <li>▶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li> </ul>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명부</li> <li>▶ 신분증 사본</li> <li>▶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li> </ul>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li> <li>▶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li> </ul>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보증기업)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요청 정보 입력
- (중개사업자) 보증기업이 입력한 정보의 이상여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금 및 은행에 대출요청 정보 전송
- (은행) 대출요청 정보에 따라 지급상대처에 대출실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용어 설명

**클린플러스보증 플랫폼** : 기업이 대출요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또는 모바일 형식의 시스템



## 원클릭 보증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보증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빅데이터 기반 고객 지향적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잔액 없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한 보증가능 여부 확인

- 전별 운전자금 1억원까지 신속한 기술평가 및 보증지원
  - ▶ 보증비율 100%(최초 취급후 3년 초과시 단계적 인하)
  - ▶ 보증료 0.3%p 감면
- 운영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원클릭보증 외 기금 보증금액 포함)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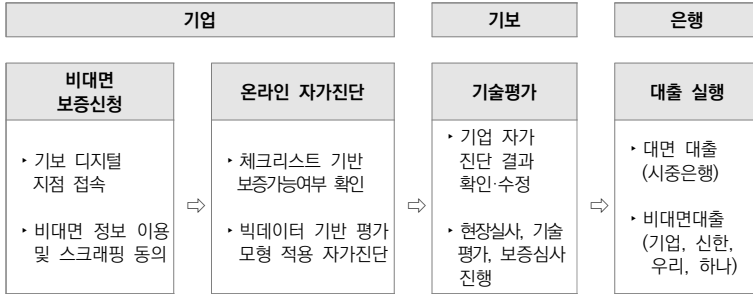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기술력 자가진단을 통해 보증결과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보증신청 진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신청요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
- \* 선판매계약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 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계약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10%)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분야, 한류 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li> </ul>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감(-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li> </ul>

-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 \* 융복합콘텐츠: 기존 콘텐츠 영역에 기술, 타장르, 타산업과의 다각적인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 \*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국내 자본이 50% 이상인 OTT 사업자에 유통하는 문화콘텐츠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콘텐츠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 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지원 한도 50억원 이내 삭제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1,540억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2)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1)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11)
  -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42-480-1320)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7)



### Q&A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li> <li>▶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li> <li>▶ 연구개발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li> <li>▶ 교육지원 서비스업</li> <li>▶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li> <li>▶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li> <li>▶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중개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산업/공연산업/광고산업</li> <li>▶ 방송산업</li> <li>▶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li> <li>▶ 정보서비스산업</li> <li>▶ 출판산업/캐릭터산업</li> </ul>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 용역공급계약前이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 용역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용역공급계약前 지원		용역공급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이하		2억원	30% 이내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10개 장르 영위 기업은 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전담 취급하고, 그 외에는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문화콘텐츠금융센터 포함)에서 취급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전담 취급대상을 용역공급계약체결 전 10개 장르 기업에서 유통계약체결 후 10개 장르 기업으로 변경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2)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1)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11)
  -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42-480-1320)



## 기후환경보증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필요자금을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산업 등을 영위하는 신기술 사업자

구 분	대 상 기 업
녹색성장산업	•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산업 영위기업
환경산업	• 물, 환경복원·복구, 환경안전·보건, 자원순환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기업
에너지산업	•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과 연관된 산업 영위기업
기후기술기업	• 기후변화에 대응·적응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개발·확보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저탄소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이하 "기후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후·환경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운전 또는 시설자금 우대지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0.2%p)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신재생에너지보증

신재생에너지보증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분야 ①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 또는 ②관련 기술 보유·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기업 (시설자금 지원)
-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신보·재단 사고기업 등

### 평가방법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보증기금의 전용 평가모형(탄소 가치평가모델·기후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후 보증

### 【탄소가치평가모델】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 지원 내용

- 추가 한도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 한도금액에 탄소가치평가 금액을 가산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begin{array}{|c|} \hline 500\text{백만원} \\ \hline \text{(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200\text{백만원} \\ \hline \text{(탄소가치 산출액)}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700\text{백만원} \\ \hline \text{(지원 가능금액)} \\ \hline \end{array}
 \uparrow 200\text{백만원}$$

- 기타 우대사항
  - 보증료 : (발전기업) 0.5% 고정보증료율, (산업기업) 0.2%p 감면 적용
  - 보증비율 : 95~100% 적용

### 처리절차

구 분	단 계 별	주 요 내 용
한국에너지공단(센터)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기관에 추천
보증기관	보증 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현장조사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심사·승인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탄소가치(기후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약정/실행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신청·접수 : [www.knrec.or.kr](http://www.knrec.or.kr)  
(사업공고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참조)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 051-606-7364,7358)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81, 0783, 0784)
  - \*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문 참조

### 용어 설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해당하는 설비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반 기술로서 해당 기술·사업이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매출성장, 고용창출 등 미래성장가능성)를 기술사업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모델





##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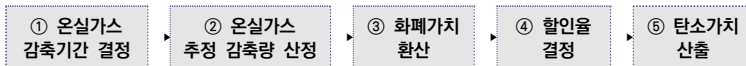
- 고효율 설비도입, 연료전환, 공정전환·개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쏠 분야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평가방법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및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등을 활용하여 환경적 가치를 보증심사에 반영
  -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 지원내용

- 저탄소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기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보증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	----------	---	--------

- 탄소감축률에 따른 탄소스프레드를 적용하여 보증료 감면 차등화 (0.2~0.4%p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90~95% 부분보증) 적용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용어 설명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반 기술로서 해당 기술·사업이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매출성장, 고용창출 등 미래성장가능성)를 기술사업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모델



## R&D 보증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과제</b>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li> <li>• <b>대상자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li> <li>-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li> </ul> </li> </ul>

- **사업화단계 자금(기업단위)**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 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amp;D 과제</li> <li>-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amp;D 과제</li> <li>-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amp;D 과제</li> </ul> </li> <li>• <b>대상자금</b> : R&amp;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li> </ul>

-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 전담기관의 R&amp;D과제: 중기부 R&amp;D과제(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中 최근 3년 이내 최종 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li> </ul> </li> <li>• <b>대상자금</b> : 과제단위 사업화 또는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초기)운전자본</li> </ul>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단위의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R&D과제단위로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원
- \* (현행) R&D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단위로 지원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6조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용어 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대표적인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모형 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핵심역량수준과 지속가능수준(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 : 사업화 주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R&D 과제 자체의 기술성·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유의사항

- ▶ 보증지원은 등록된 특허권에 한하여 운용되며, 여타 지식재산(심사청구된 출원 특허, 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보증으로 취급 가능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내용

- 지식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 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7%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1조 8,000억원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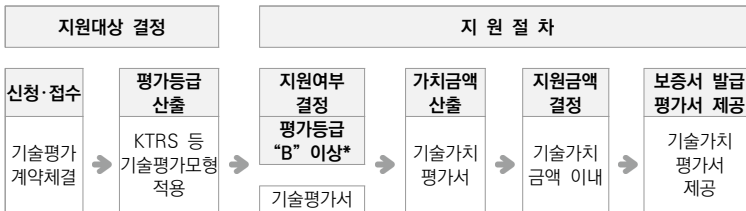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업계획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li> <li>*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li> </ul>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명부</li> <li>▶ 신분증 사본</li> <li>▶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li> </ul>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li> </ul>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li> <li>▶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 제출 방식을 의미함</li> </ul>	사전 동의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li> </ul>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 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 용어 설명

####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 기술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 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li> <li>•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li> <li>•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li> <li>•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li> <li>• 기술 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li> <li>•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li> </ul>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li> <li>• 발명의 사업성 평가</li> <li>• 기술개발관련자금, 창업자금 또는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평가</li> <li>•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li> <li>•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li> <li>• R&amp;D 평가</li> <li>•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li> <li>•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li> </ul>
종합 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li> <li>•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li> <li>• 주식가치평가</li> </ul>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이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실패기업 및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 실패기업 : 기보가 대위변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의무가 남아있는 기업
  - \*\*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무 보유한 경우 (다중채무자)
  -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문의

###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보증한도: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 신규 운전자금보증은 10억원 이내

## 지원규모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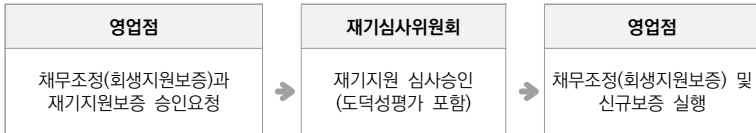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 지원센터)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진공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 지원보증은 기보가 단독으로 재기기업인에게 채무조정(또는 회생 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를 정상변제중이면 누구든지 재도전 재기 지원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 및 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업체

###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 자금 범위 이내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 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 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 지식재산공제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국내외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옥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부금이자
  - 기업의 납부 부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해지 시 원금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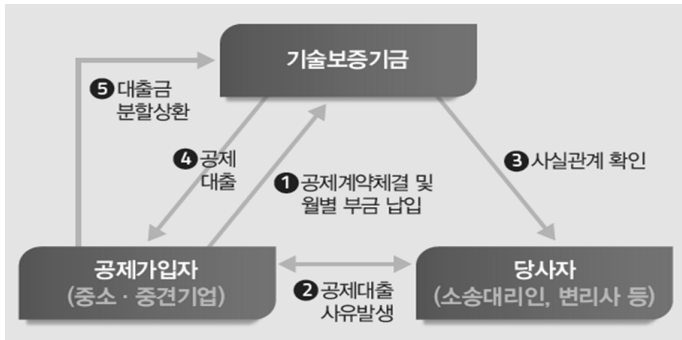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사유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 부가서비스
  - 법률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등 혜택 제공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것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http://www.ipmas.or.kr)) 및 전국 영업점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 02-3484-8900 / [www.ipmas.or.kr](http://www.ipmas.or.kr))



## Q&A

**Q** 지식재산공제사업인데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단, 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2년 12월 현재 연 단리 3.00%)

##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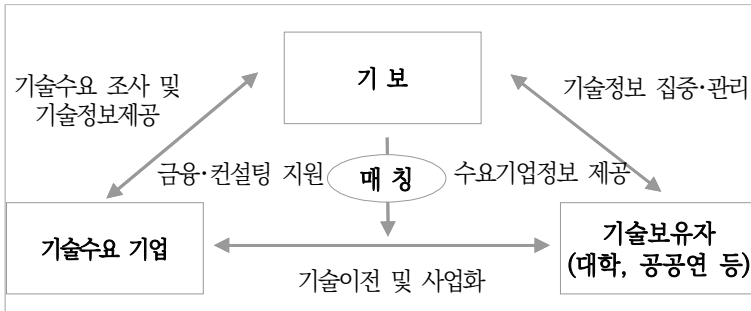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재산권 등의 정보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 필요자금에 대한 기술금융까지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 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 지원현황

- 기보는 '14년부터 '22.11월까지 6,914건의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고, IP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인수보증 4,805억원을 지원

구 분	'14~'17	'18	'19	'20	'21	'22.11월	누 적
이전된 기술건수	2,150	737	856	900	1,030	1,241	6,914
IP인수 신규보증	1,491	593	641	613	712	755	4,805

## 처리절차



- ① 상담 및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전국 영업점(기술혁신센터 포함) 또는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②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 가능성 등 검토
- ③ 기술탐색(기보 기술혁신센터, 대학·공공연 등)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형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④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대학·공공연 등)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⑤ 자금지원 (기보 기술혁신센터)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 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⑥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기술혁신센터

## 제출서류

- ① 기술이전 신청서, ② 정보이용동의서, ③ 기술수요조사서, ④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등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용어 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지식재산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식재산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 지원하는 제도



## 기술신탁관리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 관리, 기술이전 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신탁 제외대상

-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예정)된 기술
-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 공동명의 기술
- ▶ 기타 위탁자 혹은 신탁대상 기술로 부적합한 경우

### 지원내용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신탁기술에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 90%까지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 \*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 처리절차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 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기술신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빅데이터(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





## 기술임치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핵심기술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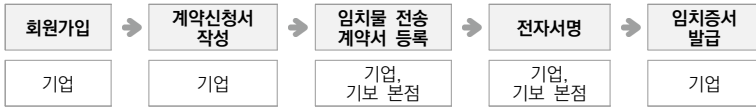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 시설·제품의 설계도 및 매뉴얼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및 성분표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에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 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 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할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TTRS(증거지킴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인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소기업양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연계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 등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기보와 보증 거래증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기업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R&D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 제한 적용 배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투자심사

### 지원내용

- 투자종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방식
  - \* 주식(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 투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보증금액 포함 200억원)

###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방식 다양화를 통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 ▶ 업체당 투자한도 제한(보증금액의 2배이내) 폐지 및 통합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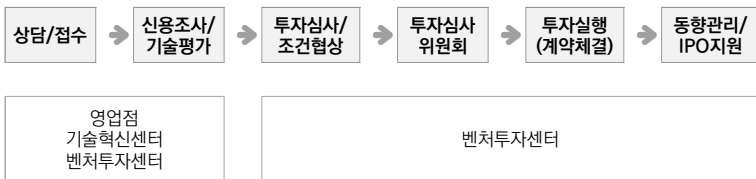
### 지원규모

- '23년 지원규모 : 500억원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벤처 투자센터/기술혁신센터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용어 설명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 벤처투자연계보증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 보증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

\* 기보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종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내용

- 특례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운전자금보증 금액 1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지방소재기업, 최근 투자유치기업, 최종 기업가치(Valuation)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0.8% 고정보증료 적용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대상 변경 (벤처투자유치기업 → 5억원이상 벤처투자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 ▶ 지방소재기업, 최근 투자유치기업 및 최종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보증료 우대

## 지원규모

- '22년 지원현황 : 1,932억원
- '23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3,000억원
  -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용어 설명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투자유선**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엔젤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 (3년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접수 일자까지의 기간
  - (3천만원 이상 투자)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 (단, 현물 투자 제외)
    - \*\* 법인설립일자로부터 보증 접수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원(최대 3억원),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 범위로 지원(최대 5억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0.3%p 감면,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시 1% 고정보증료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특례지원 한도 확대(3억원 → 5억원)

### 지원규모

- '22년 지원현황 : 242억원
- '23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3,000억원
  -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6개월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이 있는데, 기보VC파트너스 투자 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유치권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기보VC파트너스** : 벤처투자 활성화로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VC) 중 기보에서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

**투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투자” 중 신규 발행 주식(보통주, 우선주), CB, BW를 말함 (단, 현물투자 제외)

**투자유선**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VC투자매칭특별보증

민간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기보VC파트너스가 투자한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만 인정,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협약기간 이내)
-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또는 포스트 팀스(Post-TIPS) 참여기업 (협약기간 이내)
  - \*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운전자금보증금액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대상 확대 (TIPS R&D 성공기업 및 포스트 팁스 참여기업)

### 지원규모

- '22년 지원현황 : 1,585억원
- '23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3,000억원
  -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벤처 투자센터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6개월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이 있는데, 기보VC파트너스 투자 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유치권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벤처확인평가

기술보증기금은 '98년부터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개편 후 '20.12월 벤처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장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요건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li> <li>▷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li> <li>▷ 사업성 평가 우수</li> </ul>
예비벤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li> <li>▷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ul>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 舊벤처와 달라진 내용

- ▶ 기술평가보증·대출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유형 신설
- ▶ 벤처기업확인업무 이관(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협회)
- ▶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평가기관 지정 (기보 외 9개기관)
- ▶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
- ▶ 벤처확인평가 수수료 변경 (30만원 → 유형별 30~45만원)

## 수수료

### ● 벤처 신규, 연장 수수료 동일

구 분	벤처확인 수수료1)
혁신성장유형	45만원
이노비즈 연계2)	30만원
연구개발기업	35만원
예비벤처기업	35만원
벤처 재확인3)	30만원

- 1) 부가가치세 별도
- 2) 이노비즈 인증보유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한 경우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 확인 신청)
- 3) 예비벤처확인 이후 1년 이내 벤처재확인 신청한 경우(혁신성장 유형 신청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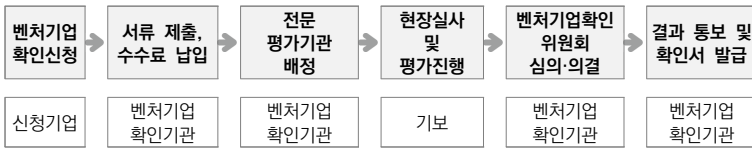
## 신청·접수

- '23.1.1.~'23.12.31. 상시 신청·접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http://www.smes.go.kr/venture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 \* 제출서류 목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http://www.smes.go.kr/venturein))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Q&A

Q

벤처확인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21.2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시행 후 기술보증기금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벤처확인평가만을 전담하고 있고,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이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여부 결정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전문평가기관의 벤처확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합니다.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공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 수납, 벤처기업 확인 취소



##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수행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li> <li>▶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li> </ul>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li> <li>▶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li> </ul>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 ▶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http://www.innobiz.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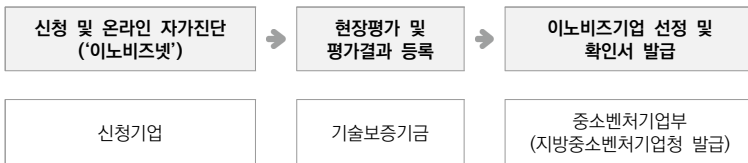
## 평가료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15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60일 이내 보증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료 20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및 연장 평가 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http://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이노비즈넷 (☎ 031-628-9600 / [www.innobiz.net](http://www.innobiz.net))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이노비즈 연장평가 이노비즈협회 위탁 실시(연장안내·평가 '협회' 일괄 수행)



## Q&A

Q

이노비즈 실사 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시나요?

A

Inno-Biz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 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 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팩토링

기보가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매입 후 대금을 판매 기업에 선지급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대금을 미결제하더라도 판매기업에 최종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부도 우려없이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판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 \* 중소기업, 총자산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전자세금계산서 한정)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통보처분을 받은 기업
-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의 1/2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한도 부여

● 지원효과

구분	매출채권 팩토링 이용효과	
판매 기업	▪ 연쇄부도 방지(상환청구권 無)	▪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 금융비용 절감(낮은 할인율)	▪ 재무건정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구매 기업	▪ 금융비용 절감(보증료 차감 등)	▪ 편리한 대금결제(만기일 자동출금)
	▪ 상생협력·동반성장	▪ 재무건정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팩토링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기술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 및 신청가능

처리절차

- 팩토링 플랫폼을 통해 등록심사부터 매출채권 매입 등 절차 진행



지원규모

- '23년 400억원 규모의 팩토링금융 공급 예정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전담팀 ☎ 051-606-7352~55, 051-606-7649, 7654

## 제4부

# 기업은행





## 2022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주요상품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고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 지원	
IBK강소 기업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IBK문화 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당행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IBK시설 투자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 협약대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중기부R&D 사업화자금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	



##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이내

### 대출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 담보운용

-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주담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이내 운용

###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 IP사업화자금대출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당행 소기업·소액결제성·중기업 신용평가 기업 중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이면서 기술등급 T4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등급이면서 기술등급 T3이상이고 빅데이터등급 4이상 기업 단, 혁신기업\*은 신용평가등급, 기술등급에 불문하고 지원 가능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연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평가등급' 및 'TCB평가서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 담보운용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 문의처

- IBK기업은행 혁신금융부 : 02-729-3620





## IBK강소기업대출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 IBK문화콘텐츠대출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당행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1. IBK문화콘텐츠대출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단, 제 3호의 경우 산업분류코드 검증 배제)

- ① 문화콘텐츠 특별출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② 창업·일자리 창출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③ K콘텐츠 혁신성장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규모

-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 판매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 지원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를 추천 받고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72



## IBK시설투자대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 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 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 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 용자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 IBK토지분양협약대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 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증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기술력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최대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이내,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금리감면 가능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 제5부

---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뉴딜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단,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뉴딜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정부에서 지정한 뉴딜투자(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

### 지원내용

- 뉴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우대 지원
  -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Delta$ 1.0%p)
  -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등에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K-뉴딜 SME 크레딧라인」설정
  - 지원상품 : 모든 대출·보증상품
  - 차주별로 금융상품을 일괄 취급하기 위한 연간 통합 한도를 설정하여 신속 지원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74 / 02-3779-6258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증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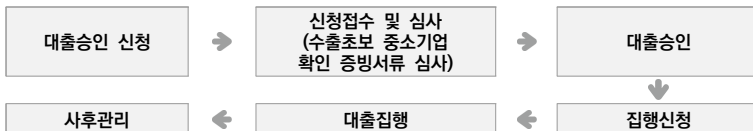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수출이행정보증, 해외사업이행정보증,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
-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 처리절차



## 문의처

---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74 / 02-3779-6258  
중소증권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 실행절차

- 기업신청 → 육성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 사후 관리
  - 기업신청
    -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정부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에너지, 정보통신 등 일부 우대지원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

- 육성기업 선정

-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 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 경영정보서비스 : 환위험설명회,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 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취소 등 지속 사후관리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8 / 02-6252-3417



##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디블 등)

####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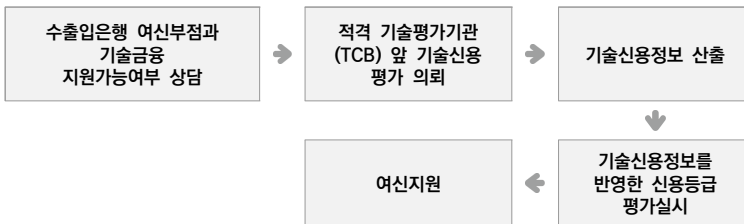
##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지원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74 / 02-3779-6258
-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 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정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8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수출 활성화)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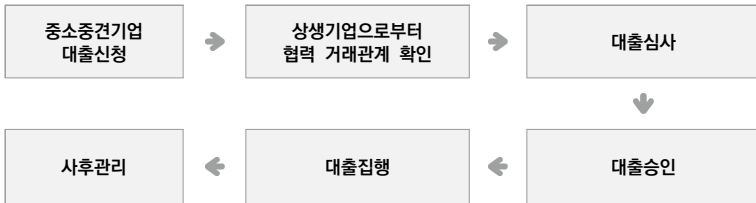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상생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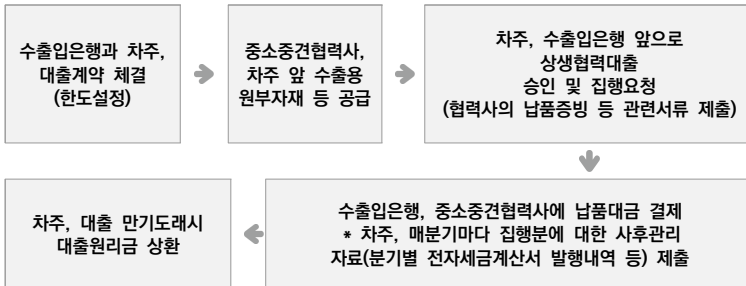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조건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기업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기업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1부 : 02-6255-5434 / 02-6255-5414  
해양금융단 : 051-922-8888 / 052-922-8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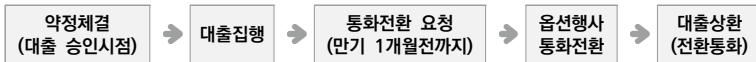
##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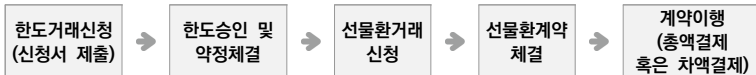
#### ●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 ●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 비금융서비스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 해외투자정보

---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 문의처

---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8 / 02-6252-3417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6252-3607)



##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지분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 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 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유예중소기업 50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500억원(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증액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 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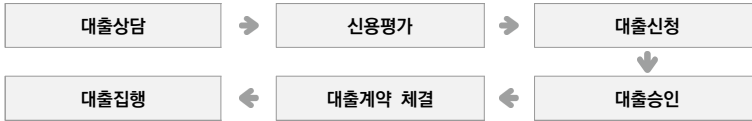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부채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해외사업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 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 지원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 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단, 중소기업은 90% 이내,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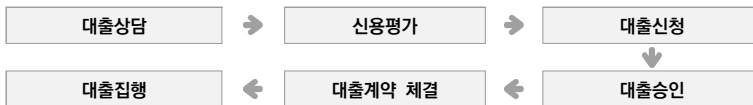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 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 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 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 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10년 이내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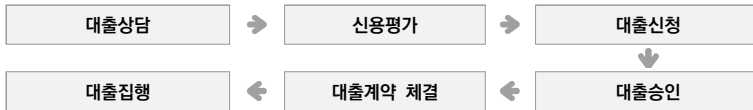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 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 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 보증금액(기간)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56 / 02-6252-3457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무역금융(수출관련)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 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 내국수출팩토링(디지털공급망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구매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

###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일정 등급(당행 기준) 이상 국가 소재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 내국수출팩토링(디지털공급망팩토링) : 온라인 공급망 플랫폼과 기업금융플랫폼에 의한 간접수출 거래
- 대상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 대상결제기간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환어음의 만기조건이 30일이상 2년미만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수출채권의 결제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어음 또는 수출채권의 만기조건이 30일 이상 2년 미만
  - 내국수출팩토링(디지털공급망팩토링) : 60일 이내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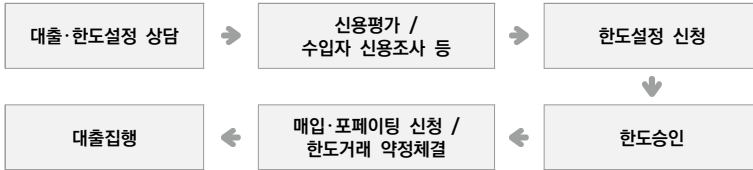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 제출서류

-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 02-6252-3522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중소중견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과 거래하는 해외현지기업
- '23.1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중소기업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주)하나은행,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 (주)대구은행, (주)부산은행, (주)광주은행, (주)전북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은행(중국), 기업은행(중국), 멕시코KEB하나은행, 멕시코신한은행, 브라질KEB하나은행,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수출촉진자금 : 대상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 수입자금(결제예정) : 수입예정금액의 90% 이내
- 수입자금(실적기반) : 수입실적의 60% 이내
- 기타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 우대프로그램 (추가한도 배정 또는 우대금리 적용)

- ①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②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③ 수출 초기 중소기업 ④ 유망 수출 중소기업(유망소비재, 비대면·디지털, 방역제품 등) ⑤ ESG 품목 영위 또는 ESG 인증 중소기업 ⑥ 미래전략산업(미래모빌리티, 원전, 우주항공, ICT융합, K-콘텐츠, 방위산업) 영위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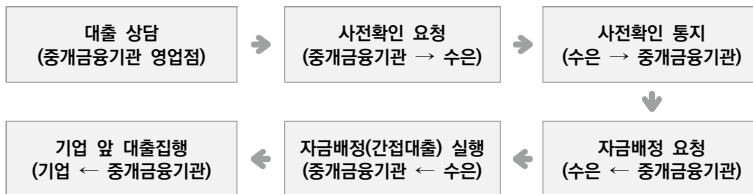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 제출서류

-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 해외온렌딩 대상기업 적격검토 서류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 별개)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 02-6252-3530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Fax :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 1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히든챔피언 사업, 상생금융 E-mail: dhlee315@koreaexim.go.kr	(02)6252-3416	(02)6252-3450
중소중견 금융 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moietoi@koreaexim.go.kr	(02)6252-3456	(02)6252-3480
혁신성장 금융 4부	바이오, 화학, 서비스, 문화콘텐츠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hayeonkim@koreaexim.go.kr	(02)6255-5265	(02)3779-6779
전대 금융부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jsk0212@koreaexim.go.kr	(02)3779-6373	(02)3779-6746
무역 금융부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nylee@koreaexim.go.kr	(02)6252-3506	(02)6252-3540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02)3779-6114 / FAX:(02)784-1030

〈국내지점〉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구월동빌딩 19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7	031)259-6609
중부권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워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빌딩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8	063)271-6139
출장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수출장소	전라남도 여주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신사옥 3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 제6부

# 한국산업은행





##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 기본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 온렌딩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 지원 내용

#### ● 상품별 지원 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외화자금 (USD)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구 분		지 원 요 건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품목 관련 사업, 신산업 업종, 4차 산업혁명 분야 사업 영역, 기술력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 최근 2년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기업 등
	소부장·첨단산업	▷ 소재부품기업법의 해당 업종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해당 산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 분야 업종 및 품목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탄소중립지원	▷ 환경개선, 녹색에너지원 생산, 에너지 효율화 관련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며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동산(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 상기 상품은 '23년도 운용 예정 상품으로 일부 상품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3년 신상품

- \* 「소부장·첨단전략산업 특별온렌딩」: 기존 「신산업육성 특별온렌딩」의 소부장 지원분야는 동 상품으로 통합 운영
- \* 「탄소중립 지원 특별온렌딩」: 기존 「신산업육성 특별온렌딩」의 녹색 관련 지원분야는 동 상품으로 통합 운영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아래 중개금융기관의 영업점 앞 문의

\* '23년도 온렌딩대출 취급 가능 중개금융기관(예정)

- 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커머셜, 우리금융캐피탈, 애큐온캐피탈, JB우리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 신청기간 : 연중 상시(한도 소진시까지)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0
  - 단, 온렌딩대출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은행, 여전사)의 영업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렌딩 디지털 플랫폼(onlending.kdb.co.kr)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 · 간접투자 → 온렌딩대출



## Q&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A**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급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 제도 개요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보고서 종류	정보제공 내역	목적
요약보고서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 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
Full Report	공사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원본(영문)	상세 정보 수집

### 유의사항

- ☞ 현지 신용조사는 평균 2~3주가 소요되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거절, 불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상 여유있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는 신청기업이 의뢰한 수입자의 신용도를 조사, 평가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수입자 명의로 체결한 수출입 계약의 진정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이용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 ①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이용기업 → K-SURE)
    - K-SURE DB에 수입자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담당자 등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 수수료 납부방법 선택(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등)
  - ② 해외 신용조사기관 앞 조사 의뢰 및 조사보고서 접수 (K-SURE ↔ 해외기관)
    - 약 2~3주간 현지 신용조사 후 조사보고서 접수
  - ③ 신용평가 실시 및 보고서 발송 (K-SURE → 이용기업)
    - 신용평가 실시
    - 요약보고서(등급 포함) 자동 발송 (신청자 이메일)
    - ☞ Full Report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조회
  - ④ 수수료 납부(후불제) (이용기업 → K-SURE)
    - 신청시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주요 재무정보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공사는 고객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조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방법〉

수납 방식	청구방법	납부
가상 계좌 입금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 계산서 발행 ☞ 조사 완료일 익월 첫영업일 ☞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사이버영업점에서 조회 가능	일괄 납부 ☞ 조사 완료일 익월 27일
신용 카드	조사완료시 건별 납부안내	건별 납부 ☞ 조사 완료일 당월 말일까지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사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통해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시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
  - \*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시 공사가 수출자 앞 가지는 구상 채권은 연계 단기수출보험 지급보험금으로 상계처리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 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매입)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 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 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  
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  
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 취급은행

-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부산) ('21.12월 기준)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단기수출보험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 지원내용

###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li> <li>☞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li> </ul>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li> <li>☞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li> </ul>

● 보험 조건

구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li> <li>중계무역 : 95% 이내</li> <li>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ul>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 (변경)신청서

###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중견Plus+보험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100만불, 중견기업 30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 (필수가입)	무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비상위험 [수입자 위험], 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비상위험 [신용장 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 (필수가입)	중소 최대 1백만불 (중견 최대 3백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클레임 위험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환변동보험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입기업
  -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업체도 지원

###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수출 일반형 기준)

〈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환차손을 지급받고, 환율 상승시 환차익을 납부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범위제한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보험금과 이익금을 일정범위 (±50원) 내로 제한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www.ksure.or.kr/fx/index.do](http://www.ksure.or.kr/fx/index.do))에서 확인가능

##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과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처리절차



##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중  
(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 청약 및 결제

-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 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

###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 지원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소재·부품 장비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 처리절차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채권 회수컨설팅(무료)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채권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R등급\*, 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등 미납 시, 수입관련 선수금, 사인 간 금전거래 채권
-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책정한 불량등급

### 지원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 되는 수출기업에 공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해외채권 회수대행
  -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추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회수 대행
  - \* 40개국 110개기관 해외추심기관과 협약 체결

### 유의사항

-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회수대행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추심기관 수수료 약 25% 및 공사수수료 2% 내외 수준(부가세 별도)
- 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 파산·회생절차 신청이 완료된 건 등
-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 조기 회수상당 권장

###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로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상시 접수 가능)

### 상담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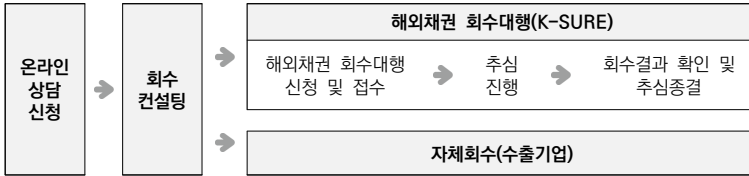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실시 및 해외채권 회수대행 절차 안내
  - \* 채무인정자료 확보, 수입자와의 협상, 클레임 대응방법 등 공사의 축적된 채권회수 노하우를 수출자에게 제공

### 신청서류(회수대행 의뢰시)

- 채권자 관련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 채권관련 서류
  -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서류 등

## 이용절차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 제2편

---





#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 제1편

### 유관기관 (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 제2부 ▶ 신용보증기금
- 제3부 ▶ 기술보증기금
- 제4부 ▶ 기업은행
-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 제6부 ▶ 한국산업은행
- 제7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2편

###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2부 ▶ 중소기업중앙회
-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 제5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제6부 ▶ 한국무역협회
-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8부 ▶ 창업진흥원
- 제9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제10부 ▶ 기타

# 제 1 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R&D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격요건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또는 <http://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또는 과제접수  
→ 과제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별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R&D역량 및 연구윤리
  - 파급효과 : R&D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 자금집행계획 : 연구개발 집행계획의 적정성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국가 R&D를 처음 도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신청가능한가요?

**A** R&D를 처음하는 경우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R&D를 수행하는 산학연Collabo R&D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예비연구 후 2단계 사업화 R&D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Q** 2022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는데 R&D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전용R&D인 창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내 디딤돌, 전략형, TIPS로 나누어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다르니 세부공고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전문기관** : 중소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연구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책임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수출지향형 : 매출액 50~1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직·간접 수출액 100~500만 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민간투자 실적(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 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강소기업100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부장 전략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소부장 일반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지원내용

- 혁신역량 단계별 6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506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475억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147억원) :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44억원) :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 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57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127억원)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일반 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65%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75%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특 회계	강소기업100	최대 4년, 20억	65%	자유응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75%	자유응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투자연계 강화) 민간 선별·육성 역량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 연계과제 확대를 통해 미래 유망기업 집중 지원
- ▶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지향형 사업을 수출성장, 수출강소 과제로 개편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신청·접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bizinfo.go.kr](http://ww.bizinfo.go.kr))



##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2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 단독형R&D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 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디딤돌(신규 84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기업으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지원

- 전략형(신규 98억원) : 초격차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등 미래 신산업 기술보유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TIPS(신규 1,014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 '23년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지원을 위한 특화형 TIPS 신설(3년, 15억원 이내)
  -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년, 3억원		품목지정
TIPS (특화형 TIPS)	최대 2년, 5억원 (최대 3년, 15억원)		자유공모

###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 디딤돌 과제는 지역소재기업 및 지역특화산업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을 통해 지원
- ▶ 전략형 과제는 초격차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
- ▶ TIPS 과제는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특화형 TIPS" 신규 지원

## 신청·접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bizinfo.go.kr)



## Q&A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2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2개)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Q** 디딤돌의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직전년도(2022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용어 설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 미만의 기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공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 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지원규모 (정부)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부	주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조달혁신 10억원)	65%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대기업 1:1, 중견기업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구매연계형 : ('22년) 자유공모· 지정공모 → ('23년) 지정공모 先
  - \* 구매연계형 과제(국내수요처)의 경우 수요처-중소기업 간 신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정공모 과제를 확대하고 우선 지원
  - \* 구매연계형 해외수요처 과제 확대 및 별도 모집

## 신청·접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Q&A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해외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용어 설명

**수요처** : (국내)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E등급 이상)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기업 출연금** : 총 사업비와 별도로 투자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

**조달혁신** : 구매연계형 중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과제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3개 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  
(3개 기업 이상)
  -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기획지원	6개월, 3천만 원	90% 이내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네트워크 기획지원 추진여부 미확정

## 신청·접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지원)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Q&A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공동연구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 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분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가 부도,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 기관 과제책임자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적(위탁연구 포함)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3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3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http://ww.bizinfo.go.kr))



## Q&A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내외의 과제만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 기술이전 기관(대학·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철수 참여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http://ww.bizinfo.go.kr))



## Q&A

**Q** 테크브리지(Tech-Bridge)란?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8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리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KTRS 평가** :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혁신형 R&D)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현장형R&D)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113억 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최대 2년, 2억 원 지원)

- 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25억 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지원(최대 2년, 10억 원 지원)
- 현장형 R&D(신규 105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최대 1년, 0.5억 원 지원)

## 신청·접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조공정의 원가절감,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품목에 대한 적합성, 리쇼어링 또는 오프쇼어링 방지, 수입대체 가능 여부 등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bizinfo.go.kr](http://ww.bizinfo.go.kr))



## Q&A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① 사전검증(PoC) → ②사업화R&D → ③임상지원(Track 1단계의 후속)
- (1단계) PoC지원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식약처 협업)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2단계) R&D지원
  - (Track 1)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개발 R&D 지원(3+2년)
  - (Track 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 지원(2년)

〈 지원내용 및 한도 〉

구 분	지원한도	출연비율	지원방식	예산(백만원)	
PoC 지원	최대 8주, 10백만원	100%	자유	400	
R&D 지원	Track 1	최대 3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1,400
	임상지원	최대 2년, 연 1억원	50% 이내	자유	
	Track 2	최대 2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600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증) 핵심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PoC 단계 도입 (연구개발지원단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증)
- (R&D-2Track) 과제특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세분화 지원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bizinfo.go.kr)



## Q&A

**Q** 1단계 PoC가 무엇인가요?

**A** PoC는 R&D 초기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능 검증, 규제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을 진단·평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Q**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식약처 협업으로 구성되어 Poc단계의 사전검증과 R&D수행에서의 전주기 밀착지원을 하며 컨설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 지원대상

- 친환경 분야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구분	개발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리빙랩활용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75%이내	지정공모, 품목지정

-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규과제 지원확대 : ('22년) 14개 → ('23년) 18개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용자 요구 반영정도, 리빙랩을 활용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친환경 부합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bizinfo.go.kr](http://ww.bizinfo.go.kr))



## Q&A

**Q** 리빙랩과 리빙랩활용R&D란 무엇인가요?

**A**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을 시도하는 방법론입니다.  
리빙랩활용R&D는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고도화(기획)하고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반복하는 리빙랩을 활용한 기술 개발 지원을 말합니다.

**Q** 리빙랩 플랫폼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A** 소비자·전문가 패널 구성 및 교육, 패널과 기업 간의 협업 중개 및 촉진, 사용자 수요의 발굴 및 구체화, 실증 및 개선의견 발굴로 전반적인 R&D계획→실증→사업화에 이르는 기술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Q** 리빙랩R&D 지원분야가 있나요?

**A** 소비자·주민 참여의 용이성, 시장 친화적이고 리빙랩 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Scale-up R&D지원을 통해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중기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대학 및 출연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 (조선·자동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
-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 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	최대 3개월, 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Scale-up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이내	자유응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도 위기업종 및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 까지 확대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Q**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위기지역 소재 사·도 내 조선·자동차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채용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23년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23년 공고문 참조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42, 0847, 085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23, 9171, 917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42, 0847, 085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23, 9171, 917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 비율만큼 참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스마트상점 핵심기술의 발굴·기획과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통해 기술 수준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 내용

- 운영기관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스마트기술 발굴을 위해 수요 파악·분석부터 RFP 발굴·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등 R&D 쏠주기 지원

- R&D 기획 :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 R&D 지원 : R&D 기획을 지원받은 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R&D 기획	2개월, 최대 15백만원	75% 이내	지정공모
	R&D 지원	(일반형) 1년, 최대 3억원 (선도형) 2년, 최대 20억원		
	운영기관 지원	2년, 최대 10.6억원	100% 이내	자유응모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R&D 지원

대의 경영환경 속 선제적인 구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창출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구조혁신 탐색 R&D : 구조혁신(사업전환·추가,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연구역량 초기단계 중소기업
  - 구조혁신 고도화 R&D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구조혁신 재구축 R&D : 사업 재확장·재조정 희망 기업 중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또는 중진공·캠코 협업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구조혁신 R&D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인 성장동력 창출 및 신시장 진출환경 마련
  - 구조혁신 탐색 R&D : 기술기획 기관을 통하여 기술·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구조혁신 고도화 R&D : 사업전환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양산 체계 개발 지원
  - 구조혁신 재구축 R&D : 사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양산 체계 개발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조혁신 탐색 R&D지원	3개월, 0.3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구조혁신 고도화 R&D지원	2년, 5억원 이내		
구조혁신 재구축 R&D지원	2년, 3억원 이내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구조혁신처, 기업개선센터)
- 구조혁신지원 홈페이지([3t.kosmes.or.kr](http://3t.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전용자금지원 프로그램 [중진공]

**중진공-캠코 협업 사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 “국세 물납법인”, “S&LB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한 기업[중진공-캠코]

#### \* 중진공-캠코 협업사업 세부내용

- ① 패키지형 회생기업 지원 :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및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지원
- ② 국세물납 법인 : 캠코 관리 국세물납기업(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현금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하도록 한 제도)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진공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 ③ S&LB 사업 : 캠코 S&LB(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기업의 자산을 인수·재임대하여 사업지속을 지원하는 제도) 참여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진공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R&D 선순환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 GCL TEST\*를 수행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II·III), 브랜드K 및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중 중소기업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역량 진단(Global Competence Level Test)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지원내용

- (공통) 수요·인증 등 해외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기술개발 맞춤형 지원
-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 신규 9.6억 원) : 목표 해외시장의 특성·요구사항 등을 충족·만족하기 위해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진단·기획을 지원(최대 3개월, 32백만원 지원)

- 글로벌 타겟 R&D(2단계, 신규 10.4억원): 진단·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의 고도화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인증획득 등 R&D 지원(최대 2년, 3억 원 지원)

## 신청·접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시장 진입 가능성, 기술개발 필요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30~0544
- 전용정보사이트 : [www.iris.go.kr](http://www.iris.go.kr)(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GCL TEST 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과제 신청 시 GCL TEST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R&D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글로벌 진단·기획을 통해 목표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신 후 R&D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 ▶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또는 총괄 책임자
- ▶ 전년도 동 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한 기업
- ▶ 기타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에 따라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 서비스 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 서비스 지원

\* 최근3년('20~22년) 이내에 바우처 구매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

● 지원 방식(자유응모)

내역사업	지원기간	정부지원 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금
시험설계·분석	최대 180일 이내	최대 25백만원	70%	30%
사업화		최대 10백만원		

\* 바우처 발행 시, 내역사업 및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도 위기업종 및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 까지 확대

**신청·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온라인 신청서, 신청자격, 연구장비활용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 서류 확인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한국산학연합회(관리기관) : 044-410-3321 ~ 3322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시험설계·분석과 사업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시험설계·분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기술단계(TRL)의 1단계~5단계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는 인증·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기술단계(TRL)6단계~9단계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관연구개발기관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사업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바우처 신청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구축된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선정됩니다.

**Q**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우선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지원대상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성공)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완료된 혁신제품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 ▶ 완료(성공) 판정된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
-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혁신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 공공구매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 혁신제품 구매 한도없이 시범활용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제품의 신뢰·안전성, 경제성 등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중심 평가
- ▶ 하자보증, 의무이행사항 등 법적 안전성을 위한 법률자문 검토 도입
- ▶ 시범활용 품평회를 통해 우수제품 추천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 중기부 혁신제품 시범활용 신청 시 예산 우선 지원

## 신청·접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23.1월 중 공고 예정)
- (혁신제품 시범구매) 모집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문, 전자메일로 신청('23.2월 중)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조달 적합성 검토
- 시범구매 파급효과, 적정성 검토 등 수요매칭 평가 및 구매심의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044-300-0711, 0713, 0715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에서 해당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규제특례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R&D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 개선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특구사업자, 규제 개선이 완료된 특구 세부사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지역혁신기관 또는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숨은 규제 및 과제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신규 550백만원, 3개월, 최대 0.5억원)
- (2단계, R&D지원) 특례 종료 중소기업 및 특구 전후방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신규 1,200백만원, 2년, 최대 7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1단계) 사전기획	3개월, 최대 0.5억원	75%	자유공모
	(2단계) R&D 지원	2년, 최대 7억원	75%	자유공모

## 신청·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bizinfo.go.kr](http://ww.bizinfo.go.kr))



## Q&A

**Q** 규제 개선이 완료된 특구 세부사업과 연관 산업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및 개념계획서 내의 과제 기획 내용과 규제 개선 특구사업 간의 연관성을 선정평가를 통해 판단될 예정입니다.

**Q** 규제자유특구 지역 및 임시허가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http://rfz.go.kr>)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산업육성+(R&D)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지역생태계를 견인할 선도기업의 상용화R&D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 성장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종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 지역주력산업 분야(시·도별 3~4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지역생태계를 견인할 선도기업의 상용화 R&D 지원(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지역스타기업육성)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사도	주력산업	사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 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신청·접수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 Q&A

Q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A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지역스타기업은 무엇인가요?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반드시 지역스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지역스타기업은 지자체에서 고용 및 매출성장,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지역스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산업육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지역특화산업(지역주력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원대상

- (주력산업 기업육성 - 지역 혁신기관 주관) 중앙에서 선정한 주관 기관(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에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주력산업 영위기업을 공고 및 선정
- (주력산업 기업육성 - 테크노파크 주관)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주력산업 영위기업을 공고 및 선정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중앙에서 선정한 주관기관에서 시군구별 육성 산업군 및 기업군에 적합한 기업을 공고 및 선정
- (수출기업 Biz 플랫폼 구축 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주력산업 영위기업을 공고 및 선정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 주력산업 기업육성(지역 혁신기관 주관)

-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수혜기업당 연 3천만원 이내)

### 〈사·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사도	주력산업	사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 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 주력산업 기업육성 (테크노파크 주관)

- 주력산업 영위기업(POST BI, 스타기업, 선도기업 등)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마케팅, 시범분석, 인증, 지적권 확보 등을 기업지원(기업당 연 5천만원 이내)

###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지역 시·군·구내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제품 고급화 등 사업화 지원(기업당 연 5천만원 이내)

### ● 수출기업 Biz 플랫폼 구축 지원

- 기업 및 제품군의 메타버스 플랫폼 내 홍보에 활용되는 가상 콘텐츠 제작 및 수출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신청·접수

- 주관기관(혁신기관)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http://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 (주력산업기업육성-지역 혁신기관 주관)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시군구 연고산업)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주력산업기업육성-테크노파크 주관)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http://www.rips.or.kr))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 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업, 원전산업 협력업체, 스마트 생태공장 선정기업,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유턴기업, 조선기자재 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내 입주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도입기업, FEMS 솔루션 도입기업, 에너지 신산업 선정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예정 기업, 여성기업, 상생결체 우수기업, 군수품 제조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제도개선

- 신규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한해 현장확인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 공장설립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일정 추가 제출
- 기초사업 기업 중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중간1 이상)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따른 지원금 지원
  - \* (예시) 기초사업 수행후 중간1 수준을 달성한 기업이 중간1 신청 : (현행) 5천만원 → (개선) 2억원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 Q&A

Q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도입기업 인건비는 도입기업부담금 20% 이내로 현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공장 구축이후에 솔루션 관리에 대한 후속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A

6개월간의 집중 AS기간 도입을 통해 구축 공장의 기능과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집중 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 및 평가위원 평가 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kr](http://www.smart-factor.kr))의 '알림/참여마당'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 공장 내 모든 장치, 원료, 공구 등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제품의 주문을 받고 난후 제품이 완성될때까지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정보를 현장실무자나 관리자에게 보고, 신속한 응답을 통해 생산조건을 변화시키며 가치없는 요소를 감소시켜줌으로써 생산공정과 기능을 개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제어기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람이 지정해둔 대로 로봇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장치, 제어로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서 제어를 위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제품수명주기관리, 제품 설계도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는 것이 목적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고를 줄일 수 있음

**CPS(Cyber-Physical Systems)**: 정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계구성요소와 결합하여 데이터 전송 및 인프라(인터넷 등)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쏠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적용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1,000개사 내외)
  - 기본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노하우 전수
  - 심화 : 현장제조, IT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스마트 공장 맞춤형 애로 해결



구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본	마이스터 1인 x 8회 (약 1개월), 252만원	90%
심화	마이스터팀 x 24회 (약 3개월), 756만원	
종합	마이스터팀 x 48회 (약 6개월), 1512만원	

\* 마이스터팀 : 현장제조전문가, IT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최대 3인 이내

## 신청·접수

- 기간 : '23.03.(예정)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 Q&A

**Q** 스마트 마이스터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최소 10년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신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 전문 분야별 마이스터를 선택하여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마이스터 사업 신청은 연중 신청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A

마이스터는 연중 수시 신청으로, 예산소진 시 마감됩니다.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미참여)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추가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상담센터 : 1644-173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 Q&A

Q

사업신청 후 수준확인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A

사업 신청 후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수준확인서 발급 및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참여한 기업에 한해서 수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법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에 로그인 후 사업관리 - 수준확인서 발급 탭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 AI 문제해결 컨설팅 실증(정보화)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AI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 기업별 제조현장에서 AI 솔루션 기술검증 및 현장 적용 지원

### 지원대상

-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조 공장(현장) 및 제조데이터(Raw data) 보유 필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능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AI 컨설팅
  - AI 기술 도입으로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 데이터·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컨설팅·멘토링 지원
- AI솔루션 실증지원
  -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신청·접수

-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솔루션 도입 가능 여부, 사업 추진배경과 도입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이해도와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 종합 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http://www.kamp-ai.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943~944



## Q&A

**Q** 시컨설팅만 받거나 솔루션 실증지원만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AI컨설팅의 결과로 AI솔루션 도입 및 실증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어있어 하나만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Q** 스마트보급 확산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AI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스마트보급확산사업과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 지원 사업은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제조데이터** : 제품의 제조과정부터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 활용과정까지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



##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공급기업 3개사 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컨소시엄내 클라우드사업자 참여 필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컨소시엄당 최대 8.3억원 지원) 업종별 대표 공정에 적용가능한 종합솔루션(MES, ERP, PLM 등) 개발 지원
  - \* 정부출연금 비중 50%이내(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3.01.(예정)부터 '22.02.(예정)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컨소시엄 구성시 도입기업의 수 제한은 없으나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발시에는 도입기업이 많은 컨소시엄 우대 예정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72



## Q&A

**Q**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인가요?

**A** 사업 신청 자격사항으로 3개사 이상의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사항입니다. 참여 공급기업은 반드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참여이력 또는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Q** 자체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가요?

**A** SaaS형태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마켓을 통해 다양한 제조기업에 확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한 자체 클라우드는 활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형태여야 합니다.

---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재직자)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데이터 촉진자로 육성,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또는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을 구축 수행중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교육지원)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예측, 설비고장 사전진단(예지보전) 등 제조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 (비대면교육, 2개월) 인공지능 기초, 문제유형별 분석방법론, 문제해결 사례학습 및 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6개월) 스마트공장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자사현장에 직접 적용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신청·접수

- 교육기관 담당자 이메일 신청·접수(translator@kaist.ac.kr)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생 경력 및 현장근무 인력, 기업 대표자 의지, 스마트공장 수준, 제조데이터 수집·저장 현황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942



## Q&A

**Q** 지원사업 참여이력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Q** 기업당 신청인원의 제한은 없나요?

**A** 네. 기업당 교육생 신청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되는 교육생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제조데이터** : 제품의 제조과정부터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 활용과정까지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

**제조데이터 촉진자** : 제조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연계·조정자

## 제2부

---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당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지원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출 사유	지원 한도
부도매출 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어음·수표 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 대출조건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 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64~8.81%	신용등급별로 연3.64%~9.85%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담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li> <li>•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li> </ul>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3.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공제부금 납부**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 지급이자 등
  - 장려금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지급
  - 만기후 해지시 만기이자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가입 및 대출신청**

- 가입 : (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대출 가능)

## 제출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23년 대출 6,000억원, 가입 업체 수 18,150개 목표

대출종류	대출목표(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4억원
어음·수표대출(제2호)	30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5,696억원

\* 대출 5,339억원, 가입 업체 수 17,114개('22. 11월말 기준)

##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조정제도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모든 업종 가능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방위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신청요건

-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 업종의 ③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함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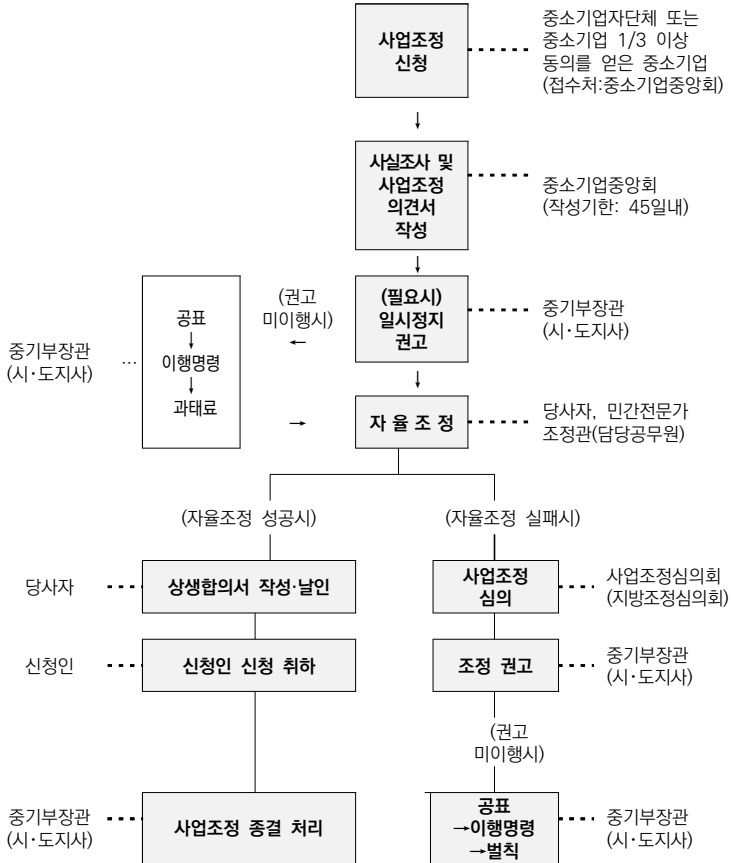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http://www.kbiz.or.kr))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우 07242)

## 제출서류

- (단체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등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4-204-7938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 : 02-2124-3173~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A

**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 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개점비용 :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 제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명문 (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선정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제외 업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지원혜택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 선정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선정기준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 제출처
-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3층)
  -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층)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 선정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 \* 선정현황 : '17년부터 '22년까지 총 37개사 선정(중소기업 29개사, 중견기업 8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6 → ('18)4 → ('19)4 → ('20)5 → ('21)11 → ('22)7

## 문의처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6, 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02-3275-3093, 2106)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4-204-7444, 7448)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 [www.time-honored.or.kr](http://www.time-honored.or.kr)



## Q&A

**Q**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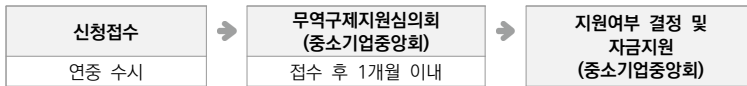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한)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1부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 용어 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대리인 선임비용의 최대 50% (최대 1,500만원 한도)
  - 법무부 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
  - \* (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 신청접수

-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체결한 계약서)
-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사본 각 1부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1부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사본 1부
-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사본 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 계좌통장 사본 1부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3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협력팀 : 02-551-2029



## Q&A

**Q** 신청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귀 사(조합)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대기업과의 계약서 상 중재조항이 있거나, 별도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한도)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해주는 것이며,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중재합의(분쟁 당사자 간 계약서에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 합의), ②중재신청(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비용예납,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③중재판정부 구성(중재합의 또는 신청 금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④중재심리(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증거조사), ⑤중재판정

### 용어 설명

**중재제도란?**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수출컨소시엄 사업

동일·유사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사전, 사후관리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 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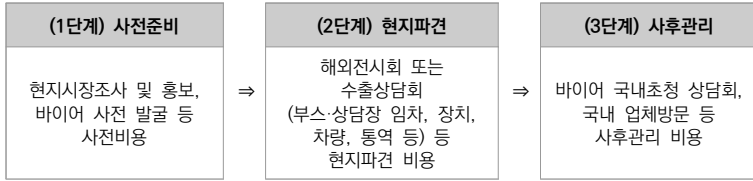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내용

- 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지원
- 지원비율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100%



## 신청·접수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http://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메뉴 중 “사업신청→주관단체 사업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메뉴 중 “사업신청→수출컨소시엄(전시회)/(상담회)”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 참여기업: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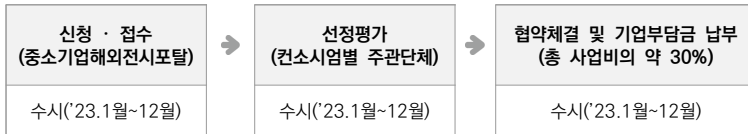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 처리절차

- 전체일정



● 참여기업



## 지원규모

- 약 78개 컨소시엄 내외, 141.12 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go.kr](http://www.smes.go.kr/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 지원제도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li> <li>▷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li> <li>▷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li> <li>▷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li> <li>▷ 적격조합 확인제도</li> <l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li> <li>▷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li> <li>▷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li> </ul>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li> <li>▷ 직접생산 확인제도</li> </ul>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li> <li>▷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li> <li>▷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li> </ul>

###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22~'24년 적용)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 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中企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2인견적 수의계약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운영
  - 협동조합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 적격조합 확인제도
  - 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 02-2124-3241~4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 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편견 해소 및 인식도 제고
  - ① 중소기업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 (유튜브)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홍보
    - (인스타그램) '19.6. 신설, 총 게시물 174개, 팔로워 7,725명 ('22.12.9. 기준)

- (블로그) 누적 방문자 693만명 달하는 파워블로그, 연간 콘텐츠 300여개 지속제작 중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수필 부문 콘텐츠 접수 및 수상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 중기 경영대상 시상

- 법인/개인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고용안정·창출, 성장성, 복리후생, 연구개발 등)

■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인식도 조사 및 중소기업 채용 동향 조사

-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인식 및 중소기업 채용 현황 시계열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언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 : 02-2124-4014



##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청년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찾고, 널리 홍보하여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민관 일자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DB를 구축하고,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현황과 다양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직관적 제공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촉진

### 사업내용

- 정부·지자체에서 인정받은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발굴
  - 재무성과, 신용등급, 영업이익, 낮은 퇴사율, 종사자수 10인 이상 등 기준
- 위치 기반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소재와 채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주변에 있는 우수기업 지도상 확인, 지역·업종·복지 등 중소기업 맞춤형검색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인증내역·재직자 평가/리뷰·임금·복지·재무·채용공고 등
  - 정보제공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통한 일자리정보 상시 업데이트
- 우수 중소기업 채용공고 선별 및 일자리 매칭지원

- “신입/정규직/연봉 3,000만원 이상”의 우수공고 전용채용관 구축
- 타 기관 플랫폼과의 연계 통한 일자리 알선, 인재 추천 등 매칭 지원
-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로 구직자-구인기업 객관적이고 편리한 채용 지원

## 문의처

---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 : 02-2124-4011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 지원내용

-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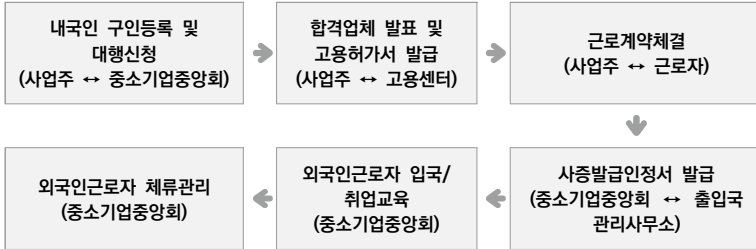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지 기본항목 점수(100점) 및 가점 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6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8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및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
- 사업장 및 기숙사 내/외부 사진 총 14가지(전경, 난방시설, 잠금장치 등)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http://fes.kbiz.or.kr/>)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23년도 제조업 지원 규모는 110,000명

구 분	배정인원	비 고
일반인력쿼터	89,970명	'22.11월, '22.2월, 5월, 8월 신청 예정
재입국취업자	20,030명	수시접수
합 계	110,000명	

\*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규모 10,690명 축소(당초 28,966명 → 18,666명)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 02-2124-3281, 3284, 4390~3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대표번호 : 1666-5916



## Q&A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A**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명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 〉

조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 부족 업종	(10)식료품 제조업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부리 산업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에서 부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2-2183-1647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1인 상향
특정 지역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고용 총 한도 20% 상향
노동 시간 단축 확인 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30% 상향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3개월 전 대비 내국인 추가 인원만큼 신규 한도 상향

\* 최대 3가지 조건 중첩가능

#### 용어 설명

**재입국특례자 제도(舊 성실외국인근로자)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 부여하는 제도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li> <li>전기·가스·수도사업</li> </ul>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li> <li>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li> </ul>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영상·정보서비스</li> <li>도·소매업</li> </ul>	매출액 5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li> <li>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li> </ul>	매출액 3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사회복지서비스</li> <li>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li> </ul>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li> </ul>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li> </ul>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가입제한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원내용

-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음
  - 노령사유 발생 시(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공제금 신청하면 지급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5,675만원)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 6.6%=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16.5%=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41.8%=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44.0%=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46.2%=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의료대출(무이자), 재해대출(무이자)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5만원 적립 지원(1년간)
-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역량강화 · 작은교실 · 힐링캠프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물, 문화공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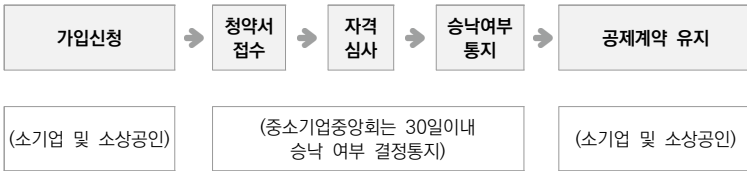
## 월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 가입절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 가입서류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문의처

---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http://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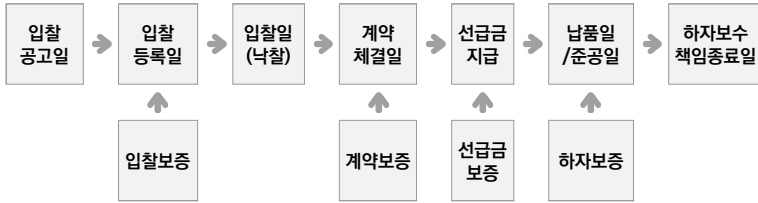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금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금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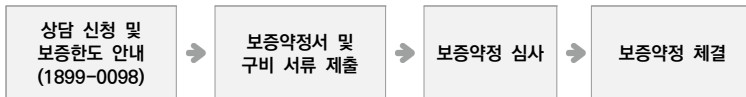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한도거래약정체결 후 중소기업보증 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에서 청약 신청(www.gbiz.or.kr)을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 인터넷 이용 가능

### 제출서류

-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약정 신청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Tel. 02-2124-4341~2 Fax.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 Q&A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 지원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파주, 포천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PL리스크 예방 대책 지원
  - PL리스크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PL사고사례집 배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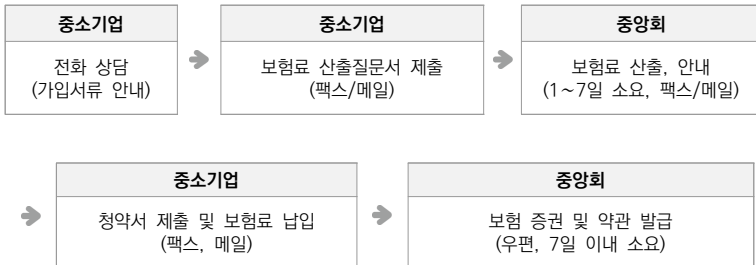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질문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plkorea.com)PL자료실)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참조

## 처리절차



-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Tel. 02-2124-4351~4, Fax.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PL단체보험(www.plkorea.com)



## Q&A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 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 배상책임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 지원내용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 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 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 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 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 간편실손 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위해 시장진출의 기회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목재가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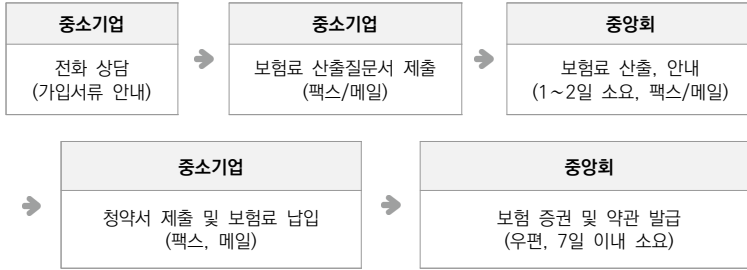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http://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insbiz.or.kr](http://www.insbiz.or.kr))자료실>설문서) 참조

## 처리절차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Tel. 02-2124-4357~8,  
Fax.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없이 원부자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부자재
  - \* 지역신보재단 :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 전용보증 차별성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5%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최대 1/2),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 우대 적용
    - \* (참고)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해외구매는 사용 안됨)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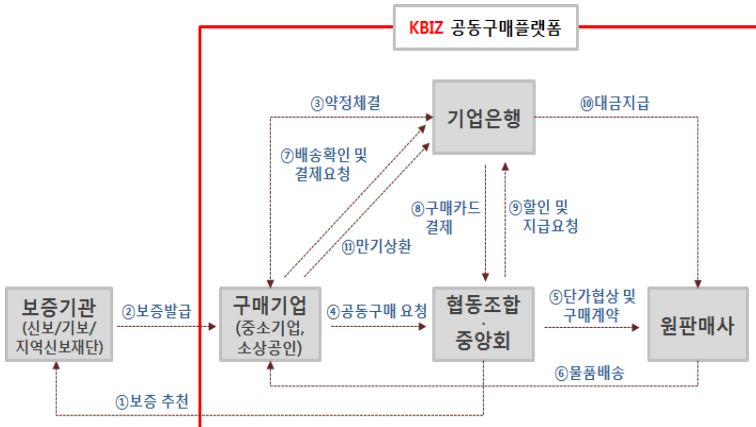
- 참여 신청서를 조합 포탈(johap.kbiz.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 자세한 신청서류는 조합 포탈(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전용보증' 검색) 참조

## 처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 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



## 문의처

---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Tel. 02-2124-3221~3223  
Fax. 02-780-9785, 이메일 : hy6114@kbiz.or.kr
- 홈페이지 : KBIZ공동구매플랫폼(coopbuy.kbiz.or.kr)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체질개선 및 기반강화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우대사항 : 위기관리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코로나 19 대응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 단, 지원 사업이 집중AS 기간 중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S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중간2 수준 이상	최대 2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A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최대 1억원	
	B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6천만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소기업 대상 지원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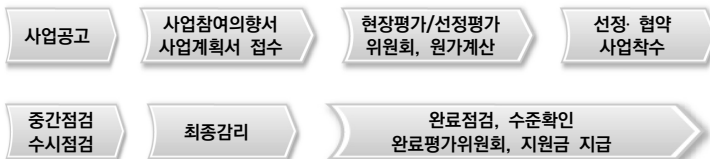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 증명원(3개월 이내),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류 등

\* 사업계획서 접수 전 사업의향서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0억원(정부 100억, 삼성전자 100억)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 4311, 4313)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 Q&A

Q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기업 뿐 만 아니라 비협력기업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3정5S, QSS 등과 같은 제조 현장 혁신 활동,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특징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http://smart-factory.kr)) '공급기업 소개'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기업 중에서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공급기업의 구축 전문 분야와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고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검토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 전수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체질개선 및 기반강화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우대사항 : 뿌리기업,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코로나 19 유관기업 및 피해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 단, 지원 사업이 집중AS 기간 중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후 시스템 중간1 수준 이상	최대 2.4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8천4백만원	
유형2	기초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계획서 접수 전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30억원(정부 15억, 포스코 15억)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 4311, 4313)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 Q&A

Q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중앙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대기업의 협력기업 뿐 만 아니라 비협력기업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며, 3정5S(깨끗하고 체계적인 제조현장 구축), QSS(Quick Six Sigma) 등과 같은 제조현장 혁신 활동, 판로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특징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http://smart-factory.kr)) '공급기업 소개'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기업 중에서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공급기업의 구축 전문 분야와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고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검토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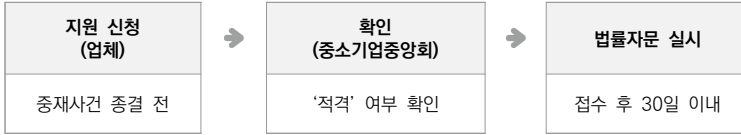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2시간 기준)

### 신청·접수

-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 (제출서류)
  -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처리절차)



- (접수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등과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승계를 진행(희망)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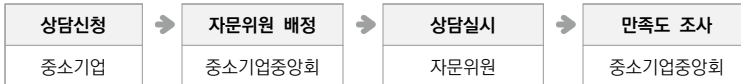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내용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 가업승계 세제 기본요건 충족여부 진단 및 세액 추정 등
- 일반상담 및 자문방식
  - (상담) 온라인·전화·대면(신청인이 자문위원 사무실 방문) 상담
  - (자문) 자문위원이 기업현장에 방문(1일 원칙)하여 자문
    - \* 필요시 2일 연장 가능
- 주식가치 평가 자문
  - \*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외감 법인 제외
  - 주식가치 평가 및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세부담액 추정 등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전화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신청 → 자문위원 매칭
  - 전화 : 기업 기본정보 및 자문요청 내용 확인 후 자문위원 매칭 (☎ 02-2124-3165, 3146~7)

## 자문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65, 3146~7)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 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850개사 내외)

\* 후속지원 : 창업아이템사업화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 200개사 내외)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창업한마당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선도대학 추가 선정('19.2월 선정 예정)

### 신청·접수

- 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li> <li>※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li> </ul>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li> <li>※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고정금리, 운전(5년, 거치 2년포함) 및 시설자금 (10년, 거치 4년 포함) 지원</li> </ul>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li> </ul>



## Q&A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 시 거주지역 이외의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 소개 자료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은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창업아이템사업화는 나이, 학력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
  - 협의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자체계약) 등
  - 신청요건 : 아래 ①, ②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 ① 기본요건 : 모두 해당해야 함
      -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
    - ② 공급원가 신청요건 : 하나 이상 충족 필요
      - 특정 재료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
      -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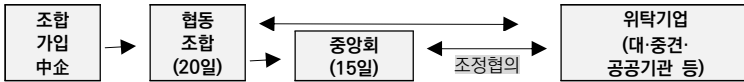


### 지원이 안되는 경우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

## 지원내용

-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
  -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
- 진행 협의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내로 서류검토
  -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내 협의. 다만 위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



※ 합의 불성립시, 분쟁조정 신청(수탁, 위탁기업/조합/중앙회→중기부)

## 신청·접수

-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 (수·위탁거래 계약기간 내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 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 납품대금조정협의



## Q&A

**Q** 신청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중소기업매뉴얼(홈페이지/상담센터/납품대금조정협의/알림마당)에 신청요건과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Q**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위탁기업은 조정협약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의무가 있고, 만약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5천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협의 거부 → 분쟁조정 → (시정 필요성 인정될 시)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공표 → 공표 후 1달 내 시정명령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

### 용어 설명

**수탁 · 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유희·향락업, 주점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①과제 신청을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지원내용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사전진단·컨설팅 지원(선착순 지원)

## 〈 스마트서비스 유형 (예시) 〉

분야	세부 분야(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공공 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 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 (접수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kbiz.or.kr>)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http://www.smb-service.kr))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증명원(3개월 이내),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사업 및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정책에 따라 변경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홈페이지(<http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4312, 4313)



## Q&A

**Q** 비제조 분야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지원이면, 제조업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제조업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Q** 공급기업인데 외산 솔루션을 도입기업에 구축하여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산솔루션 도입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국산솔루션이 없거나 도입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외산 솔루션에만 있는지 여부 등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현장조사 및 평가위원 검토 대상)

**Q** 자체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도 공급기업 풀에 등록하여야 하나요?

**A** 네, 공급기업 풀에 등록해야 합니다.(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계정으로 각각 회원가입 후 기관 등록) 공급기업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정보의 기관구분은 반드시 '공급기업'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기업 풀 등록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급기업 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람, 도입기업으로 가입한 계정과 다른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해야 함



## 중소기업 ESG 경영·탄소중립 대응지원

확산되는 ESG 경영에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상담·안내서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ESG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ESG 인식확산 교육
  - 유튜브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 (총 10강)  
(www.youtube.com → ‘중소기업중앙회’ 검색 → ‘KBIZ중소기업중앙회’ 채널 접속 → 재생목록 →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 대상 ESG 기본개념 등 교육 실시
- ESG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의 ESG 평가 대응 지원을 위해 개별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수준 진단 및 개선점 제시(업체 개별 보고서 제공)
  - 신청대상 : ESG 경영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 \* ESG 평가 有경험 기업, 대기업 협력사, 수출기업, 고탄소 배출업종 등 ESG 우선영향기업 우대

- 업종별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공통공정 온실가스 측정·가이드라인 제시, 배출량 진단, 감축전략 마련  
(조합·업체 대상 보고서 제공)
  - 신청대상 : 탄소저감에 관심있는 협동조합·단체 및 회원사
- ESG 애로신고센터 운영
  -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청취 및 개선 위해 온라인 상담센터 설치·운영  
(www.kbiz.or.kr → 지원사업 → ESG경영지원 → ESG 애로신고센터)
  - 상담분야 : 대기업 요구, 평가비용 과다, 평가기준 혼란, 교육안내 등
-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안내서(사례집·규정례) 배포
  - 사례집 : ESG 경영 관련 우수 및 위기사례, ESG 요소별 모범 사례 및 실천방안 등 소개
  - 규정례 : ESG 평가 대응을 위한 기본 규정 참고(안) 제시
  -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ESG경영지원 → ESG 사례집&규정례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및 협동조합 포털 (www.johap.kbiz.or.kr) 공지사항 통해 교육일정 및 컨설팅사업 공지 및 신청안내 (연중)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ESG팀 02-2124-3158

## 용어 설명

**ESG 경영**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정당성 확보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

분야	ESG 경영활동(예시)
E	■ 온실가스 배출 관리, 환경법규 준수,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등
S	■ 지역사회 참여, 사회공헌 노력, 근로자 안전, 복리후생, 소비자 안전 등
G	■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다양성, 감사제도 운영, 뇌물·부패 방지, 내부고발자 제도 등



## 제3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안남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보조금) 등 패키지 지원
  - 창업교육 : 창업형태별, 창업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 지원
  - 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 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사업화지원 : 창업교육 수료생 중 심사하여 사업화 보조금 일부 지원(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 정책자금 : 경영체험교육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 (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신청)
    -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23.2월 예정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교육)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17개 지역, 기수 당 500명 내외)
  - \* 창업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지역량, 창업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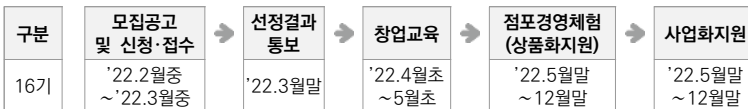
사관학교	연락처	장소
서울/강원	☎ 02-717-96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부산/울산/경남	☎ 051-463-0213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경북	☎ 053-629-4637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남/ 전북/제주	☎ 062-367-0135	광주 서구 천변자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경기	☎ 031-204-7035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층
인천	☎ 032-822-260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713호
대전/충북	☎ 042-363-7494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창업자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 \* 세부 심사기준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시스템 직접입력)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

## 처리절차



- \* 세부 일정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500명 내외(예산 199.7억원)
  - \* '22년 지원현황 : 485명(예산 197.5억원)

## 문의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6~7727



##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A** 네, 교육 수수료 후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총 사업비의 50%), 인건비, 임차료 등 현물매칭이 가능합니다.



##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업종별로 입지평가·수익분석·경쟁분석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민(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도상 위치를 기반으로 매출, 인구, 소득·소비 등 창업·경영관련 다양한 상권정보 제공
  - ① 간단분석 : 행동동 및 업종에 대한 추정매출, 업소 수, 유동인구 등
  - ② 상권분석 : 선택영역에 대한 요약, 업종·매출·인구분석, 지역 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시계열 정보
  - ③ 입지업종 분석
    - 입지현황 : 반경 200m내 입지들의 업소 수, 매출 건수, 증감률 정보
    - 매출예측 : 15개 주요 업종에 대해 유사 입지 기반 매출 예측 정보
    - 입지평가 : 특정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예상 매출액과 평균을 종합평가
    - 업종추천 : 업종·지역별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 ④ 수익분석 : 목표매출 및 고객 수, 유사입지·업종의 수익분석
- ⑤ 경쟁분석 :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 평가
  - \* 안전(초록)-주의(노랑)-위험(주황)-고위험(빨강)
- ⑥ 창업기상도 : 5개 업종에 대해 유동인구·매출액을 기반으로 창업 위험도 예측정보 제공
- ⑦ 점포이력 : 관심 지역 및 입지에 대한 업소 이력(개·폐업 정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DB 재설계 및 업종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데이터 품질 제고
  - \*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상가DB 구축 및 표준산업분류 기반 업종분류 체계 마련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및 품질 제고
- ▶ 배달주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배달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배달 건수·주요 이용 시간대·연령대 등 관련 분석 서비스 제공
- ▶ 통계 분석 서비스 강화 및 시각화 기능개선
  - \* 지역·업종별 동태적 상권현황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분석 서비스 강화 및 데이터 시각화 기능개선
- ▶ 매출예측 서비스 확대
  - \*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심 지역 예상 매출정보를 제공하는 AI 매출예측 업종 확대(기존 10개 → 15개)
- ▶ 자동 상권영역 설정 기능 개설
  - \* 전국 도로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로 거리 및 업종 현황 등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자동 상권영역'을 구현하는 서비스 신설
- ▶ 구독 서비스 신설
  - \* 관심 지역·업종 및 잠재 고객 현황정보를 카카오톡·문자·메일로 수신할 수 있는 '상권 맞춤형 정기구독 보고서' 서비스 개설

### 이용방법

- (PC·모바일)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biz.or.kr>)

## 문의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헬프 데스크 : 1644-5302



## Q&A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처와 갱신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기반 데이터는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20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다른데 최소 월 단위에서 최대 반기별로 갱신되며,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오프라인 교육)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 (오프라인 교육)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 (오프라인 교육) "사업참여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교육생
- ▶ (오프라인 교육)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적발된 교육생
- ▶ (오프라인 교육)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공고를 통해 고지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 교육기관이 수행)
  -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
  -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지원
- 전용교육장 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 중점 지원(5개 전용교육장)
- 소상공인 온택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온라인 교육을 제공
- 민·관 협업 교육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위해 민간 기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준별 플랫폼 입점 교육 및 바우처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c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csbiz.or.kr) →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 문의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c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위탁운영기관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Q**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은 1년에 몇 번 수강할 수 있나요?

**A** 전문기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경영개선교육은 각 2회, 2회, 1회 수강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온택트(On-Tact)** :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뜻함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및 발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강한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 피칭 오디션 방식의 단계별(3단계) 경쟁을 통해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최대 1억원) 및 판로·투자 등 후속지원
  - \*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최대 5천만원) → (3단계)스케일업(최대 5천만원추가)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
  - 펀딩역량강화(교육,코칭)와 펀딩활동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사업아이템 등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6~7727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강한소상공인 이란?

A

기존의 경영아이템에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스타트업, 이업종 등) 융합·연결을 통하여 제품·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Q

사업화자금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과 다양한 분야(스타트업, 이업종 등) 간의 팀을 이루어 소상공인 아이템의 고도화 실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단계별 피칭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 대상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 신청·접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6,000개 업체 내외(94.8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731~2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http://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http://www.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신청·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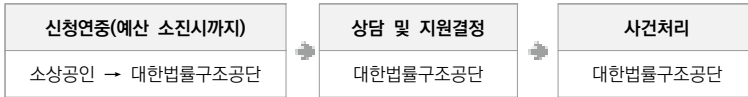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예산 1억원)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1~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중위소득 125% 기준 : (2인가구) 4,320,194원, (4인가구) 6,751,205원 (2023년 기준)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 신청요건

구 분	신청 요건① 또는 ②)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준비단계	① (예비)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② 설립 6개월 미만
초기단계	①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① 설립 4~6년차이면서 조합원 10인 이상(연합회 포함) ② 설립 4~6년차이면서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5% 이상 증가
도약단계	①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조합원 20인 이상 ②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최근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10%이상 증가

## 지원내용

- 교육 : 교육, 상담,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 지원
-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 공동장비
  -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판로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및 오프라인 박람회,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판로 지원

##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 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7924, 7926)
-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 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 성장잠재력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소관 부처의 추천기업 중 공고일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요건에 충족한 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sv.kibo.or.kr) 판별 소셜벤처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예비자활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인정·판별 취소 기업 등(세부내용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신청유형
  - (도약지원) 18개사 내외 선정, 보조금 1억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 (스케일업) 4개사 내외 선정, 보조금 3억원 이내(보조 75%, 자부담 25%)
    - \* 소상공인부터 중기업, 소기업까지 지원 가능
- 주요지원내용
  - (필수지원) 기업진단·컨설팅, 전문교육
  - (선택지원)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분야 내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 자율 선택 및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개요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월중 공고 예정(공고문 참고)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자격요건 검토('23.2~3월)→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을 활용한 1차 평가('23.2~3월)\*→선정심의위원회(발표평가 및 사업비 조정)('23.3~4월)
  - \* 소셜벤처의 경우, 소셜벤처 평가모형에 따른 별도 평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팀(042-363-7923, 7925)
-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은?

A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이상 5가지 기업유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인정·판별서 등의 확인서류로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Q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만 지원 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창업기를 지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로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예비자활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예비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험형 스마트마켓

- \*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체험과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형태의 상점  
(예시) 전자칠판을 통해 쉽고 재밌게 베이킹 클래스도 배우고, 소비하는 곳

### 지원대상

- 경험요소 및 스마트요소 구현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 ①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② 업종(도소매업) ③ 우대사항(필수아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 영위, 세금 체납, 단순 무인점포, 허위 신청,
- ▶ 기한 내 완료불가, 중복지원, 기타 공단에서 지원 제외로 판단한 경우

### 지원내용

- (1) 경험요소(온라인 매장과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만의 이색 체험 또는 색다른 경험)와 (2) 스마트요소(경험요소 구현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
  - \* 경험요소와 스마트요소 모두 신청 必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세는 환급가능함으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지원금액 확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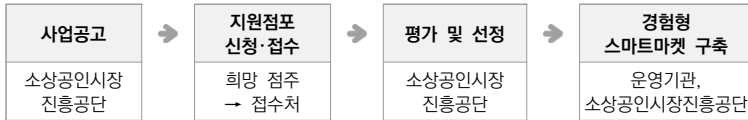
구분	지 원 내 용	정부 지원금액	자부담율
경험형 요소	• 경험형 콘텐츠 구현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최대 7백만원	30%
스마트화 요소	• 키오스크, 사이니지, 터치스탠드, CCTV 등 스마트 기기	최대 7백만원	30%
<b>총 계</b>		<b>최대 14백만원</b>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금액 한도 변경(경험형요소 7백만원, 스마트요소 7백만원)

**신청·접수**

-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3단계 평가를 통해 스마트마켓 사업화 역량 검증
  - \* 1단계 : 기본 요건평가(소상공인 진위 확인, 적합업종 등)
  - \* 2단계 : 현장평가(운영계획, 공간 등)
  - \* 3단계 : 발표평가(역량, 아이디어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7811, 7810
- 중소기업처기업부 (044)204-7876, 7872



## Q&A

**Q** '경험형요소와 스마트요소'가 결합된 상점의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A** 단순 판매형 옷가게에서 벗어나 방문자 얼굴 기반 AI가 성별/나이 등 분석하여 고객에게 코디 추천, 소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경험을 통해 구매하는 상점 등의

**Q** 스마트기기는 보통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A** '22년 지원받은 가게를 예를 들자면 사이니지, 전자칠판, 스마트 전자자가마, 3D프린터, 피부진단 키오스크, 블루캔버스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스케일업 니즈가 높은 소상공인, 상생계획을 보유한 유망 프랜차이즈 등 프랜차이즈 특성별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스케일업 니즈가 있는 소상공인
-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각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 환경구축, 마케팅 등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유망)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브랜딩,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
  - (상생우수) 상생협력 구조 구축, 마케팅·판로, 피해소송 지원 등 가맹본부 스케일업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2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21년 지원현황 : 26개 프랜차이즈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042-363-7742,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

- 가맹본부·가맹점지원·계약·시스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수	지 원 내 용	비 고
8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li> <li>• 3년 연속 우수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 입성</li> </ul>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시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평가비용 : 160만원)

### 제출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업력 최소 1년 이상인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대기업, 휴·폐업, 세금체납,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042-363-7742, 7743, 774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집적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관계부처 지원사업 안내, 규제개선, 불공정거래 상담 등 소공인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창구 운영



##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함)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6, 791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현황('22년 말)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070-4206-1773
2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02-741-8755
3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02-919-9623
4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02-741-5365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02-467-8251
6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전업종	서울문래광역특화센터	02-3439-0620
7	경기	포천시(가산면)	가구제조	포천가구제조센터	031-539-5093
8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장항인쇄센터	031-913-9403
9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031-454-4881
10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032-234-5910
11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품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	031-750-2870
12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장비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070-4170-5973
13	경기	안양시(관양동)	전자부품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	031-8045-6711
14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031-8067-5041
15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장비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031-354-3641
16	경기	화성시(동탄면)	전자부품	동탄전자부품센터	031-377-4165
17	경기	시흥시(정왕동)	전기장비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70-7784-8802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8	인천	연수군(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032-723-9983
19	인천	동구(송림동)	기타기계·장비	인천송림기타기계장비센터	032-589-4011
20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충남금산인삼센터	041-750-1621
21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중앙인쇄센터	043-299-1081
22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형제조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042-939-4827
23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042-629-7728
24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정동인쇄센터	042-226-5556
25	전남	무안군(청계면)	도자기제조	전남무안도자제조센터	061-450-6357
26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	063-652-1034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063-219-0397
28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서남인쇄센터	062-236-5013
29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053-783-3399
30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성내주얼리센터	053-219-4422
31	대구	북구(노원동)	안경제조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	053-350-7862
32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제조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051-631-7220
33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가방,신발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051-890-2128
34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범천귀금속센터	051-636-7510
35	울산	북구(매곡동)	전업종	울산광역특화센터	052-219-8641
36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제조	김해진례도자센터	070-4903-5545



## Q&A

**Q**

지역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집적지 내 소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각 특화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과정의 수강 대상은 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근로자, 예비소공인 (창업예정자), 소공인 사업장 근로 희망자(취업예정자)입니다.

### 용어 설명

**집적지** : 일정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이 아래 기준 이상 모여있는 곳

-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바우처)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최대 30백만원, 국비 80%)
- (판로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개최 및 입점, 라이브커머스, 해외 수출관련 지원, 유통상담회 등

##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바우처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 및 장치비)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상품개발 지원, SNS, 라이브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등) 지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카탈로그, 포장 상품페이지 디자인,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등 지원
판로연계	공동기획전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및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해외수출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등
	유통상담회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온라인마케팅(바우처) 내 상품개발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추가(확대)

##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바우처지원과 판로연계지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판로연계지원은 '23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사업 공모시 사업신청서 상 판로 연계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Q** 소공인 판로개척 바우처 항목 중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바우처 판로지원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바우처지원** :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바우처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지원

**판로연계지원** : 바우처 지원 외 판로연계를 희망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해외수출지원, MD상담회 등 추가 판로연계지원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위주 작업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접목으로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지원내용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S/W개발비 등 지원  
(49백만원 내·외, 국비 70%)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연구장비재료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임차비, 하드웨어 부품재료비
위탁개발비	KPI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정개발 등 용역비

### < 세부 지원유형 >

지원유형	주요내용
공정개선형	수작업공정을 디지털·스마트화하기 위한 H/W 및 S/W 지원
서비스복합형	고객주문, 생산, 판매 과정(B2C)을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개선 지원
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공방구축
(신규)클러스터형	업체 간 협업, 분업 스마트화하여 공급망 디지털 협업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유형을 고도화하여, 소공인 대상 맞춤형 디지털화 집중지원 추진
  - (신규) 업체간 협업을 위한 '클러스터형' 유형추가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기존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수혜 소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혜자 대상 신청의 제한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Q**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도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대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IoT** : ‘사물인터넷’을 칭하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함

**KPI** : ‘핵심성과지표’를 말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함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구 내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동일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 표 기준이상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 내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내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내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소공인 집적지구에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 지원 (2,500백만원 이내, 국비 50%)

### 〈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공간 등 조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금액 범위 변경 (기존) 2,500백만원 → (변경) 2,50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8, 79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은 지자체만 가능한가요?

A

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합니다

Q

동일 업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제조업 중분류 기준인 업종코드 C10 ~ C34입니다.

### 용어 설명

**집적지구**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 (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내용

- 소공인 작업장 개선비용 지원  
(420만원 내·외, 국비 70%)

〈 주요 지원내용 〉

지원항목		주요내용
필수	안전교육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탄소중립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택1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안전조치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변경사항 없음

##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 790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http://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Q**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제조 매출 신고액이 도소매업 신고액보다 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탄소중립** :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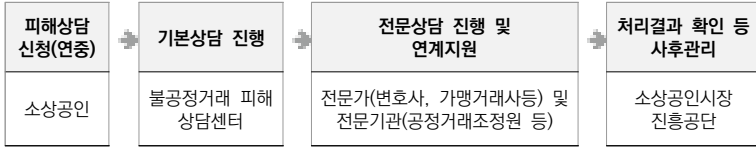
- (상담지원) 전국 77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 신청·접수

- 전국 77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 처리절차



##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042-363-7757, 7758



## 온라인 판로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쏠주기를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테스트베드(인프라 등) → 민간채널 입점 등 진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상품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상품 등록부터 홍보·판매까지 지원
- (채널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을 지원
- (구독경제) 소상공인의 정기판로와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제품 구독서비스 지원 (자사물 구축, 물류·배송 서비스, 상품 큐레이터 등)
-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제작·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소상공인에게 대여해주는 등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

- \* 가치샵사 플랫폼 :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교육 홍보컨텐츠,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플래그십스토어(소담상회) 안내 및 예약 등을 제공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 콘텐츠 제작, 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운영 (총 8개, 서울 3개(역삼, 상암, 당산), 경북 1개, 부산 1개, 전북 1개, 강원 1개, 광주 1개)
- 플래그십 스토어(소담상회) : 콘텐츠 체험과 제품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O2O 매장 운영 (서울 2개)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온라인 진출 지원 대상 확대 ('22.6만개사 내외 → '23.7만개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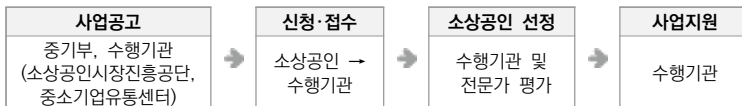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상시 모집 ('23.3월(예정) ~ 예산 소진시까지)
- \* 편편대로(<http://www.fanfandaero.kr>) 및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상품 정보,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4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4)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284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맹 가능)

### 지원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QR 리더기 보급	
홍보·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온라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와 공동 마케팅 등	

-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없이 자동 집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소득공제 40%)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 신청·접수

-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http://www.zeropay.or.kr))

## 제출서류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 1인 기업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맹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http://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3, 787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지원실 : 042-363-7802, 7803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57, 5928, 5946
- 콜센터 : 1670-0582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 Q&A

**Q** 제로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 건가요?

**A**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1. 매장에 설치(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
2. 소비자의 휴대폰에서 간편결제 앱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휴대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Q**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나요?

**A** 제로페이는 오픈플랫폼으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앱(○○페이, 시중 은행앱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KDB산업은행(스마트KDB), IBK기업은행(i-ONE Bank), KB국민은행(리브, KB 제로페이Biz), 수협은행(수협 파트너 뱅크), NH농협은행(올원뱅크, NH앱캐시), 농·축협(NH록뱅크),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제로페이Biz), SC제일은행(뱅크페이), 대구은행(IM샵(#)), 부산은행(썸뱅크), 광주은행(광주은행 개인뱅킹), 제주은행(뱅크페이), 전북은행(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BNK경남은행(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새마을금고(MG상상뱅크), 신용협동조합(신협 ON뱅크), 산림조합중앙회(뱅크페이), 우정사업본부(포스트페이), 하나은행(하나원큐, 아이부자), 신한은행(신한SOL, 제로페이Biz 신한), 케이뱅크(케이뱅크), 비즈플레이(비플제로페이), 쿠콘(체크페이), 한패스(한패스), KSNET(TAXI zeropay), 한국철도공사(레일플러스), 로드시스템(로드페이), 네이버주식회사(네이버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주식회사(페이코), 11번가(SK pay), 티머니(티머니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에서 사용 가능

---

**Q** 제로페이 가맹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A**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맵(Z-MAP)이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내 주변,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제로페이 가맹시 가맹비는 없나요?

**A** 제로페이는 가맹비용이 없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할 경우 QR키트, POS기 업데이트, QR결제 단말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시설·판로)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 \* '23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 (연계지원)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마케팅, 경영관리 등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 (자부담 10%)
  -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용자금리 우대 (공고문 참조)
-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sbiz.or.kr/hdst](http://www.sbiz.or.kr/hdst))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문의처

-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22~26)  
홈페이지([www.sbiz.or.kr/hdst](http://www.sbiz.or.kr/hdst))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7885)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Q&A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점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 중인 자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국비지원 70%, 상점당 최대 500만원 이내)

〈스마트상점 기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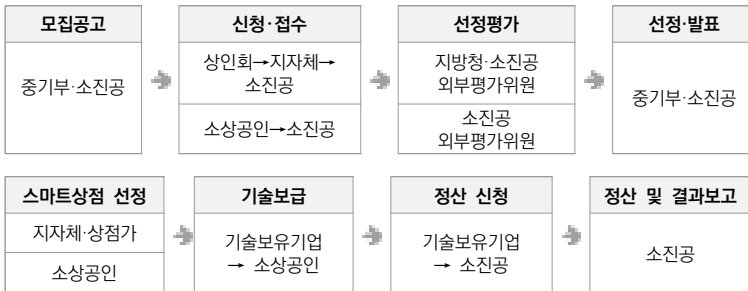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상인회·번영회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 \* 신청 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소상공인이 사업홈페이지에서 신청
  - \* 신청 절차 : 소상공인 → 소진공

## 제출서류

- (상인회·번영회) 스마트상가 총괄신청서, 스마트상가 운영 계획서, 예비 스마트상점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공고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별도신청서류 없음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스마트상점 5,000개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지원실 : 042-363-7804~7809
- 중소기업부([www.mss.go.kr](http://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경영개선 및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지원내용

- ①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후 경영 기본교육, 경영개선 자금\*\*\* (최대2천만원, 지원금 만큼 자부담)지원
  - \* 매출액 감소, 저신용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소재 소상공인
  - \*\*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1 경영위기 문제진단
  - \*\*\*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개선자금 지원
- ②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기능)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최대 250만원), 평당 한도 확대(3.3㎡당 8 → 13만원)

-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 ③ (재취업지원) 취업 교육, 기업수요 연계 취업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 (전직기초교육)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마인드셋, 모의면접 등 취업기초교육
  - \* (전직특화교육) 선발굴한 기업 채용수요에 따라 맞춤형 특화 실무교육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 \* (전직장려수당) 구직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총 100만원
- ④ (재창업지원) 폐업 원인분석을 통한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 \* 재창업의지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업종별 인큐베이팅 과정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①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상향  
[3.3㎡당 8 → 13만원(총 250만원 한도)]
- ② 선제적 폐업 예방을 위해 경영위기 기업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을 제공하여 폐업위기 극복 및 경영방향 재설정으로 경영개선의식 제고
  - \* 전문가 1:1 경영진단 후 경영기본교육, 경영개선사업, 폐업지원으로 연계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01~ 7715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 Q&A

**Q** 사업정리컨설팅은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단, 기폐업자는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신청가능)

**Q** 폐업 사업장(19평)을 철거하고자 하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평당 13만원 지원으로 최대 24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13만원 × 19평 = 247만원

**Q**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시 자부담은 어떻게 매칭되나요?

**A** 국비 기준으로 2천만원이 지원될 경우 자부담도 2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자부담(총사업비의 50%) 중 15%는 현금, 35%는 현물(인건비, 임차료 등) 매칭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 총 사업비(4천만원) 구성 예시 〉

정부지원금(50%)	소상공인 자부담금(50%)	
	현 금(15%)	현 물(35%)
2천만원	6백만원	14백만원

**Q**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으로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자세한 지원요건은 확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참고 바랍니다.

\* 분할지급(구직활동 시 40만원 + 취업완료 시 60만원), 일괄지급(취업완료 시 100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 신청·접수

- (온라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http://go.sbiz.or.kr))에서 신청

## 처리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대상자여부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지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042-363-7710~7712
- 국번없이 1357



## Q&A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언제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A** 지원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http://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미제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열람가능)

---

**Q** 근로자가 있어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이 되나요?

**A**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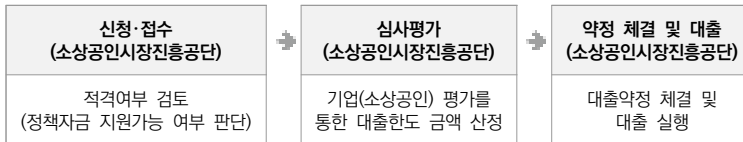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 대출 지원

## 지원규모

- 2023년 기준 7,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장촉진자금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지원방법 :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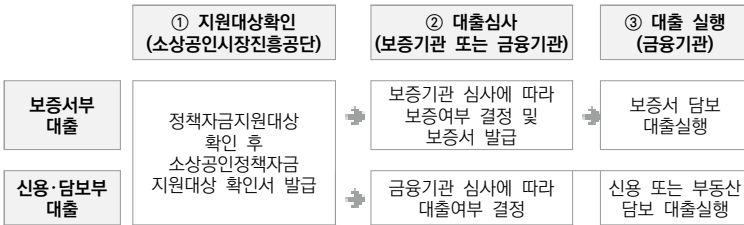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23년 기준 6,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일반자금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0.6%p	5년 (2년 거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1억원	기준금리+ 0.6%p	5년(자율)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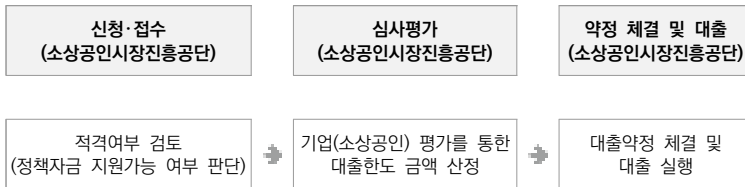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직접대출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대리대출



## 지원규모

- 2023년 기준 5,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http://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 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간접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전통시장 및 금융소외계층(창업초기, 저신용 등) 소상공인	3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7천만원	3.0%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만 39세 이하)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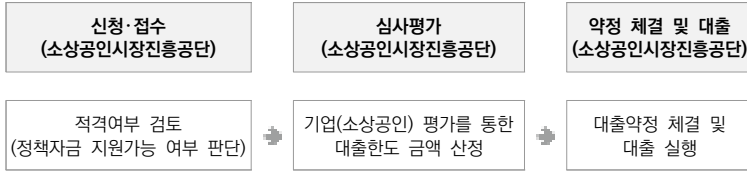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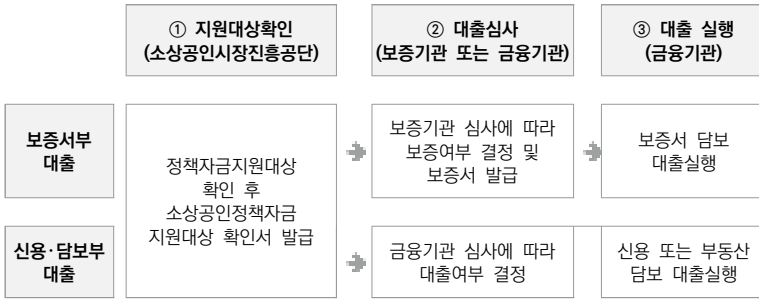
## 처리절차

###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 대리대출



## 지원규모

- 2023년 기준 10,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재외국민, 재외국민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이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5.1.22부터 발급)





## 스마트자금

스마트 설비 및 온라인 경영환경을 도입한 소상공인 또는 혁신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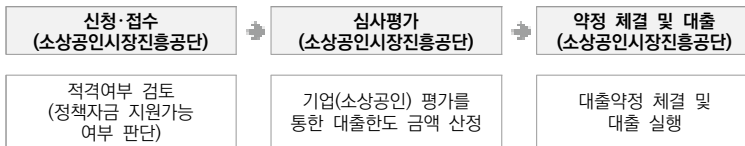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지원규모

- 2023년 기준 2,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Q&A

**Q**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우대지원
    -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 C등급 이하인 전통시장,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완료 한 곳, 선정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곳

### 지원제외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 (1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2순위)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3순위) 기타(LED전등기구, 화재예방시설 등)
- (지원조건)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 (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
- (지원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곳 내외

## 신청·접수

- (공고) '23년 5월 중순 공고예정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작성
- (제출처) 해당 관할 기초지자체
  -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관할 지자체(시·군·구 → 시·도)로 경유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해당 점포의 노후도, 접지여부, 분전반 상태 등)
  -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17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공용공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사업은 개별점포에 한 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별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A** 단체의 성격을 가진 상인회 등에서 신청하여주시면 됩니다.

**Q** 선정되었을 때 지원금의 형태로 받게되는 건가요?

**A** 관할 지자체에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금의 형태가 아닙니다.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35%미만인 곳
- ▶ '23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동일 인력 중복 불가)

- ▶ 상권활성화사업(舊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선정구역 내 개별시장 포함)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선정 등급별 패키지 지원 한도)

패키지 등급	가	나	다
패키지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 상인연합회 패키지 지원 한도는 별도 운영
-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li> <li>▶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라마켓 등</li> <li>▶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li> <li>▶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li> <li>▶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li> </ul>
	온라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li> </ul> </li> <li>▶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li> </ul> </li> <li>▶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li> <li>*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li> <li>*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li> </ul> </li> </ul>
	상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li> <li>▶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li> </ul>
	경영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li> <li>▶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li> </ul>
인력 지원 패키지	시장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li> </ul> </li> </ul>
	배송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li> <li>-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li> </ul>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시장매니저 역량강화 과정을 이수하여야 차년도 시장매니저 지원자격이 주어짐

## 신청·접수

### ●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소형</th><th>중형</th><th>중대형</th><th>대형</th></tr></thead><tbody><tr><td>영업 점포 수</td><td>~99개</td><td>100~499개</td><td>500~999개</td><td>1000개 이상</td></tr><tr><td>국비</td><td>90%</td><td>70%</td><td>50%</td><td>30%</td></tr><tr><td>지방비· 자부담</td><td>10%</td><td>30%</td><td>50%</td><td>70%</td></tr></tbody></table>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 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 자부담	10%	30%	50%	70%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 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 자부담	10%	30%	50%	70%																		
국비	90%	70%	50%	30%																		
지방비· 자부담	10%	30%	50%	70%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9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3, 7896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http://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http://www.semash.or.kr)) 홈페이지 참조



## Q&A

**Q**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통통'을 검색하시고 시장경영패키지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경영현대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전국 19.6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카드형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통합 어플리케이션
- 모바일상품권 : 11개 금융기관 및 11개 간편결제사 앱(APP)
  - 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O10pay, 페이코, 핀트, 제로페이 온, 핀크, 티머니페이, syrup wallet, 유비페이, 택시제로페이

###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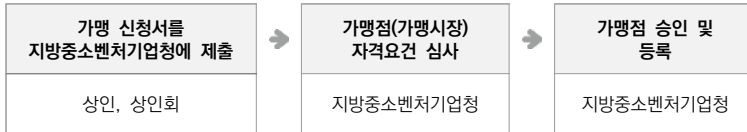
- 가맹점 및 온라인 사용처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 <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가맹점 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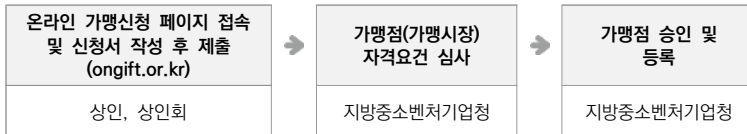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오프라인 >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 지원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수수로 국비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카드형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발행규모

- '23년 4조원 규모 발행계획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1533-1728
-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5, 7650~5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5, 7899



## Q&A

**Q**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A**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여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전용 상품권입니다.

**Q**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 A**
- ①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고객이 기존 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삼성페이, 카드사 앱결제 가능),
  - ② 상품권 할인혜택과 카드사용실적 반영 가능,
  - ③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소득공제 40% 적용

### 용어 설명

**온라인가맹** : 온라인가맹은 [ongift.or.kr](http://ongift.or.kr)으로 기존 오프라인 가맹신청(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맹신청 가능한 방법을 말함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우대

-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 ▶ 최근 3년간('20년~'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

### 지원제외

-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물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21년도 선정('22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3년 지원예정 포함)

## 지원내용

- 문화관광형(2년간, 최대 10억원):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 디지털전통시장(2년간, 최대 4억원)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주체(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최대 6개월)
  - 온라인 사업 추진 전담인력, 배송에 필요한 픽업 및 배송 인력 등 인적 기반과 배송센터, 공동 장비 등 물적 기반 구축 비용 지원
  - 온라인 입점 지원과 동시에 배송 인프라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종합적 지원
- 첫걸음기반조성(1년간, 최대 3억원)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인력지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 (예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으로 운영인력 A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운영인력 A(동일인)에 대해 '디지털전통시장'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 ① 편리한 지불결제
    - ② 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 ③ 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 ① 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 예방훈련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3, 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71~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업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 디지털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 이력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장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2년도 문화관광형사업 2년차 시장입니다. '23년도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합니다. 2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장은 '24년에 '25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장은 '22년에 '23년도 디지털시장 사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공 지원	선정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사업 추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 제외

- ▶ 접수 마감일('22.10.07)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22.10.07) 기준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3년 지원예정 포함)

### 지원내용

-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주체(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최대 6개월)
  - \*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사업모델 수립)등 연계 지원
  - \*\* 시장별 온라인 맞춤형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전문 MD를 지원

-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장보기형(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전국 배송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나, 환경에 따라 복합 지원
  - \* 1년차 사업종료 후 성과(매출액, 고객 만족도 등)를 측정하여 2년차 사업 지원 여부 확정('23.10월)
- 온라인 입점 지원과 동시에 배송 인프라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종합적 지원
  - 온라인 사업 추진 전담인력, 배송에 필요한 픽업 및 배송 인력 등 인적 기반과 배송센터, 공동 장비 등 물적 기반 구축 비용 지원
  - \* 빈점포 임대료, 냉동(장) 창고, 쇼케이스, 오토바이 등

## 신청 · 접수

-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http://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특성화지원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담당 042)363-7667~9



## Q&A

Q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 역량 3대 조건인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Q**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소비패턴 변화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한 반면,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 대응 수준은 미흡하여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 용어 설명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하는 점포가 2,000㎡(약 605평)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한 곳을 말함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사업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공통 우대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1년, '22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4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개별사업 우대사항)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지원제외(청년몰)**

-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지원제외(청년상인)**

- ▶ 미성년자
- ▶ '15~'20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청년몰 활성화(몰 당 4억원 이내) 지원 :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 청년몰과 기존 시장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필수(사업비의 20%이상)
- 청년몰 확장(몰 당 5억원 이내) 지원 : 청년점포 추가조성,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고객 및 지역민 소통·편의시설 설치 등
  -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 신청·접수

-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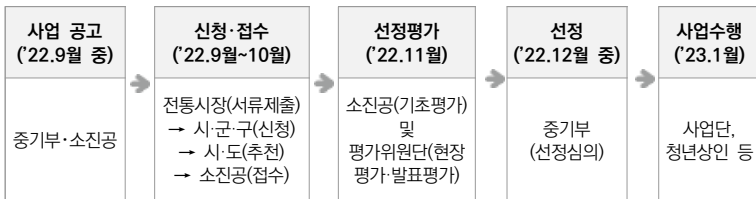
###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 (청년몰 활성화·확장)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 제출서류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Q&A

**Q**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A** 10백만원(자부담 10%)한도 내에서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 지원대상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통시장 구획 외 점포
-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점포
- ▶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원내용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 (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료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 3천만원, 동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화재별급,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 납입방법 : 일시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별급 특약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별급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11, 7612, 7613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http://www.fma.semas.or.kr)



## Q&A

**Q**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송부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Q** 화재공제 가입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입신청서와 건물구조급수를 A급으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용어 설명

**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시 상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보험료)

**공제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후 사고발생시 보상 받는 금액을 말함(보험금)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역·규모·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제외

- ▶ 상설점포 없이 노점만으로 이루어진 시장
- ▶ 영업점포 수가 10개 이하인 시장

###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535곳 내외 시장)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 결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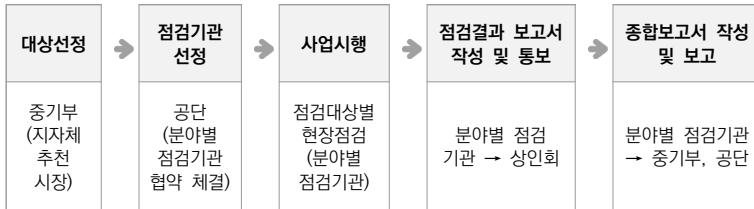
###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li> <li>•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화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상태 등</li> </ul>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li> <li>•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li> </ul>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li> <li>*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li> </ul>	

### 신청·접수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지원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20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Q&A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초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지원제외

- ▶ 영업점포의 30% 미만 점포가 신청한 곳
-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35% 미만인 곳

###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법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 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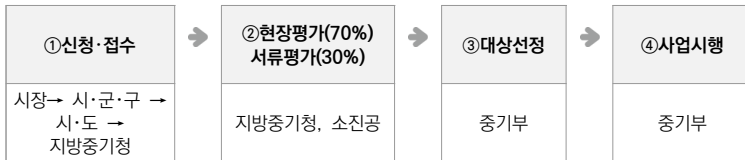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35% 이상인 곳만 지원 가능

##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18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 Q&A

Q

공용공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Q

점포 별 지원인데, 점포 당 지원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A

점포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되는 감지기 등의 개수는 변동됩니다.

Q

선정 후 폐업 혹은 추가 설치를 원하는 점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점포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제4부

# 대한상공회의소





## 코참경영상담센터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전화상담(1600-1572)
  -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 온라인 상담(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 방문상담
  -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 처리절차

- 1단계 상담신청
  - 전화(1600-1572), 온라인(www.korcham.net), 방문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행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

## 지원규모

- 연간 약 12,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Q&A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사

###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 처리절차

-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행사/교육>코참경영상담>온라인 상담신청 탭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용횟수

---

-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



##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발생시 일정 부금을 지급하는 유사 보험서비스로 일반보험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 공제상품및 가입대상

-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모든 완성품/부품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 서비스용역업체(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광고탑 설치, 해체 등)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개인정보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객정보 보유 업체
-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

### 가입지역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 보장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필요비 및 유익비 : 손해의 방지·경감 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 가입절차

- 홈페이지(insure@korcham.net)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참여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02-6050-3875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02-6050-3866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02-6050-3867
-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02-6050-3868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기업소모품을 비롯한 상품쇼핑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 지원내용

-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입점사 : 여기어때/살레코리아(국내숙박), 아고다(해외호텔), 롯데시네마(영화), 만병철유폰/시원스쿨/이펙스코리아(교육), 밀리의서재(도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베네피아(SK임직원몰), 삼성전자/애플/LG(전자제품), 온누리전통시장몰, 행복마트(직판관)
-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한 기업
  - 우대내용 :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우대 등 중기부 사업우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중소기업 소속 임직원이면 개인자격으로 가입 가능

## 신청·접수

### 가입 및 이용절차

#### <기업회원 가입 신청절차>

- ① 기업회원 가입신청(<http://welfare.korcham.net>)
  - \*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② 회원가입 승인 (24시간내)
- ③ 기업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임직원 일괄 정보입력 및 로그인 계정 생성
- ④ 임직원에게 로그인계정 통보
- ⑤ 임직원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

#### <기업소속 임직원 개인자격 가입 신청절차>

- ① 개인회원 가입신청(<http://welfare.korcham.net>)
  - \* 개인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
- ②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후 서비스 이용  
단, 기 가입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기업관리자 승인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포인트 신청절차

- ①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 ② 계약체결 → ③ 포인트사용신청 →
- ④ 포인트 사용승인 → ⑤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공지 →
- ⑥ 포인트 사용 → ⑦ 포인트 월 정산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신청절차

- ①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완료 후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근로자수 확인용)
- ② 인증서 발급 승인
- ③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복지센터 : 02-6050-3881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88-6555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 [welfare.korcham.net](http://welfare.korcham.net)



## Q&A

**Q** 복지플랫폼에 가입시 가입비와 이용료가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한 후 기업 승인이 되며, 기업관리자가 전체 근로자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개인자격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2022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

**Q**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의 복지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용어 설명

- **복지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 **성과공유기업**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제5부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온라인, 모바일(채팅·챗봇), 전화,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수출, 해외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
  - \* 기업의 수출과 관련없는 학술 목적의 문의, 현지 한국기업·한국인에 대한 평판 및 신인도 등의 문의는 답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수출, 투자진출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진행

수출	투자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실무 전반</li> <li>▪ 거래선 발굴 방법</li> <li>▪ 인증 및 규격</li> <li>▪ 대금 결제 및 금융</li> <li>▪ 해외시장정보</li> <li>▪ 관세, 통관절차</li> <li>▪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li> <li>▪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li> <li>▪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li> </ul>



● 지역·기능별 상담

지역	연락처	
미주·유럽	대표전화(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내선 1번
아시아·일본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중동·아프리카·CIS		내선 4번
인증·규격		내선 5번
무역사기		내선 6번

\* 카카오톡 채팅상담 또는 KOTRA 수출투자챗봇으로도 상담 가능

● 법률 상담

\* 현지 변호사 무료 자문서비스이며,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으로 우선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신청방법
중국	대표전화(1600-7119)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 3번 중화권 1차 상담 → 변호사 유선/내방상담 가능(매주 목 13:30~17:30)
러시아	대표전화(1600-7119)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 4번 CIS 1차 상담 → 변호사 유선상담 가능(평일 9:00~18:00)

##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유선 상담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 선택
- 온라인 상담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카카오톡 채팅상담



- QR코드 스캔 → ‘채팅하기’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 KOTRA 수출·투자 챗봇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모바일상담(채팅/챗봇)’ → ‘2. 수출·투자 챗봇 바로 접속하기’
-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KOTRA 수출·투자 챗봇’

-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 문의처

-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 이동 KOTRA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수출 진행 중 겪는 애로 사항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 지원대상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 이용료

- 무료

### 상담내용

- KOTRA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TriBIG(빅데이터 플랫폼) 잠재 바이어 추천
- 코로나19 대응 바이어 방한 대행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해외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목표시장 도출 등 컨설팅 제공

## 진행절차

GCL TEST

사업 신청·접수

방문 컨설팅

마케팅 연계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투자 상담 → 현장 상담 → 이동KOTRA(기업 방문상담)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문의처

- 서울 : 02-3460-7547
- 경기북부 : 070-7931-0442
- 경기 : 031-273-6035
- 인천 : 032-822-9817
- 강원 : 033-261-5312
- 충북 : 070-4185-8448
- 대전충남 : 042-341-8319
- 광주전남 : 062-369-9054
- 전북 : 070-7931-0812
- 대구경북 : 053-659-2280
- 경남 : 055-290-0604
- 부산 : 051-740-4153
- 울산 : 052-289-4654



## Q&A

**Q** 담당 직원 변경으로 인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무역실무 교육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역계약에서 운송, 보험, 통관절차 및 무역서식 작성요령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방문하여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Q** 회사 소재지가 대구인데 서울 위원님께 컨설팅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업 소재지 관할 지원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용어 설명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이란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 역량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는 글로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15종 서비스입니다.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을 표준화된 양식과 프로세스로 해외무역관이 수행하여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참가비 (VAT 별도)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원/1항목
맞춤형 지원 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 (또는 전담인력)를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현지 매장 방문조사	신청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 최대 2개 매장 방문, 최소 인터뷰 3건, 문항 최대 5개	45만원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신청 기업의 타겟군 대상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으로 샘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 (2개월)	30만원 (2~3개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이 보유한 해외 수입업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조사	5만원/개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원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업체 발굴	30만원(3개사)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 최대 17문항 구성, 5개사 회신결과 제공	30만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일반지원 : 바이어 상담 주선(3~4개사) 프리미엄 지원 : 일반지원 + 통역 및 차량 지원	일반 50만원 프리미엄 100만원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원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 무역관까지 배송은 실비 부담	15만원
대리 면담 지원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45만원
바이어 실태조사	신청기업이 기 접촉 중인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 현장 확인	45만원
전시회 대리참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참관, 요청사항 수행,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포함), 바이어 명함 확보 등 * 100\$ 이상 입장료 실비 부담	45만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신청방법

- ①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 → ② 상단 메뉴 중 '사업신청' 클릭 → ③ 사업명 검색어에 '수출24 글로벌 대행' 입력 및 검색 → ④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클릭 → ⑤ 지원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 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KOTRA 기업회원 정회원
- 이용료 : 무료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컨설팅\* 제공
  - \* 유선, 이메일, 내방, 기업방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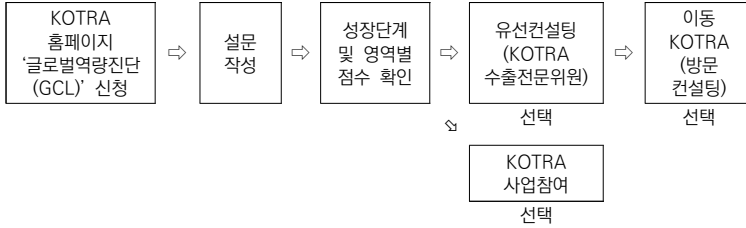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시기: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①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② 상단메뉴 중 '문의·상담' 클릭



- ③ 좌측 하단 ‘글로벌 역량진단 GCL’ 클릭
- ④ 로그인 후 설문 진행

## 진행절차



\* 컨설팅 신청 시, GCL에 결과에 대하여 1~2일 이내에 담당 수출전문위원이 고객님의게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방한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와 취급 품목이 일치하여,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 무료
- 사업비는 KOTRA 및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 지원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온라인/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23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 무역사절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선정

### 지원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목표시장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목표시장 적격 바이어와 1:1 온·오프라인 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처리절차

-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선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상담가능성 조사

참가기업 확정

- (무역사절단 파견)

사절단 파견

상담 주선

바이어1:1상담

## 지원규모

- 무역사절단 127회 파견(잠정)

## 문의처

- 수출기업화팀 / KOTRA 홈페이지



## Q&A

Q

코로나 19 상황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현지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무역사절단은 온라인 사업으로 변경 추진 됩니다. 이 경우, 바이어와의 1:1 상담회는 화상상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e-카탈로그 제작, 현지 특성화 사업(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촉전 연계 등) 및 긴급지사화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Q

무역사절단 참가 신청은 소재지 구분없이 연간사업계획상 명시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역사절단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 파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업기관에 따라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 대상으로 업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관심있는 사업의 주관부서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KOTRA와 유관단체가 연간 80 내외에 걸쳐 국제 유명 전시회 및 신흥 유망 전시회에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부스 임차료, 전시디자인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운송비 : 1부스당 1CBM 한도 해상 편도운송비 100% 지원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여행사·장치사 선정, 전시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샘플 발송비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해외전시회 연계 온라인 한국관 사업을 통해 분기말마다 사전·사후 화상상담 지원

##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창출, 전시적합성, 정책 우대 가점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신규수출기업화 또는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5대 소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유턴기업, 뿌리전문기업 등
-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http://www.gep.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 사항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정책우대 가점 서류

## 처리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협의 → 사전 마케팅 지원(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 지원규모

- 전시회별 상이
  - 전시회별 업체 모집규모는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http://www.gep.or.kr))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 해외전시팀 : 02-3460-7286, 3331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독자)적으로 참가 시, KOTRA가 부스임차비, 장치비, 편도 전시물품 운송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2023년 연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 개별참가란?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민간 협단체를 통해 전시회 신청 및 참가 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의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규모 : 약 1,400 개사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계열사 지원제외.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이내 선발

### 지원내용

- 선정기업 당 연간 최대 1회, 500만원 한도 내 사후 실비지원
  - 부스임차비, 장치/집기비, 편도 전시물품 운송비(1CBM / 9sqm, 수출통관 기준),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진출지역 유망성, 기업경쟁력, 전시참가 기대 성과, 수혜실적, 정책호응도, 정부정책 우대 기타 가산점 평가
- 신청방법 :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http://www.gep.or.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 사본
- 정책우대 가점 서류

## 진행절차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http://www.gep.or.kr))의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심사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금 신청 → 증빙서류 검토 → 지원금 교부

##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02-3460-7256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02-420-2042



## 한국우수상품전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 행사, 사회 공헌 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 지원내용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화상상담회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 (해상단체편도운송, 1CBM 한도)\*

\* 현지 통관법 의거 정식 통관 불가시 지원 불가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 (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 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 참가비

- 1부스 당 50만원 내외 (잠정)

## 시기/장소

- 연중 추진 / 오프라인

## 신청·접수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http://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인터넷 신청시 입력), 참가각서(인터넷 신청시 동의)
- 전시품목 상세서 (제품 설명 인터넷 기재, 제품 브로슈어 파일 첨부)
-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신청시 파일로 첨부)

## 문의처

- 전략전시팀 / 02-3460-7263, 7272



## Q&A

**Q**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 바이어 상담주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최일 전까지 2~3차에 걸쳐 참가기업에 바이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40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식품관련기업(식품, 식품기기, 포장기기, 호텔레스토랑기기, 안전기기 전반)

### 시기/장소

- 2023. 5. 30.(화)~6.2.(금) / KINTEX 1전시장(1~5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후 참가비 납부
- 참가비

구분	참가비(Vat 포함)	제공내용
독립식 부스	2,86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부스자체시공)
조립식 부스	3,330,000원	면적+기본장치+상호간판+조명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할인을 위한 각종 서류

## 처리절차

- 전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인보이스 발송 → 참가비 납부 → 부스배정 → 전시회 참가

\* 홈페이지 : seoulfood.kotra.biz

## 문의처

- (식품분야) KOTRA 전략전시팀 : 02-3460-7267  
(식품기기분야) KINTEX 소비재전시팀 031-995-8212



## Q&A

Q

할인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할인은 중복(조기/규모/특별/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적용되며, 독립식/조립식 부스에 관계없이 독립식부스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디지털 마케팅(buyKOREA)

buyKOREA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입니다. buyKOREA는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정보 검색 등록 및 검색,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 배송(EMS,DHL) 등 거래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등록	· 수출상품 등록 가능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오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발송/수신	·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 가능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 buyKOREA에서 온라인 수출대금 결제 가능 (PG사*와 별도 계약 필요) - 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Paypal * Payment Gateway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별도계약필요)
비즈니스행사	·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온라인전시관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 신청·접수

- KOTRA 기업회원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로그인

### 문의처

- KOTRA 바이코리아팀 : 02-3460-3311



##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프라인 K-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웨비나, 라이브 커머스, 제품 홍보영상 등 비대면·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디지털 무역 시대에서의 국내기업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업
- ▶ 휴/폐업 및 '관심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K-스튜디오' 보유 지원단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 스튜디오 보유 지원단('21.12월 기준) : 광주, 부산, 대전충남, 강원, 충북
  - △인플루언서 활용 라이브커머스 △해외진출을 위한 웨비나 △기업의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역 마케터 인재 육성을 위한 마케터즈 사업 등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
  - \* 보유 지원단/무역관별 지원 사업 상이



## 신청·접수

-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kotra.or.kr/biz) → 사업안내에서 모집 중인 국내외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사업 확인 후 신청  
\* 지원단/무역관별 지원 내용 및 범위 상이

## 문의처

- 국내기업 소재지 혹은 진출희망 지역에 위치한 지원단/무역관 연락처 확인



## Q&A

Q

본사/지원단 K-스튜디오를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본사 K-스튜디오는 대외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지원단의 경우, 아래 지역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개별 예약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KOTRA 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3

(부산) KOTRA 부산지원단 051-740-4152

(대전세종충남)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341-8317

(강원) KOTRA 강원지원단 070-8822-5311

(충북) KOTRA 충북지원단 070-4185-6949



## 수출바우처사업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이용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온라인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바우처 금액은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액으로 표시
  - 기업분담율은 30~70%로, 기업규모별로 상이

-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로 [exportvoucher.com](http://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13개 분야, 8,000여개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서비스 분류	서비스 메뉴 (예시)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및 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번역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디자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IP 전략 컨설팅
국제운송 ('21년 신설)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존 소부장/ 그린 / 소비자/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합하여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

##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23년 1차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음(변경 가능)
    -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22.12.30.~'23.1.20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23.1.4.~.1.20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 내 공고내용 참조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 서류 세부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내용 참조

## 지원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개 사업 ○○○개사
  - 산업부 소관 2개 사업 : 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소부장/그린/소비재/서비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은 17번에서 별도 상술
    - \* '22년 지원현황 : (본사업) 1,072개사, (예비사업) 892개사 지원

## 문의처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6004-840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Q&A

**Q** 수출바우처로 서비스를 구매한 후, 비용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수출바우처 발급과 정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④,⑤)를 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수출 계약 이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글로벌 역량진단(GCL Test) 선정기준 40점 미만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국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 선정기업 대상으로 수출성약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온라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샘플 발송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 수출에 필요한 사업을 연간 지원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기본요건, 우대서류 제출여부, GCL Test 40점 이상 등 서류평가 후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제외 (단, 현장평가는 실시)
-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기업,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 우대
-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1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 초보기업의 경우, '21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후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온라인 신청)
- 수출희망 제품/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
- 영문 회사소개서, 카달로그 등(선택)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맞춤형 지원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02-3460-7543, 3236, 3237



## Q&A

**Q** 자세한 선정 기준이 뭔가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청서 검토, 글로벌역량진단 40점 이상, 우대 조건(소상공인, 고용우수기업 등)을 1차 검토합니다. 이 후 수출 전문위원의 기업 실태조사를 유선·방문 등을 통해 현장평가를 2차로 실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Q** 수출전문위원은 어떤 분이신가요?

**A** 무역회사, 무역유관기관, 제조업체 해외영업부 근무 경험이 있으며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퇴직 무역전문가입니다.



## 지사화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제·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원	KOTRA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지역별 차등)	중진공 OKTA

\* 기업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http://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중진공 및 OKTA) 모집 시행 차수별 별로 신청기간 운영

## 제출서류

- 상품소개 자료(브로셔, 제품사진 등), 납세증명서, 인증서(보유 시) 등

## 처리절차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37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055-751-9680, 9679, 9676
- (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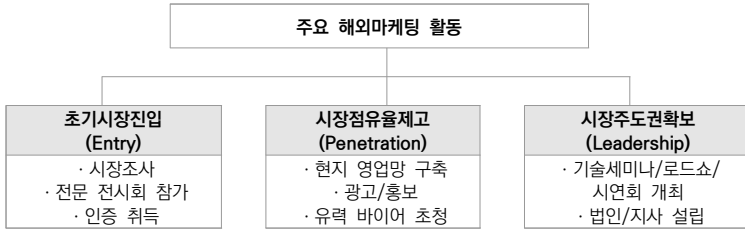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은 지원 불가
-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8회 이상 참가기업

### 지원내용

-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 후 진출전략, 액션플랜(로드맵) 수립 및 시행
  -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단독 로드쇼·기술세미나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홍보,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 설립, 국제 운송비 지원 등
 (수출바우처사업 內 메뉴판 선택을 통해 시행)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Jumping중견글로벌별 신설

## 지원규모

- 매년 000 개사

구분	내수중견	Jumping 중견	중견 글로벌	Post 중견
지원대상	①중견기업 ②중견후보기업 ③예비중견기업	①중견후보기업 ②예비중견기업	①월드클래스 선정기업 ②중견기업 (중견유예포함)	중견 글로벌 출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회	최대 5회	최대 5회	최대 3회
매칭펀드 총액	최대 10,000만원	최대 10,000만원	(중소) 최대 13,000만원 (중견) 최대 20,000만원	최대 20,000만원
국고지원한도 (보조율)	국고보조 7,000만원 (70%)	국고보조 7,000만원 (70%)	(중소) 최대 9,100 만원 (중견) 최대 10,000만원	최대 6,000만원

## 신청·접수

-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증명원, 수출 실적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견·중소기업확인서 등

● 처리절차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81/7238)



Q&A

- Q** 한 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몇 년을 지원받으며, 최대 몇 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해당 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한 번 선정될 경우 1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에 계속 참가를 위해서는 매년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하며, 최대 8회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내수중견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기업

**후보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업

**유예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중견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수출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수출 상품 다양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점유율 5% 이상 및 5위 이내 상품과 생산기업(7년 이내 진입 가능 상품 및 생산기업 포함)을 선정하여,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과 해외마케팅 사업 등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및 기업

구분		선정기준
현재 세계 일류	상품	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단, 서비스업 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생산 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

구분	선정기준
생산 기업	<p>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li> <li>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li> <li>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li> <li>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li> <li>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li> <li>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li> </ol> <p>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선정할 수 있다.</p>

## 지원내용

- KOTRA, 간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간접 지원 제공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세계일류상품 로고 사용 지원
	KOTRA가 지원하는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수출상담회,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
	(참여기관) 조달청,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공인검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 '21년 기준, 변동사항 및 세부내용은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고([www.wcp.or.kr](http://www.wcp.or.kr))

## 신청·접수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http://www.motie.go.kr)) 및 세계일류상품([www.wcp.or.kr](http://www.wcp.or.kr))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 후 해당 간사기관에 문의하여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매출액·수출액, 지적재산권, 인증 및 수상 등

## 문의처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7)
- 운영기관 : KOTRA 강소중견기업팀(02-3460-7233, 7231)
- 온라인 문의 : wcp@kotra.or.kr
  - \*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참고([www.wcp.or.kr](http://www.wcp.or.kr))



## Q&A

**Q**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개 5~6월경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업종별 간사기관의 추천 위원회(8월경)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10월경)에서 최종 선정 되며, 이후 선정기업 대상 인증서 수여식(11월경)이 개최 됩니다.

**Q** 간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경우, wcp@kotra.or.kr로 신청하시면 KOTRA에서 진행되는 추천심의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 용어 설명

**간사기관** : 신청기업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및 성장성 등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추천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별/품목별 협회 및 조합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 사업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수요를 연결하여 기술실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등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한국 스타트업
  - 스타트업: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 예비창업자,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 상장 기업, 국내에 법인이 없는 스타트업 등

### 지원내용

- 추진 과정

수요 발굴

스타트업 모집

글로벌기업 심사

1:1상담 지원

- 스타트업거점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해 수요에 맞는 적격 스타트업을 모집. 글로벌 기업 심사를 통해 스타트업이 선정되면 선정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간 1:1 상담 또는 피칭데이 등 지원



- GPOI 전용관 (오픈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
  - 오픈 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 수요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buyKOREA 사이트 내 GPOI 전용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및 온라인 접수 신청 가능
- ▶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코퍼러티브), 병원 등 수요발굴처 다변화

#### 신청·접수

- [www.kotra.or.kr/biz](http://www.kotra.or.kr/biz) 또는 [www.buykorea.or.kr](http://www.buykorea.or.kr) 에서 온라인 접수 영문 피칭덱 및 참가 신청서(영문) 제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 수요 적합도, 제품의 혁신성, 해외진출 준비 역량 등

####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94)

#### 용어 설명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개방형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 CES 혁신상 수상 지원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의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 혁신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가진 기업
  - 혁신상 수상 연도에 신규 출시하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수상 노하우 공유 웨비나
  - 전년도 수상경험이 있는 기업 초청
- CES 혁신상 영문 신청서 작성 멘토링
  - 스토리빌딩 방법, 영어 문법 및 어휘 첨삭
- CES 혁신상 신청비
  - 예산한도 내 실비지원

## 신청·접수

-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3주~4주
  - 이메일 선정 발표(신청 마감일 후 2주~3주 이내)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성 및 디자인의 심미성
- 제품 관련 시각적 자료 보유 여부(이미지, 영문 홍보영상 등)
- 당해연도 신규 출시 제품 여부
- \* 미국 CTA 혁신상 수상 기준 참고

##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6)



## Q&A

**Q** 혁신상 신청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사후 실비 정산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영문 혁신상 신청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받은 후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Q** 지원 내용 중에 CES 전시회 참가도 포함되나요?

**A** 스타트업지원팀에서는 CES 혁신상 수상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회 한국관 참가 관련 문의는 'KOTRA 해외전시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글로벌점프300

1년간 바이어, 투자자, 글로벌기업 등 해외파트너 발굴,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시장 조사, 전문위원 컨설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 법인 설립 지원 등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해외 시장에서 확산성이 있는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보유한 시리즈A 이상 국내 스타트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장 기업
- ▶ 투자 유치를 받은 기록이 없거나 재무건정성이 부족한 기업
- ▶ MVP가 없거나 MVP의 혁신성이 부족한 기업
- ▶ 해외 진출 준비가 부진한 기업 등

### 지원내용

- 해외 시장 조사
  - 목표 시장 전망, 현지 경쟁사 동향, 현지 VC의 투자 동향 등
- 투자자, 바이어, 글로벌기업 등 해외 유망 파트너 연결
- 해외 기업 대상 기술 실증 지원

- 수출전문위원의 종합 수출 컨설팅
-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전문인력 채용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OTRA 사업 홈페이지에서 ① 해외진출 역량평가 설문 제출 후, ②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21.10.22~'21.11.29(연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1년에 선발)
- 제출 서류
  - 해외진출 역량평가 설문, 사업 신청서, 영문IR피치덱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솔루션, 제품/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재무, 시장, 경쟁사, 팀빌딩, 견인력, 마일스톤, 글로벌 시장 확장성의 10개 항목으로 심사

##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8)



## Q&A

**Q** 2023년 글로벌점프300은 언제 모집하나요?

**A** 현재 내부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나, 2022년 10월~11월경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 용어 설명

**스타트업**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J커브의 성장을 이루는 비상장 기업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파, 발주처 네트워크 지원, 입찰참여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지원이 필요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 목적이며 벤더 대상 일반 기자재 납품은 대상이 아니므로 후자는 수출 관련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애로상담) 신청 시 내용 검토 후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정보)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발굴된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정보 온라인 조회
  - 접속 : <https://dream.kotra.or.kr> → 해외수출 → 시장개척 → 유망·입찰·조달 → 유망프로젝트
  - 프로젝트뉴스레터 발송 : 신규 등재 해외 프로젝트 정보 메일 알리기

- (해외 발주처 상담)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 발주처 유치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 신청·접수

- (애로상담신청)
  - KOTRA 홈페이지(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consultants@kotra.or.kr 로 이메일 신청
- (해외 프로젝트 정보) 상기 홈페이지 통해 자체 조회
  - consultants@kotra.or.kr 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가능
- (해외 발주처 상담) 각 사업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사업공지 : kotra.or.kr → 사업신청
  - consultants@kotra.or.kr 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 홈페이지 접속 시 기본정보입력

## 처리절차

- (애로상담) 이메일 접수 → 애로상담센터 검토 → 1차 상담(국내)→ 필요시 : 2차 상담(해외무역관) → 지원 조치(조사·상담) → 피드백 및 완료
- (해외 프로젝트 정보) 별도 절차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및 기업 정보 등록 → 해외 발주처 및 프로젝트 정보 확인(온라인 사전 게재) → 상담주선 기간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 상담회 기간 온라인 화상 상담 또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 → 상담 결과 제출 → 사후 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문의처

- 그린산업팀 : 02-3460-7484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ICT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로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진출국 현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수출희망 기업
  - 디지털뉴딜 분야(D.N.A., 초연결신산업, 스마트SOC\*, 디지털정부 등)
  -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스쿨, 스마트의료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일반 소비자, 전자부품 및 소재, 자동차 등 기타 분야의 관련 기업

### 지원내용

- 해외 ICT 시장진출 애로해결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사전 준비
  - 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 기업 및 제품 현지화
  - 현지 거점 설립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 협상 및 계약
-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

## 신청·접수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전화/이메일 상담
  - 공정훈 전문위원 (02-3460-7754 / danikong@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접속

무역투자상담

상담방식

온라인상담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내방 상담
  - KOTRA 본사 5층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내 상담센터 방문
- 기업 출장상담
  -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방문 필요 시, 출장상담 가능
- 제출서류
  - 서류 불필요하나 원활한 상담을 위해 회사 및 제품 / 솔루션 소개 자료 권장
- 처리절차
  - 전화 / 이메일 / 내방 / 출장 상담

접수

사후지원

상담일정지정

상담

- 온라인 상담

상담접수

전문가 지정

문의사항 검토

답변 완료

## 문의처

- KOTRA 디지털그린실 ICT융복합팀 ☎ 02-3460-7754



## Q&A

Q

해외 수출이나 진출 경험이 없는 초보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제품 및 솔루션의 현지화 준비, 타겟국가 선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부터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K-Globa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ICT 시장에 중소·벤처기업 해외수출을 확대하며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ICT 분야 모든 기업
  - H/W, S/W, 모바일, 정보보호, 디바이스, IT 서비스 등

### 지원내용

- ICT 분야 융복합사업 지원
  - 무역(전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스타트업IR), 네트워킹 등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참가비 무료 (항공료, 체재비 등 개인경비는 참가기업 자체 부담)

### 신청·접수

- 매 개최 시기 약 3~4개월 이전 KOTRA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 공고문 게재
  - 세부일정 문의 요망

- KOTRA 홈페이지 신청 방법 (www.kotra.or.kr/biz)

사업영역 소개

산업별특화지원

ICT

K-Global@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기업/제품 소개 카탈로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현지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사업참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규모 : 30~40개사 선정

## 문의처

- KOTRA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 ☎ 02-3460-7472



## 해외IT지원센터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등 주요 ICT 거점 지역에 우리 기업이 입주하여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수출역량을 보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 ICT 기업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군
- ▶ 휴, 폐업 상태의 기업
- ▶ IT지원센터 기 입주, 졸업 기업의 지분 60%이상을 소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운영지역
  -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 현지 사무공간(입주 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바이어 발굴,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 정보 제공 등

## 신청·접수

-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상시 접수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홈페이지접속

IT지원센터 검색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업소개서,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서류심사

1차심사  
(온라인)

2차심사  
(현지 전문가)

선정 및 계약

- 지원규모

- (독립형) 실리콘밸리 55개실, 베이징 15개실, 도쿄 15개실

- (공유오피스) 실리콘밸리 6개사, 도쿄 10개사 이용 가능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1차 서류 및 온라인 비대면 심사, 2차 현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적합성 평가

## 문의처

- KOTRA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 ☎ 02-3460-7472, 7470





## Q&A

**Q** 입주가능한 사무실 면적은?

**A** 각 센터별, 사무실별로 상이하니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최대 입주기간은 몇 년이고, 재입주는 가능한지?

**A** 최대 6년까지 입주 가능하고, 재입주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입주했던 센터 외에 다른 센터로 재입주는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공정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군**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22년 기준 총 47개사)



## GMV (Global Mobile Vision)

GMV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ICT 분야 B2B 전시 상담회입니다.

국내 유망 ICT 기업과 해외바이어간 직접 상담을 통해 신규 거래선 발굴, 계약추진, 사업제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유·무선통신, AI, IoT, AR/VR, 로봇, 정보보안 등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전자정부, 핀테크,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등 다양한 ICT 융복합 솔루션 분야 기업

### 지원내용

- 전시상담 : 해외바이어·투자사·발주처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 해외바이어·투자사 200개사, 국내 기업 200개사 규모
- 컨퍼런스 : 글로벌 시장 트렌드 공유 및 미래전략 제시
- 스타트업 : 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대상 피칭 IR 진행

### 신청·접수

- 2023년 6월 / 서울  
- 시기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GMV 홈페이지(www.gmv.or.kr) 온라인 신청
- 참가 안내

부스안내	기본 부스	고급 부스	스타트업 부스	독립 부스
제공내역	해외 바이어/투자사와의 1:1 비즈니스 상담 - 상담주선시스템 활용 상담신청 및 상담스케줄 제공			

## 문의처

- KOTRA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 ☎ 02-3460-7921



## ICT컨소시엄 수출지원

IT컨소시엄 수출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국내 IT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ICT프로젝트 공동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깃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현지 전문가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수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ICT 분야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또는 참여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협회, 단체, 기관,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매년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기업 자체 발굴 프로젝트 및 타깃형 수주활동 추진 가능

### 지원내용

- (전담인력) 현지 전문가 채용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추진
- (맞춤형 정보제공)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시장정보 제공
- (발주처 네트워킹)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발주처 및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 지원
- (현지 세미나 개최) 발주처 및 바이어 대상 기업 홍보 세미나,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통한 사업신청 (www.kotra.or.kr)

홈페이지 접속

컨소시엄 검색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참여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선정절차

<22.12월>  
컨소시엄 모집

<23.1월>  
평가 및 매칭

<23.2월>  
대면평가

<3월>  
사업착수

- 지원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문의처

- KOTRA 서비스ICT실 ICT용복합팀 ☎ 02-3460-7470



### Q&A

Q

대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은 가능한가요?

A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한번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후 다른 연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 용어 설명

**공동참여확약서**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확약서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국내 유망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현지 진출 정보 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주 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용되는 ICT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주요품목 : 방법/방재, 의료/보건, 교통, 에너지,물관리, 쓰레기 처리, 전자정부,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 지원내용

-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운영
  - 현지 수주정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국별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 \* 협력센터 운영 무역관 : 방콕, 이스탄불, 자카르타, 하노이, 리야드 (5곳)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 스마트시티 발주처·바이어와 국내기업간 네트워킹 지원(1:1 화상 상담 등)
  - 지역별 로드쇼 및 발주처 대상 기술·솔루션 IR 참여 지원

- 현지 진출 및 수주활동 정보 제공(설명회 및 세미나, 자료 발간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협력센터 추가 (리야드)
- ▶ 정보제공 채널 확대 (설명회 및 세미나)

## 신청·접수

- 연간 상시 운영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참조)
  - 세부 사업별 행사 개최시기는 KOTRA 사업안내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 KOTRA 서비스ICT실 ICT응복합팀 ☎ 02-3460-7478





##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현지 시장 조사,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상담회, 해외 수출사절단 파견, 데모온실 구축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상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
  - 스마트온실, 노지재배, 축산, 양식, 가공, 물류·유통, 판매 등 농림축산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ICT 기술 및 솔루션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및 발주처 대상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
- (해외전시회) 국내외 농업, 축산업, 스마트팜 국제전시회 한국관 운영
- (해외사절단) 목표시장별 핀포인트 수출사절단 파견
- (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영문 동영상, 영문 카탈로그 등 디지털 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 신청·접수

---

-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현지 전문가 심사

결과발표

사업참가

## 문의처

---

- KOTRA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 ☎ 02-3460-7921



## 서비스 BM 사업

IOT, ICT, 5G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가속화되면서 융복합 서비스 업종이 각광 받고 있어, 해외진출이 유망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함

### 지원대상

- 융복합서비스 해외진출을 수행 중인 국내기업
- 서비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 업종: 비대면 서비스, 공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등

### 지원내용

- 컨설팅(자금연계,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마케팅, 판로개척, 자문 컨설팅, M&A 등)
  - 컨설팅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BM 취약분야를 진단하여 자문 및 해결방안 제시
- 서비스 거점 지원(해외 거점 전담직원을 통한 현지 시장조사, 투자가 매칭 등 현지 애로사항 해결)
  - KOTRA 해외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활용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현지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해외마케팅 및 현지화 기반구축 지원(해외 바이어 발굴, 인허가 지원, 상권분석, 법인설립, 홍보 지원을 위한 실비 지원 등)

## 사업신청절차

---

- KOTRA 기업회원가입(최초 1회) ▶ 사업공고/신청접수 ▶ (해외) 시장성 평가 ▶ 사업참가 ▶ F/U

## 문의처

---

- KOTRA 서비스산업팀 : 02-3460-7613, service\_bm@kotra.or.kr



## 에듀테크 해외 진출 지원

교육 플랫폼·솔루션·콘텐츠·디바이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유망전시회, 사절단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수출 성약을 제고하고 해외기업과 네트워킹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우수 교육 플랫폼 · 솔루션 · 콘텐츠 · 디바이스 기업

### 지원내용

-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전시회 및 로드쇼 개최
- 온오프라인연계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진출 희망지역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 주선)

### 사업신청절차

- KOTRA 기업회원가입(최초 1회) ▶ 사업공고/신청접수 ▶ 사업참가

### 문의처

- KOTRA 서비스산업팀 : 02-3460-7615, km1005@kotra.or.kr



##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지원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조사 및 진출전략 자료집 발간, 글로벌 프랜차이즈 세미나 개최, 해외전시회, 초청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해외시장 선점 및 글로벌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 분야 국내 기업
  - 해외진출 유망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
  - 프랜차이즈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

### 지원내용

- 온라인 사절단 파견(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 주선 및 기업설명회)
- 온오프라인연계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진출 희망지역 바이어 화상상담 주선)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자문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접수

---

- KOTRA기업회원가입(최초1회)▶사업공고/신청접수▶사업참가▶ F/U

## 문의처

---

-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7613, franchise@kotra.or.kr



##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우수 콘텐츠 제작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수출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콘텐츠 분야 국내 기업
  - 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웹툰, VR·AR 등 콘텐츠 분야 제작사 및 개발사

### 지원내용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제작투자 해외 파트너 발굴 및 지역별 온라인 사절단
- 해외 시장 현지 정보 제공 세미나 참여 기회 등 제공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접수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 및 BuyKorea ‘모집중인 사업’ 참고

### 문의처

- KOTRA 서비스산업팀 : 02-3460-7616/7736, k-content@kotra.or.kr





##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사업

KOTRA에서 「서비스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한 해외무역관의 서비스 전담직원이 최대 10개사의 서비스 기업을 담당하며, 기업에게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밀착 지원함. 참여기업은 KOTRA 서비스 전담직원을 활용하여 관심바이어 발굴, 현장지원, 시장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또는 추진 중인 서비스 기업\*
  - \* 콘텐츠(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자출판, 캐릭터), 에듀테크(이러닝, 학원, 교재), 프랜차이즈(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IT기술서비스 등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1년)
- 거점 무역관 : LA, 도쿄,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 런던 등 총 27개소
- ① 바이어 발굴
  - 전담직원이 관심도 선별 후 직접 접촉한 관심 바이어 소개
- ② 현장지원
  - 현지 출장 참여기업 밀착 지원 및 전시회 대리 참가
- ③ 시장조사

- 기업별 개별 요청사항 처리 및 서비스 분야별 현지 이슈 정리

\* 현지 언론 스크랩 및 무역관 의견 포함

#### ④ 고객관리

- 전담직원과 참여기업 간 직접 소통

\* 지원 방향의 적정성, 참여기업의 니즈 파악 등

\* 무역관의 지원활동 내역을 참여기업에게 매월 월간보고

\*\* 기업별 개별 요청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정보 조사, 주요 경쟁사 조사, 현지 법률정보, 지원기업의 현지 출장시 상담주선 및 동행, 단순번역 등의 지원이 가능

## 처리절차

● KOTRA 기업회원가입(최초 1회) ▶ 사업공고/신청접수(2월 예정) ▶ (해외)시장성 평가(3월) ▶ 사업참가(4월) ▶ F/U

\* 2023년 수출바우처로 참여 가능([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

## 문의처

● KOTRA 서비스산업팀 : 02-3460-3251, [sjheo@kotra.or.kr](mailto:sjheo@kotra.or.kr)



## 서비스 수출대전(Korea Service Market)

대한민국 서비스온라인수출대전(K-Service Digital)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전문 수출상담회입니다.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콘텐츠, 교육(에듀테크), 서비스BM,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산업 전분야

### 지원내용

- 온라인 수출상담회: 유력 해외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주선
- 컨퍼런스, 설명회: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관련 행사 참가 기회 제공
- 서비스 쇼케이스관: 유망 서비스 기업 전시 홍보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2023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연계 개최 예정
- ▶ 시기별 상황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여부는 사업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접수

---

-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 및 BuyKorea ‘모집중인 사업’ 참고

## 문의처

---

- KOTRA 서비스산업팀 : 02-3460-3318, serviceteam@kotra.or.kr



##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 한류박람회 등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류 기반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 지원내용

-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 전세계적인 한류열풍을 활용,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글로벌 미디어커머스 : 한류콘텐츠 연계 소비재 간접노출(PPL) 연계 및 해외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 신청·접수

- 사업 확정시 코트라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참가신청 접수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추후 게재(사업 공고시 참고)

### 문의처

- 소비재팀 : 02-3460-7739, 3347 7747



## 방산물자 교역지원

국내 방산 및 유관 민수품목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산·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방산 & 유관분야 소부장 및 솔루션 등을 생산·제공하는 국내 기업

#### ※ 참고사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소개

- ▶ 기존의 정부부처·기관별 분산된 방산물자 수출지원시스템에서는 다변화된 해외 방산시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와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를 보유한 KOTRA가 참여하여 2009년 10월 15일 방산수출지원 범정부기구로서 출범

### 지원내용

- 방산 수출 마케팅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유력 잠재 파트너(바이어, 현지 군납 제조사) 선제 식별·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연중 상시)
    - \* 글로벌기업 방산 GP Day, 방산 소부장 GP 클러스터 운영 등
  - 방산수출 유망국 군 인사 및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 \* KODAS (한국방산보안수출주간 ; DX코리아, ADEX와 연계하여 개최)
  -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방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맞춤형 수출 금융 및 산업협력 지원

- 국내기업 회사·제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
-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방산 소식 및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 KODITS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kodits/main>)를 통해 확인 가능
- 정부간(G2G)계약
  -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 의사 확인, G2G 계약 체결 및 이행 모니터링 수행
  - 계약 체결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 \* 관련법 : 대외무역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 신청·접수

- KODIT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 참가신청 안내문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KODITS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사업 참가신청 안내문에 따름

## 처리절차

- (방산 수출 마케팅 지원)
  - 참가기업 모집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 유력 잠재 파트너 식별 및 발굴 → 국내기업-해외 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 주선 → 최종 상담스케줄 안내 → 사후관리 및 지원

- (G2G 정부간 계약)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2G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2G계약 체결(KOTRA - 구매국 정부) → 계약 이행(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터링(KOTRA)

## 문의처

- 기획총괄실 : 02-3460-7813
- 정부간거래관리실 : 02-3460-7804
- 방산교역실 : 02-3460-7807
- KODITS 홈페이지 : <https://www.kotra.or.kr/kodits/main>



## Q&A

Q

'G2G계약'은 무엇인가요?

A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KOTRA가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외국 정부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자국에 맞는 맞춤형 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최근 중남미 · 동남아 · 북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거래방식입니다.





##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 제고를 위한 해외 마케팅 맞춤 패키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 사업에 5년이상 참가한 국내기업은 지원 불가능
- ▶ 사업 참가 신청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미선정 처리된 기업은 사업 진행 불가능

### 지원내용

- 참가 기업별 타깃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기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예시) 제품홍보 세미나, 시연회, 온라인 로드쇼 및 런칭쇼 개최 및 참가비 지원, 광고 제작 등
-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실비지원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단, 3백만원 참가비 납부 필수)

##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2.12.12.~2023.1.12.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검색창에 '2023년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가 안내' 검색 →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로드맵 작성 → 제출서류 총 6개 구비 후 이메일 접수(p300@kotra.or.kr)

## 제출서류

- 1)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2) 해외마케팅 로드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업 소개자료 및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 국문 카탈로그 5) 기업 소개자료 및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6)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처리절차

-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서 체결 → 전담 해외무역관 관리하에 사업 수행 → 결과보고

## 문의처

- 기후변화대응팀 : 02-3460-7494



## 해상풍력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상풍력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기업
- 참가비 : 무료

### 지원내용

- 해상풍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 해상풍력 유망 시장 및 글로벌 기업별 수요발굴 상담회 개최

### 신청·접수

-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사업 공고 → 국내 기업 신청 → 참가 기업 선정 → 상담회 실시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

### **제출서류**

- 사업별 상이하며 사업 추진시 공고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참가기업 선정 → 상담 매칭

### **문의처**

- 그린산업팀 : 02-3460-7489



##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
  -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 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기업
- 참가비 : 무료

### 지원내용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산업별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 GP Europe, GP USA, GP Japan, GP China 등
  - 국내 : GP Korea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지원(연중 수시)

##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 바이어 검토 → 상담 매칭
-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

## 문의처

-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3224

### 용어 설명

**글로벌 기업** : 'Fortune Global 500' 기업 및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처·기관 및 민간에 산재된 분야별 해외진출 정보를 시장진출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 정보 채널입니다.

기존에 KOTRA에서 제공하던 해외시장뉴스도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수출, 해외 투자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 연구소, 학교 또는 개인

### 이용방법

- 해드림 홈페이지(dream.kotra.or.kr) 접속
  - \*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기업회원) 필요

### 제공정보

구분	주요내용
해외진출	진출 단계별 해외수출·투자에 필요한 정보 - 해외수출: 시장조사-수출기반준비-시장개척-계약및신고 등 - 해외투자: 현지조사-경영관리-정산-국내복귀 등
지능형 서비스	품목별시보고서, 해외투자유망국가 추천, 해외시장뉴스 이미지검색,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연관 콘텐츠 추천 등
국별 모아드림	국가개황정보, 출장자료, 산업정보, 보고서 등 해외진출정보를 국가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시장뉴스	83개국 128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전세계 산업·상품정보, 국가정보 등 수출관련 정보 및 취창업 일자리 정보 등

## 문의처

- KOTRA 해외시장정보센터 : 02-3460-7413, 7415



## Q&A

Q

해드림의 해외진출 통합정보는 어떠한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A

정부(기재부, 관세청 등), 공공기관(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연구소, 협회, 민간 기업 등 현재 68개 기관의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수출시보고서** : 품목별 해외진출 정보를 AI가 수집하여 한눈에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AI이미지검색** : KOTRA의 해외시장뉴스에 제공되는 표, 그래프, 사진 등의 이미지 정보를 검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KOTRA는 매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계시장 조망 및 권역별 이슈 점검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차년도 해외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우리기업, 유관기관(사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국내외 전문가와 KOTRA 10개 해외지역본부장이 함께 주요 세계 경제 이슈 및 권역별 시장을 조망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제시
- 오프라인 개최 시, 국내 설명회 참가고객 대상 자료집 제공

###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온라인 신청 접수 (※ 행사 개최 시 별도 안내)

## 문의처

---

- KOTRA 구미팀 (02-3460-7677)



## Q&A

Q

지난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설명회 녹화영상은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자료집은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 내 해외시장뉴스의 영상뉴스 - 설명회 카테고리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 경제외교 활용포털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경제 행사(예:비즈니스 파트너십)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 이용방법

- 경제외교 활용포털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행사 모집공고 게재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8
- 경제외교 활용포털 :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10개국 15개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실시하며 각종 애로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수출기업

### 지원내용

- FTA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 FTA 활용 설명회(웨비나) 및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실무활용가이드북, FTA 활용 Tips 책자 제공
- FTA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등



## 신청·접수

- 문의처로 연락 시 해당 FTA적용 지역의 센터로 연결

## 문의처

-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15
- FTA해의활용지원센터 연락처

센 터	전 화	이 메 일
베이징	(86-10) 6410-6162	yimhongsil18@kotra.or.kr
상하이	(86-21) 5108-8771	nh18@kotra.or.kr
칭다오	(86-532) 8388-7931	yuanqq@kotra.or.kr
광저우	(86-20) 2208-1939	huizhen@kotra.or.kr
도쿄	(81-3) 3214 - 7043	monolah13@kotra.or.kr
하노이	(84-24) 3946-0511	minsulpark@kotra.or.kr
호치민	(84-28) 3822-3944	rainaju27@kotra.or.kr
뉴델리	(91-11) 4230-6319	yoons@kotra.or.kr
첸나이	(91-44) 2499-7283	taewan@kotra.or.kr
자카르타	(62-21) 574-152	smilewater@kotra.or.kr
방콕	(66-2) 035-1555	parkhk@kotra.or.kr
마닐라	(63-2) 8894-4084	dnqnrqkr@kotra.or.kr
중남미	(52-55) 5514-3173	hmlee@kotra.or.kr
프놈펜	(855-23) 999-099	kimjs@kotra.or.kr
시드니	(61-2) 8233-4050	ashton@kotra.or.kr



## Q&A

**Q** 국내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국내에서 FTA상담을 원하실 경우 궁금해하시는 FTA 적용 국가의 FTA해외활용지원센터에 연결해드리거나 본사 자문 관세법인과의 상담을 주선했드립니다.

### 용어 설명

**비관세 장벽**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와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견기업, 대기업
- ▶ 불건전 제조업, 협회 및 단체, 국제 및 외국기관 등

### 설치지역 및 입주 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미국	뉴욕	19
	선전	10		LA	20
	충칭	8		워싱턴	10
베트남	호치민	15		시카고	16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8	러시아	모스크바	8
칠레	산티아고	9	UAE	두바이	11
태국	방콕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7

### 지원내용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창고, 사무용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 마케팅 전문가에 의한 시장정보 수집, 분석 제공
- 법률 및 회계 고문의 자문
-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 수수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지역별 상이, 1차년도 10~40만원)
  - 임차료 1차년도 20%, 2차년도 50%, 3~4차년도 100% 부담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실비 부담

## 입주기한

- 최장 4년

## 신청·접수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타당성 평가(현장 실태조사), 해외 시장성 평가 등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5
- (중진공) 글로벌사업팀 : 055-751-9674, 9676
  - \* 입주신청과 접수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





##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해외 GP센터 (Korea GP Center)는 해외 지역별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운영센터(10개)
  - 나고야, 디트로이트, 멕시코시티, 뮌헨(신규), 상하이, 실리콘밸리(신규), 아테네, 오사카(신규), 쿠알라룸푸르, 프랑크푸르트
-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독립임차형 사무실 혹은 공유오피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세일즈랩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랩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원헨, 실리콘밸리, 오사카 센터 신규 개소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KOTRA홈페이지 > 맞춤형서비스 > 해외GP센터 > 신청 가능사업 보기 > 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sekyung\_lee@kotra.or.kr)

### 처리절차

- 참가신청서 검토(약 2주) 후 승인여부 통보

### 지원규모

- 지역별 상이
  - \* 디트로이트, 나고야,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멕시코, 아테네, 원헨, 실리콘밸리, 오사카 10개소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7757



##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사항: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플랫폼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협약개시일 ~ 동일년도 11월 30일까지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수입대행·배송·수출마케팅 등은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이란, 쿠바, 라오스 제외
- 1개 사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정보 제공
- 참가비 및 국고지원금(국고지원 비중 : 중소(70%)·중견(50%), VAT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 ~ 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 ~ 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 ~ 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 ~ 10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45, 7430, 742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진출이 활발한 지역 17개국에 27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해외투자 희망기업 및 기진출 우리기업(규모 무관)

### 지원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설립 및 운영 지원
  - 전문가(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상담 지원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제공(각종 세미나/포럼/뉴스레터 등)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마케팅 및 제3국 수출지원
  - GVC 관련(예: 공장 이전, 수입선 발굴 등)지원
  - CSR(예: OVOP)사업 지원
  - 진출기업용 현지 M&A 매물 발굴 지원

- 17개국 27개소

\* 2021년 개소 완료 : 뉴욕, 달라스, 쿠알라룸푸르 3개소 추가

## 운영조직

- 17개국 27개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태국
하노이	호치민	다낭	자카르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다롄	양곤	방콕

미국		캄보디아	인도		폴란드	몽골	말레이시아
뉴욕	달라스	프놈펜	뉴델리	첸나이	바르샤바	울란바토르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독일	러시아	
마닐라	상파울루	부다페스트	멕시코시티	프랑크푸르트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 문의처

- 투자M&A팀 : 02-3460-7352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해외투자’ 내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해외진출(예정)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상담, 확보,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

### 운영조직

- IP-DESK 소재 국가 (11개국 17개소)

국 가 (11개국)	IP-DESK (17개소)
중국(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미국	LA,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인도	뉴델리
러시아	모스크바
멕시코	멕시코시티

- IP-DESK 미소재 국가 (22개국 22개소)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IP-DESK 소재 및 미소재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절차

- IP-DESK 소재 국가



- IP-DESK 미소재 국가



## 지원내용

- IP-DESK 소재 국가 지원 사업
  - 지식재산권 상담 지원
  - 해외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구분	지 원 비 용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 (단위 : US\$)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지원 건수	한도 (건)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10건/ 1회	상표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450	400
		디자인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700	450
3건/ 1회	특허	1,000 (1,200)	2,000	1,500	2,500	1,500	2,000	1,500	1,500	500	1,000	750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 최대 70% 지원, 중복 지원시 20%p씩 지원비용 하락 (1회당 3건) * 최대 \$ 10,000(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사업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분쟁대응,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구분	세부 지원 사업	비용	지원건수
출원지원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社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행정단속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맞춤형서비스-해외지식재산권보호-지원신청

## 제출서류

- 국내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ip-desk@kotra.or.kr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맞춤형서비스-해외지식재산권 보호



## Q&A

**Q** 기업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아닙니다. 필수 서류만 제출하시면 지원해드립니다.

**Q** 사업수행대리인 리스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http://www.kotra.or.kr)) 해외지식 재산권보호 사이트 내 '사업관련연락처'에서 수행대리인 리스트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필수요건 1,2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01 [필수]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 02 [필수]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한금지원, 조세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대한민국 법인의 자회사, JV 등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며, 법인 자산만 가능

신청일로부터 아래 이행요건이 완료 되어 있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이행요건을 계획 하고 있는 기업은 우선 선정된 이후 이행기한 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사항의 계획으로 선정이 가능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신청 가능

#### 03 [이행]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1)청산 2)양도 3)생산량 축소(매출액25%감축)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요건 면제>

-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청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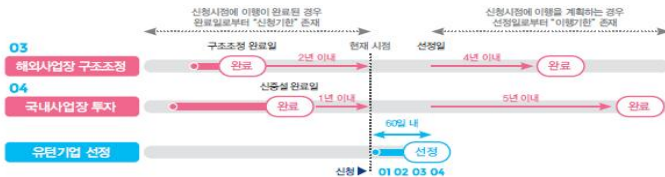
<요건 완화 : 축소비를 완화>

- 연구개발업 : 경상연구개발비의 10%~25%
- 협력형 유턴 : 생산량(매출액)의 10%

#### 04 [이행]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동일)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 1) 신설 :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설치
- 2) 증설 : 증축 등 공장건축연면적을 넓히는 것
- 3) 공장매입(임차) : 공장을 매입(임차)하고, 제조시설 설치
- 4) 제조시설투자 : 기존 공장 내 유휴면적에 제조시설 설치



## 지원내용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용 시, 최대 USD 20,000 지급합니다.
- ☑ 이전운송비, 수수료등 11~44%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 투자

- ☑ 전국 산업단지 및 지자체 입주를 지원하고, 토지매입비용, 건설투자비용, 기계구입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사용하던 중고 자본재, 사용할 신규 자본재 수입 시관세 50~100% 감면합니다.
- ☑ K-제조업 및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로봇제조 활용혁신 등 스마트 공장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 인원 총원 시 고용창출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1인)과 해외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내사업장 운영

- ☑ 법인세 최장 7년, 50~100% 감면과 시설운영자금 융자, 보증 보험 우대 등, 금융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등을 상시 경청하며, 국내복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유턴지원팀 : 02-3460-7361~4



## 글로벌 M&A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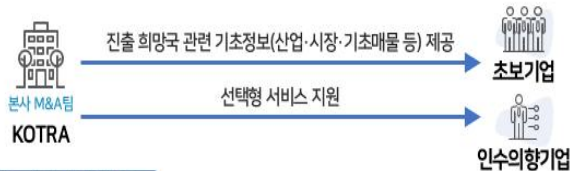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산업군(품목군)
  - 산업 및 품목 무관
  - \* (지원 불가 대상) ① 국내 M&A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사항



#### 서비스 패키지 세부내용

##### ▶ 초보기업용 : M&A Learning Pack

- ① 산업 및 시장동향보고서(구독 자료 중 선택제공)
- ② Trial 매물(2~3건) 발굴
- ③ 동종업종 리스트 조사
- ④ M&A 원포인트 전략 보고서 제공(인수시장, 핵심플레이어, 인수사이즈, 인수전략 등 구성된 요약서)

##### ▶ 인수의향기업용 : M&A Selection Pack

- ① 산업조사보고서(필요 시 무역권 비용 지원)
- ② 관심 매물(3~5건) 발굴
- ③ 현지 자문사 연결 서비스
- ④ 현지 출장/대행 실사 지원 서비스
- ⑤ 인수 후 합병(PMI) 지원(채용, 마케팅 등)

- 비용 지원사항

- 지원 대상 : KOTRA 글로벌 M&A 지원사업 신청기업

- 지원 금액 및 범위 : 서비스 무료 지원

- ※ 실사 비용 지원: 회계·법무 실사 자문수수료의 50% 해당 금액을 평가 진행 후 지원 (단, 3,000만원 한도 내)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양식 송부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심사·평가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평가 없음

## 문의처

- 문의처 : 투자M&A팀
- 대표전화 : 02-3497-1110
- 홈페이지 : 코트라 사업신청 홈페이지 > 사업영역 소개 > 해외 투자 > 글로벌 M&A 지원



## KOTRA 글로벌 ESG + 사업

ESG가 신규 국제규범으로 확산되어 우리기업에 글로벌 ESG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현지 사회공헌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대

### 지원대상

-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벤처 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글로벌 ESG) 상·하반기 2회 대내외 공모 사업으로 추진
  - (+형 사업) 긴급 재난, 보건·의료 및 프로젝트 특화형만 수시 사업으로 추진

### ※ 참고사항

- ▶ (대기업 및 협회) 동반성장형 사업 지원(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시 사업비 지원)
-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현지 기부 행사만 지원(사업비 미지원)

### 지원내용

- 지원사업

사업유형	사업내용
E형 (그린 이니셔티브)	○ (글로벌 녹색협력) 저탄소·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협력 구축

S 형 (인도적 상생지원)	○ (상생협력)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G 형 (지속가능 글로벌 경영구축)	○ (지속가능 경영구축) ① 국내·외 글로벌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 포상 ②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주요 ESG 동향 및 정보 확산 온라인 세미나 개최(연 1회) ③ 국내외 구직자 대상, 대·내외 ESG 유망기업 채용 상담회
+ 형 (맞춤형 재난· 보건·의료, 프로젝트 특화형)	○ (재난 및 보건의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코로나19 및 현지 전염병 확산, 심화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가 요청한 구호물품 및 의료물품을 기부 ○ (프로젝트 연계) 개발협력사업(ODA, KSP, EIPP 등), 공공조달, G2G 방산사업 등 KOTRA 유관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연계형 글로벌 ESG 사업 추진

## ● 수행방식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E 형 (그린 이니셔티브)	제품·장비· 기자재 (유형) 기부	우리기업의 제품·장비·기자재를 현지에 기부하여 녹색 협력을 구축하고, 현지 정부 및 주요 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
S 형 (인도적 상생지원)	기술·서비스 (무형) 교육 프로그램	우리기관·기업이 현지 정부,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서비스 경험 전수 또는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전문 인력 양성을 돕고, 현지 정부, 발주처와 유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구축
+ 형 (맞춤형 재난· 보건·의료, 프로젝트 특화형)	유류·장비 이전 및 기증	유류·저활용·불용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

## 신청·접수

- KOTRA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https://www.kotra.or.kr/biz/overseas/kotraCsr/csrBoard.do?menuCode=D04>
-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현지 사회공헌 정도, ESG 및 SDGs의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기업을 선정



## 문의처

- 개발협력실: 02-3460 7532, 7524, csr@kotra.or.kr



## Q&A

**Q** 사업 품목별 지원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A** 기업지원금은 참가사업의 품목별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① 글로벌 ESG형: 제품·장비·서비스 및 기술·경영 교육은 최대 1,500만원 지원, 유희장비 이전사업은 최대 5,000만원 지원됩니다.
- ② 긴급재난, 보건·의료 사업은 재난, 의료물품은 500만원, 의료장비(특수장비 포함)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해외 마케팅,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 추천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해외 전문인력 채용 수요 기업 및 기관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 110만원 (적격인력 발굴 기준)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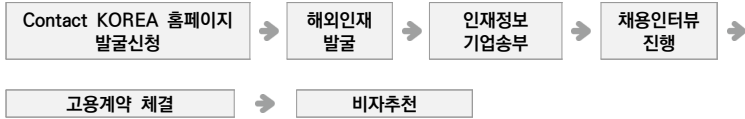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비자직종에 해당하면서,
  -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년 이상
  - 석·박사
  - 경력 5년 이상인 자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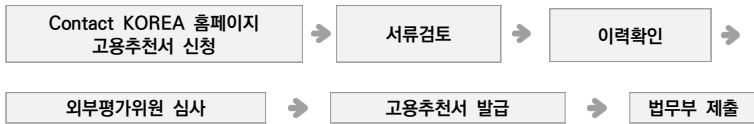
-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http://www.contactkorea.kotra.or.kr)) 신청

## 처리절차

### ●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 ● 고용추천서 발급서비스



## 문의처

- 해외취업팀(02-3460-7387~8)
- 홈페이지([www.contactkorea.kotra.or.kr](http://www.contactkorea.kotra.or.kr))



##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KOTRA아카데미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 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 지원내용

#### 교육과정

-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러시아·CIS 등
-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특정 국가 내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
-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 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교육 과정
    - \* 수출 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무역량 강화 과정
  - \* 해외전시 마케팅, 온라인 수출 마케팅, 영업 역량 강화과정 등
-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GBC)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 \* 컨설팅, 마케팅(온라인 플랫폼 포함),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 통상·무역 전공 고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수출 실무 인재 매칭 프로그램
- FTA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 현장에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수출전문위원, 멘티기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마케팅 연계형 FTA 활용 컨설팅 교육
    - \*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www. kotra.or.kr) 사업신청 참고

## 문의처

- KOTRA 아카데미 : 02-3497-1185 /  
042-338-1702(대전분원) academy@kotra.or.kr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열린무역관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 지원무역관

- 79개국 124개 무역관
  - \* 4개 무역관(아바나, 바그다드, 트리폴리, 다마스쿠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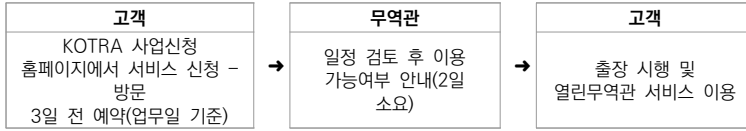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 당 1회만 가능)
  -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무료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기초상담	상담 신청고객 대상으로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 \* 바이어 상담주선 등 유료 서비스 항목은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 제출서류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검색창에서 '열린무역관' 검색 → 열린무역관 사무실 이용 또는 내방 기초상담 중 선택하여 신청

##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
- 각 무역관(대표 e-mail / KOTRA 홈페이지 참고)



## 경제외교 활용 사업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모든 국내기업

### 지원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 문의처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8
- 경제협력사업팀 : 02-3460-7694



## 제6부

## 한국무역협회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후속 투자유치, 공동 연구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증사업 진행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 02-6000-5658



## Q&A

Q

창업 연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협회의 글로벌 기업과의 맞업에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에게 기술 실증(PoC)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복합시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실증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 02-6000-5658



### Q&A

**Q** 창업 연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마다 모집요건이 상이하여 개별 사업 계획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용어 설명

**PoC(Proof-of-Concept), 개념 증명** :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용해보는 것.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매칭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외 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챌린지를 생성·관리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직접 운영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이용자 접근성 제고
- ▶ 스타트업 DB 검색 기능 도입으로 스타트업 노출 확대
- ▶ 스타트업 간 소통 창구 개설로 네트워킹 활성화

### 신청·접수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http://www.innobranch.com)) 가입을 통한 플랫폼 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신규사업 등록 시 공고 내용의 적격성

## 문의처

---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 02-6000-5658



## Q&A

---

Q

기업별로 한 명의 관리자만이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가입 가능하며, 기가입된 기업의 경우 기업 소개 내용은 추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로, 국내외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 간 비즈니스 밋업, 부스 전시, 컨퍼런스, 워크샵, 스타트업 경진대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비즈니스 밋업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전시 부스 및 전시 공간 지원, 참관객 대상 기업 홍보
-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4차산업 혁신기술,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

### 신청·접수

-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 ([www.nextrise.co.kr](http://www.nextrise.co.kr))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3년 4월 중 오픈 예정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http://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영문 사업소개서 등)



## 문의처

---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 / 02-6000-5658
- 넥스트라이즈 홈페이지: <https://www.nextrise.co.kr>



## Q&A

Q

2023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3, Seoul〉은 6월 1일(목), 2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 지원대상

-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서비스〉

-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가 보유한 214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미국, 중국, 일본 등)
-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와 국내업체 간 온라인 상시 거래알선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 실시간 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tradeKorea 마켓 입점 혜택〉

-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 활용 셀러스토어 무료 제작
- 편의 및 제휴서비스
  - 화상상담률 제공, 소액결제 지원, 송금 수수료 할인 등

## 신청·접수

---

- tradeKorea.com 회원 무료 가입 후 각종 서비스 신청
  - 영문 : [www.tradekorea.com](http://www.tradekorea.com)
  - 국문 : [kr.tradekorea.com](http://kr.tradekorea.com)

## 문의처

---

- 플랫폼마케팅실 : 02-6000-5392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
- ▶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FTA종합센터는 서울 및 전국 단위 공급망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는 관할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및 기초 컨설팅을 시행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담당 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최대 4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국 18개소)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기초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 업체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이하 : 30% ⑤ 1,000억원~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 기존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유형은 폐지하고, B·C유형의 선택 프로그램을 통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심사 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콜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서울 : 02-6000-7583~4
  - 경기(남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1번)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2번)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032-810-2824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 041-539-4531
  - 세종FTA활용지원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활용지원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활용지원센터 : 062-350-5862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활용지원센터 : 033-257-4071
  -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043-229-2722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 054-454-6601
  -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활용지원센터 : 053-222-3105~8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 052-287-3060~1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 051-990-7016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064-757-2164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으로 인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업체들에 맞춤형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콜센터, 특강/설명회 : 제한 없음
- ▶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비관세장벽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이나 국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 ▶ 지식재산권 출원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지재권 출원 및 해외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① 비관세장벽 대응 1380콜센터 연중 상시 운영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FTA종합지원센터 전문 상주인력 (변리사, 해외인증 전문가)과의 지재권, 해외인증 관련 전화상담 상시 가능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②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변리사 혹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1~3회) 하여 업체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 FTA통합 플랫폼(okfta.kita.net)을 통해 신청 가능

③ 지식재산권 출원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지재권 출원 및 해외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쏠 과정의 제반 비용을 일정 한도 내 지원 ('22년 기준, 지재권 최대 500만원/ 해외인증 최대 600만원)

\* 2023년도 사업은 2023년 3~4월 중 한국무역협회 및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④ 비관세장벽 특강/설명회 개최

- 특허·디자인 출원 과정, 어린이제품 미국·유럽 시험인증 획득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 진행 (연중 수시 개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및 한국무역협회(kita.net)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02-6000-7582)





##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현장 컨설팅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 유의사항

-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조건

- 금리 : 연 2.0~2.5%(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2.5%), 11~20년(2.25%), 21년이상(2.0%)

- 기간 : 3년(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 용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 신청·접수

-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용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용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



##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을 위해 1:1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는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글로벌 바이어와 우리기업과 수출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화상 상담 인프라(상담장, 화상시스템 등) 및 무료 통역 지원
- 수출상담회 연계 마케팅 지원 (무료 샘플 배송, 사후 마케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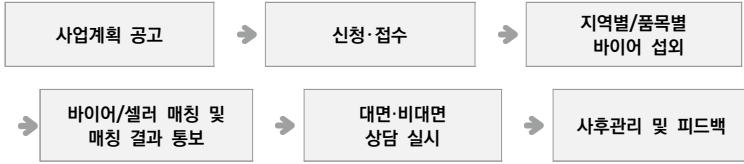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지역/품목별 연중 상시 개최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해외 현지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마케팅 행사와 연계, B2B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B2C 참관객 대상 판촉전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바이어 초청 대면 상담 (B2B), 일반 참관객 대상 홍보 (B2C)
- 상담 바이어 발굴, 매칭 및 통역 지원
- 인플루언서 초청 제품 홍보 및 부대행사를 포함한 판촉전 개최 지원
- 온라인 전시관 (tradeKorea.com) 운영 및 홍보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의 1:1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알선하여 수출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노하우가 부족한 우수 제조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하게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 지원내용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국내 유망 제조기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매칭 상담 알선 등 수출 마케팅 지원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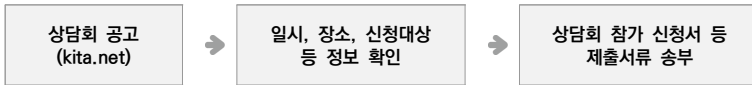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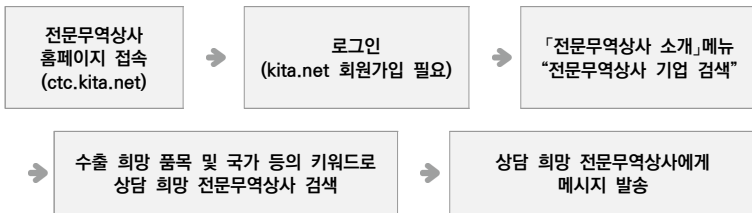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오프라인 상담회



- 온라인 매칭



## 지원규모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상담회 연중 상시 개최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



##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네트워크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인프라 및 현지 네트워크 (파트너사 등)를 활용하여 국내 우수 제조기업과의 수출상담회 및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 판촉전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및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와 수출 상담회
- 우수 제조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 판촉전 지원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제출서류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http://ctc.kita.net)



##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업계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전시 마케팅 사업

### 지원대상

- 해당 산업 분야 관심기업

### 지원내용

-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회 연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세미나 등 부대 행사 개최

### 신청·접수

- 전시회 부스 참가 : 각 전시회별 지정 접수처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 전시회 참가기업 우선 매칭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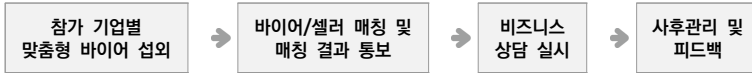
- 전시회별 참가 안내문 참조

## 처리절차

### ● 전시회 부스 참가



###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참가



## 지원규모

### ● 전시회 3건, 해외바이어 70개사 내외 초청 및 매칭 상담회 개최

\* 추진 과정에서 지원 방식·규모는 변동 가능

	전시·상담회명	시기	장소	홈페이지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16 ~ 19	코엑스	spoex.com
2	월드IT쇼 (World IT Show)	4.19 ~ 21	코엑스	worlditshow.co.kr
3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6. 7 ~ 9	벡스코	madex.co.kr

## 문의처

### ● 전시회 참가 문의 : 각 전시회 홈페이지

###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문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www.kita.net](http://www.kita.net))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 관리, 제품 홍보, 현지 시장 트렌드 파악, 국내외 동종 산업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 마케팅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최대 70%) 및 장치비(최대 7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 전시회별 지원을 상이,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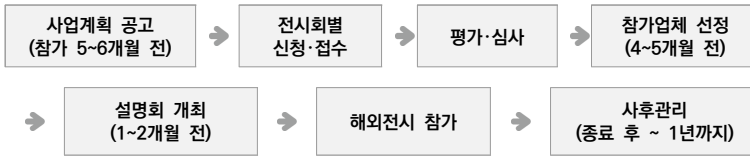
###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www.smes.go.kr/sme-expo](http://www.smes.go.kr/sme-expo))
  - KOTRA ([www.gep.or.kr](http://www.gep.or.kr))

## 제출서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 필수서류
    - \*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 산업재산권 인증서, 정부/지자체 표창 사본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4개 해외전시회, 약 40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구분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독일 쾰른 FIBO	4.13 ~16	10개사	중소기업중앙회
2	영국 에버던 해양 전시회	9.5~8	10개사	중소기업중앙회
3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선통신전시회(MWC)	9.26~28	10개사	코트라
4	프랑스 파리 IT 융합 에너지 전시회	11.28~30	10개사	중소기업중앙회

- \* 지원 전시회, 시기, 모집업체 숫자는 변동 가능

## 문의처

---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무역업체의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채팅/화상/전화 맞춤형 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협회 회원사 (비회원사도 연 3회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지역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채팅/화상/전화)

상담분야	이용방식	컨설턴트
무역거래/결제	(전문가의 상담가능 시간에 맞추어, 고객이 원하는 상담형태로 사전예약)	무역실무 전문가
해외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통관/관세		관세사
계약/클레임		변호사
세무/회계		회계사/세무사
환율/외환		외환전문가
온라인마케팅		오픈마켓 파워셀러
인사/노무		노무사
특허/상표		변리사
창업컨설팅		무역업 창업 전문가
글로벌 지역전문가		글로벌 권역별 현지 전문가
운송/물류		지역별 물류 전문가

전시마케팅		전시마케팅 전문가
Dx컨설팅		Dx(디지털화)전문가
기술상담		기술 및 방산 전문가
전자상거래		글로벌 e커머스 전문가
기타분야		농식품수출/해외시장조사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TradePro > 1:1상담/  
오픈상담



##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 지원내용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 추천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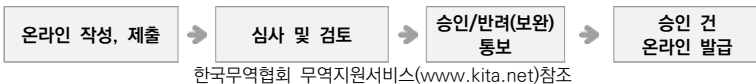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온라인 제출, 협회 심사(5-7일 소요)-> 협회승인 후 온라인 발급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 [발급] -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추천인증]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전화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제출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에서 입력 후 제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
    -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 사업배경(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3개년),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 \* 현지판매 및 영업 전략(마케팅 전략 포함)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60~18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추천대상

- 법무부 훈령 제1192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추천 제외 대상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자격 요건 완화 ('18년 1월 ~ 신청일까지 상용목적으로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한 자)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추천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준비 서류(온라인 작성,첨부/별표는 별도 우편제출)

- 추천의뢰서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 소지자 명단
  - 사업자등록증명(2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인감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KTNET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명판 및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 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중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 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온라인 첨부  
(여권서명 포함)
- 정보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온라인 전자서명)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 온라인발급(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 Q&A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업무장애요소 발생 시 발급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 용어 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기업이 무역분야 외국인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자 할 때, 사증(VISA) 발급의 필요성을 인증해주는 추천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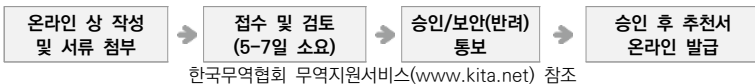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에서 온라인 작성 및 첨부

## 신청서류

- 온라인 제출 및 심사(심사 후 추천서 온라인 발급)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온라인 제출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 지원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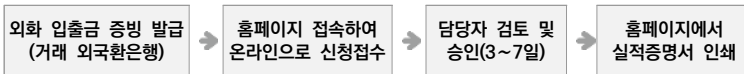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발급 신청] → [용역/전자적무체물] 탭 선택 후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 거래증명서 서류
- 송금 및 입금 증빙서류

## 처리절차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참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Q&A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개방형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에 혁신역량을 수혈하고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 인프라 및 사업화 기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스타트업 선발
  - 협회가 소싱/추천한 매칭 스타트업 대상, 참여 대·중견기업이 선발
- (스타트업)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 기회 제공
  - 대·중견기업과의 1:1 실무 밋업 및 IR 기회 제공

### 협업 외 추가 지원내용

- ▶ (일부 대기업 대상) 협력 촉진을 위한 실증 PoC 프로세스/자금지원 도입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http://www.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https://innobran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제품/솔루션의 대·중견기업 수요 연계성 등

## 제출서류

- (대기업) 혁신 수요 분야 자료 (전화/이메일 상담 가능)
- (스타트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협력 제안서) 업로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스타트업) 약 40개사
  - \* '22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11개사 초청, 창업기업 195개사 연결 통해 40개 협업 사례 도출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 wr.choi@kita.or.kr / 02-6000-5171

### 용어 설명

**오픈 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무역센터 CMC(코엑스 MICE 클러스터 위원회)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술의 현장검증 및 비즈니스 레퍼런스 축적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제품/솔루션의 실증을 위한 현장 PoC(Proof-of-Concept) 프로세스를 지원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무역센터 CMC 보유 인프라(WTCS, 코엑스, 도심공항, 현대백화점, GKL 등)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에 활용가능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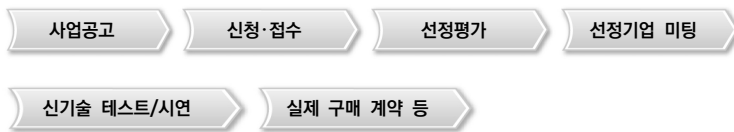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제품/솔루션의 무역센터 CMC 수요 연계성
- ▶ 다중 복합이용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등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국문 IR 및 협력 제안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약 15개사
  - \* '22년 지원현황 : 무역센터 CMC 6개사와 86개사 스타트업 매칭을 통해 15개 프로젝트 현장 테스트 진행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 [jh.park@kita.or.kr](mailto:jh.park@kita.or.kr)/ 02-6000-5351



##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울 코엑스 2층, 뉴욕, 두바이에 조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AC/VC), 스타트업지원기관, 창업희망자 등

### 지원내용

-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행사장(피칭센터, 150인 수용가능), 회의실(3개) 및 코워킹 라운지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 스타트업 브랜치 뉴욕지부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미국진출 희망 스타트업에 대한 코워킹 공간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도움 - 스타트업 브랜치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 내용 등 필수 기재)

## 처리절차

- kita.net 회원 가입 → 스타트업 브랜치 멤버십 가입 → 이벤트 예약



## 오시는 길 및 이용방법

- 코엑스 동문(영동대로변)으로 입장하신 후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지나 좌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브랜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간 소개 및 사용 신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bit.ly/3187ueG>



## 한·중 FTA, RCEP 현장방문컨설팅

체계적인 한중 FTA 및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FTA 활용 실무, 중국 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분야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수행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 1MD를 필수로 선택 후, 나머지 9MD에 대해서는 총 4개 분야를 수요자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형 컨설팅 (MD=Man Day)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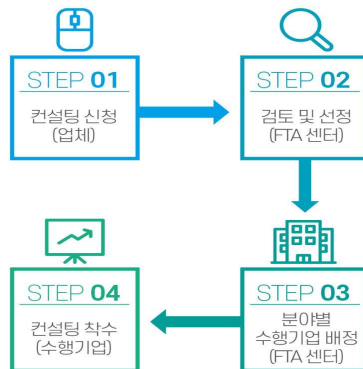
- 신청방법 :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okfta.kita.net>)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메뉴 선택
- 신청기간 : ~2023. 11.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업체의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컨설팅 비용(MD당 약 50만원) 업체 부담금 발생

매출액	컨설팅 부담금
50억원 이하	무료
50억 ~ 100억원 미만	10%
100억원~500억원 미만	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대기업 미만	50%

## 제출서류

- 2023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 등록증, 사업진행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직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서류,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BOM(있을 경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 60개사 내외(사업비 1.5억원)

## 문의처

---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80
  - 이메일 : chinadesk@kita.net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 제7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기업간 거래공정화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약이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 협력재단 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불성립 및 중단되어 민사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소송비용의 50%, 최대 10백만원)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 지원

## 신청·접수

-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 선 : 대표번호 135+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pey@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유 선: 02-368-8463/ 이메일 : pey@win-win.or.kr



## Q&A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18	기계산업동반성장 진흥재단	032-680-3903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6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6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5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50	한국의료산업협회	02-528-0111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 조합연합회	02-2280-8220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4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 동조합	02-783-695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2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6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3481-9906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벤처기업협회	02-6331-7002	한국골판지산업협동조합	02-3474-712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02-556-0301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1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02-716-161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사)서울의류협회	02-865-9213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031-431-7629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0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사)IT여성기업인협회	02-6956-9952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협동조합	02-3431-300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주)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2-2239-0700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연합회	02-2038-2558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 성과공유제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

### 사업내용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http://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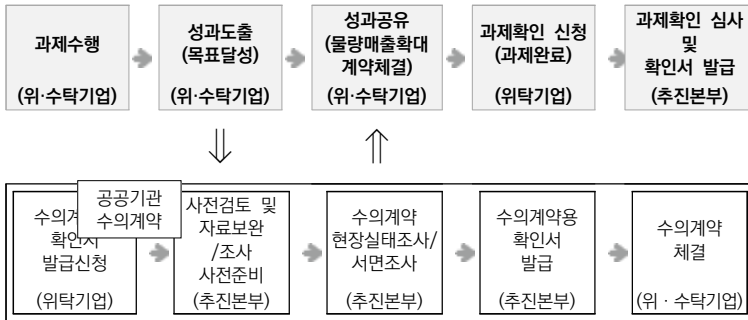
-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 공유 실적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93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http://www.benis.or.kr)



## Q&A

**Q**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 제도가 2종류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성과공유제는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과 기업간' 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와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www.benis.or.kr](http://www.benis.or.kr) (문의처) 02-368-8793

②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http://sanhakin.mss.go.kr) (문의처) 055-751-9825

### 용어 설명

**등록과제** : 신청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갖춘 성과공유계획을 승인 받은 과제

**확인과제** :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확인받은 과제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 (winwinnuri.or.k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 단, 프로그램 운영은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 ▶ 협력사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 계열사 오픈 :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부분 오픈 : 기존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 이용절차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 단계별 세부사항

- ▶ 회원가입
  - \*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 필요
- ▶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 ▶ 선정결과 확인
  - \*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하고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 중 신청 및 참여이력을 통해 선정 결과 확인
- ▶ 프로그램 참여
  - \*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 지원규모

- 제한없음
  - \* '22년 지원현황 : 242개 대기업·공공기관 3,775개 프로그램 등록운영(11월 말 기준)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 Q&A

**Q**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업 회원가입 시 주거래기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예비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한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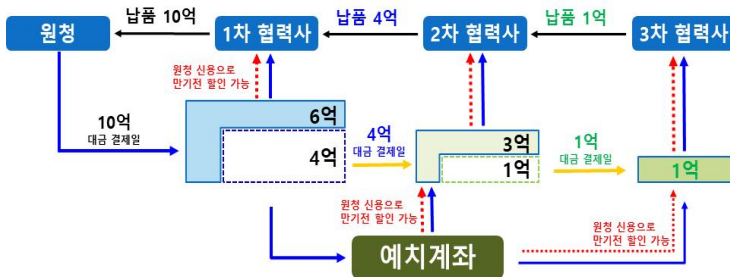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입니다.

원청이 상생결제 시 ①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약정계좌에 이체하면 ②결제일에 1차 협력사 및 예치계좌(대·중소협력재단 명의)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③2차이하 기업은 각각의 결제일에 예치계좌에서 대금지급



- \* 정부·지자체의 경우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 (조기현금화) 금지

### 제도장점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현대커머셜 총 12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참고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21.10.19)

## 문의처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Q&A

**Q**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위 거래처에 구매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지급해야하나요?

**A**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처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화 규정을 준수바랍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Q** 상생결제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 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장려금** : 하위 거래처에 대금을 보관하는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분기별로 지급

**환출이자** : 하위 거래처가 조기 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지급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주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산업내 선도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제한된 기업 등

###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 선도기업 : 각 산업을 리딩하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글로벌 기업 한국법인 등

### 주관기업 제한 요건

- ▶ 업종별 협·단체(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신청 대상)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제한된 기업 등

\*\* 신청자격의 자격부합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 지원내용

- 소비재 :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콘텐츠와 해외 방송 채널, 미디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 법인,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사업 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원 항목
소 비 재	◦ (K-컨텐츠 연계)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제품 현지화비, 임차료, 영상 제작비, 제품 운송비, 홍보·마케팅비, 상담 용역비 등
	◦ (유통망 연계) 주관기업 보유 해외 방송 채널, SNS,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유통망 연계 판로 개척 지원		
산 업 재	◦ (인프라연계)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 지원	총 과제비 60%이내 (기금 70%)	
	◦ (프로젝트성 인프라 연계)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현지 수주 교섭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참여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총 과제비 60%이내 (기금 70%)	

## 신청·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 내 사업공고 참고
- [gw@win-win.or.kr](mailto:gw@win-win.or.kr) 이메일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 산업내 선도기업)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2, 7513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473, 764, 754, 75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본 사업을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산업을 리딩하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의 선도기업일 경우 가능하며,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예정입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참여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됩니다. 또한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 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
- 인적보호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경업금지약정 계약 작성 지원
-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및 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서약 등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인적보호 분야' 신설

####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 Q&A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 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 (피해구제)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인정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비용 지원
  -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무료)
  - \*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률자문에 한하여 최대 60시간 자문 지원

● 지원절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술유출·탈취 등 피해 중소기업이 충분한 법무지원단(변호사·변리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30시간에서 60시간까지 확대하여 지원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law@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4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기술보호 지원반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및 조속한 사건 해결 유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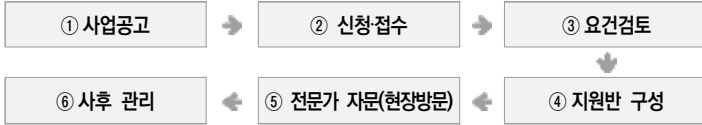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일(무료)

● 지원절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역별 변호사 1~2명에서 3~4명으로 확대

**신청 · 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1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사후구제 방문 시 지원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변호사(변리사),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방문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 지원절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만 가능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기능 신설

### 신청·접수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4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69  
(solomon@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Q&A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디지털포렌식 분석 무료 지원(연 5백만원 이내, 추가 비용 자부담)
- 지원절차



## ● 지원사례

▶ 중소기업 개발자가 퇴사 전 개발자료가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고,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어 영업비밀 무단사용이 의심되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함

⇒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형사상 증거를 확보하고, 법무지원단 법률자문을 통해 형사 고발하여 조사 진행 중

▶ 금형제작사에서 투자명목으로 설계도면, 사진, 설명 등을 요구하여 기업이 관련 자료들을 송부하였으나, 제품 도면 확인 후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출원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함

⇒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메신저 등 대화내용을 복구하였으며,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

▶ 영업관리 직원이 퇴사하며 거래선 명단 및 제안서 등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고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의심되어 포렌식 분석을 요청함

⇒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자료의 외부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퇴사직원에 경고장을 발송 후 상호 합의함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forensic@win-win.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7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Q&A

**Q** 디지털포렌식이란 무엇인가요?

**A**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포렌식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기업의 신속한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각종 소송 및 수사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후속 지원사업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 확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에 중소기업 등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및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 지원
  -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최대3건, 90만원 한도) ③ 법무지원단(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④ 기술보호 정책보험(보험료 70% 지원에 3% 추가지원)	⑤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ltp300@win-win.or.kr)(’23년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히, 임치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한도 추가지원

- |  |  |
|--|--|
| <input type="checkbox"/>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
| <input type="checkbox"/> 창업 5년 이내 기업(3%)         |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인증기업(3%)           |
| <input type="checkbox"/>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input type="checkbox"/>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 보험목적물 : 중소기업 기술(특히, 임치기술)
- 보장내용 : 보험목적물에 대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



- 국내 소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보험가입자의 담보물에 관련한 분쟁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은 보상불가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 최대 5천만원	• 최대 5천만원
보험효력	• 가입 즉시	•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보험료	• 1년기준 약 160~200만원 (산업별·매출별 상이)	• 1년기준 약 200~230만원 (산업별·매출별 상이)
보험료 할증·할인	• 최근 5년간 기술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 • 3년 계약 시 연 요율의 250% 적용	

## 신청·접수

- 이메일 상시 접수(insurance@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204-7786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Q&A

**Q** 보험료 지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가입절차 완료 후 기업부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 가입이 완료되며, 이후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로 직접 지급됩니다.

**Q** 어느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나요?

**A**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는 [insurance@win-win.or.kr](mailto:insurance@win-win.or.kr)을 통해 접수바랍니다.

### 용어 설명

**보험목적물** : 보험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대상

**피소** :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지원내용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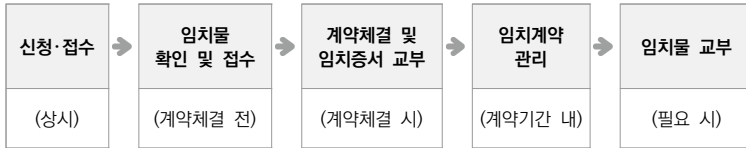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를 1/2 감면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신청·접수

- 온 라 인 :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http://www.kescrow.or.kr)) 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687
-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http://www.kescrow.or.kr)



##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말간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 (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 기타 참여제한 상태인 기업

####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보유 기술 유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 신청·접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 등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22년 지원현황: 45개사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02-368-8726,8762
- 기술보호 올타리 :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 제8부

##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도전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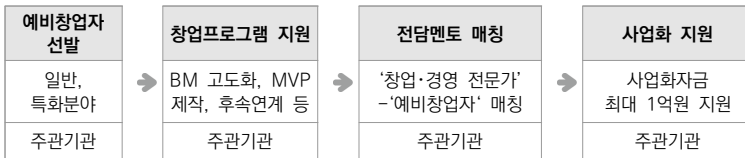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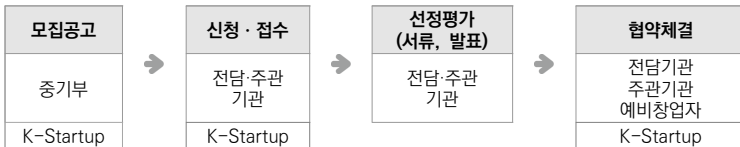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 (멘토링)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절차



**신청·접수**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992명 내외(650.5억원)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중(예정)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2단계 평가 진행 예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 문의처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01, 1803~181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1억원)
-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 진입, 초기투자, 실증검증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신청·접수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3년 3월(예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595개사 내외(예산 553.05억원)
  - \* '22년 지원현황 : 700개사(최대 1억원, 평균 7천만원 지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4, 1838, 1841, 1842, 1845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Q&A

**Q**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창업도약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BM 고도화, 협업, 인프라 등) 지원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과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예정)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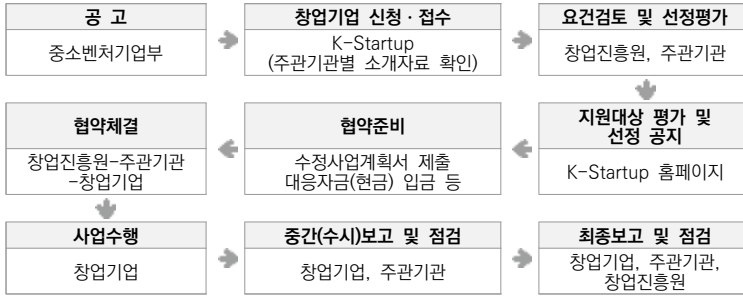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 개발 역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모집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394개사 내외(예산 592억원)
  - \* '2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3,792개사, 선정지원기업 600개사, 평균지원금액 1.25억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770, 186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재도전성공패키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이력이 있고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사업공고일 기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성실경영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총 108명 내외 (총 168억원)

\* '22년 지원현황 : 282명 대상 재창업 사업화 자금·교육·멘토링 지원

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 협약기간 8개월
IP전략형	- 특허를 보유한 의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외 추가로 지식재산컨설팅* 제공 * (지식재산컨설팅) IP전략수립, 기술적 문제해결등을 통한 IP 기술 제품화, 특허 권리확보 등 지원(최대 50백만원, 특허청)
기업발굴형	- 대·중견기업과 연계하여 재창업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기업 인프라 지원(자금, 시설 등) - 사업화 자금 최대 200백만원, 협약기간 10개월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사업화자금 최대 60백만원 → 150백만원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23.1~2월 예정)
  - \* 사업공고 일정은 지원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재창업기업 여부, 지원제외 업종 등 확인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044-204-7435, 7487
- 창업진흥원(재도전창업실) : 044-410-1760~6
- 중소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의 6에 따름

**성실경영평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3조에 따름



## 팁스(TIPS)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팁스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자금 최대 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 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 씩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 포함)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포스트팁스)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10년 이내 창업기업

- ① 성공기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팁스 “성공” 판정받은 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 ②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후속투자 유치 제외 팁스(TIPS) 성공(완료)판정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 ⑤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지원내용

-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팁스타운 입주 지원
  -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 (판로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 신청·접수

-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 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 (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프리팁스)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 (포스트팁스) TIPS 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 제출서류

- (팁스) 사업계획서 등(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식)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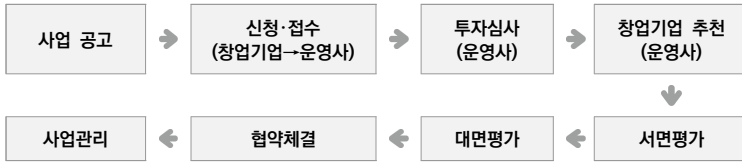
## 처리절차

- (프리팁스 선정절차)





- (팁스 선정절차)



- (포스트팁스 선정절차)



## 지원규모

- (프리팁스, Pre-TIPS) 총 예산 43억원, 43개팀 내외
- (팁스, TIPS) 총 예산 3,480억원, 720개팀 내외
- (포스트팁스, Post-TIPS) 총 예산 259억원, 72개팀 내외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354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19
- K-Startup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또는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투자실적(2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
- ▶ 휴·폐업 중인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 신시장 조사,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기업당 최대 3억원, 50개사 내외)
- 금융·R&D·경영지원 연계

- 특별보증(기보, 최대 50억원), 정책자금(중진공, 최대 100억원), 기술혁신개발 R&D(기정원, 최대 20억원), R&D 기획지원 프로그램,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등(검토중)
-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인재 채용, 해외 VC 대상 글로벌 IR, 홍보 콘텐츠 지원 등(검토중)

## 신청 · 접수

- 2023년 3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또는 K-유니콘 홈페이지([k-unicorn.or.kr](http://k-unicorn.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274, 1320, 136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또는 K-유니콘 홈페이지([k-unicorn.or.kr](http://k-unicorn.or.kr))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4



## Q&A

**Q** 지원조건인 투자유치 실적 인정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공고문 내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대하여 안내 나갈 예정입니다. 안내되는 투자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에서 받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 완료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기업과 스타트업이 양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폼(Platformer)로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예비)창업기업

### 지원내용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 (대·중견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 대상 협업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85개사 내외

### 신청·접수

- 2023년 1·2분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3년 사업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15, 1716, 17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Q&A

Q

스타트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요기업 별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예선-본선-결선 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협업지원금 지원합니다

## 용어 설명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창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해외시장 검증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실증 테스트 지원 등
  - 해외시장검증 :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 활용 보육 프로그램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신청·접수

- '23년 3월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후 현지 액셀러레이터 서류·발표 평가 진행

## 제출서류

-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 처리절차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40개사 내외

## 문의처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2-2039-1629, 1634, 165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사업 참여시 기업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며, 이 중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입니다.

Q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시장검증과 해외실증지원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용어 설명

**해외실증지원(PoC)** : 해외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 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1분기 중(예정)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시장분석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개발역량 및 기술고도화 계획, 비즈니스 성장전략, 기업건전성 및 핵심기술 인력구성 등 종합 평가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75개사 내외(계속 125개사, 신규 150개사 / 예산 557.3억원)
  - \* '22년 지원현황 : 346개사(계속 246개사, 신규 100개사 / 최대 2억원 지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1~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대·중견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범위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 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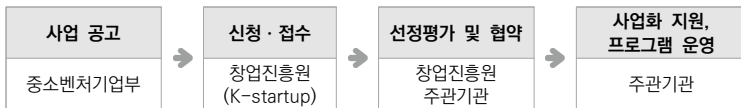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1분기 중(예정)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시장분석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개발역량 및 기술고도화 계획, 수요기업 대응 및 사업성장전략, 기업건전성 및 핵심기술 인력구성 등 종합 평가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 20개사 내외(예산 45.8억원)

## 문의처

---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0~1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비대면·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5억원)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인증, 기술평가 등)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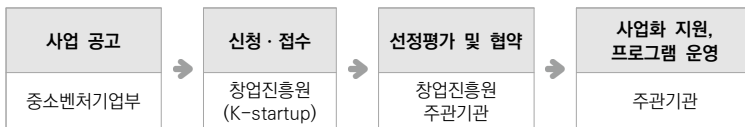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종합 평가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74개사 내외(예산 410.7억원)
  - \* '22년 지원현황 :300개사(최대 1.5억원 지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5~6, 169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보유인프라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19~22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포스트팁스 (POST-TIPS)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 고용, 특허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 (특화프로그램) 창업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솔루션 라이선스, 클라우드 크레딧 등 서비스 지원, 비즈니스 트렌드 및 현지화·수익화 전략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연계 등 (매칭 글로벌 기업별 상이)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현황 : ('19년) 구글플레이 → ('20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AWS, 다쏘시스템 → ('21년, '22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3월(예정)
-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사업화 자금 및 서비스 지원(8개월 내외)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 200개사 내외(예산 405억원)
  - \* '22년 지원현황 : 창업기업 200개사 선정·지원 중

## 문의처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20, 1723, 1726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 활성화,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

### 지원대상

- 기술기반의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부터 도약기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까지 생애 전주기 창업기업 지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 제공
- \* 창업중심대학 현황('22.12월 기준) : 총 6개
- 수도권(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호서대학교)

## 신청·접수

- 지원규모 : (예비)창업기업 750개사 내외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 선정평가 : 2단계(서류평가 → 발표평가) 평가 진행 예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952, 7646
- 창업진흥원(청년창업실) : 044-410-1811~1819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Q&A

Q

창업중심대학 소속의 대학생, 교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부터 스케일업이 필요한 도약기업까지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Q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일 경우 희망하는 창업중심대학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22.12월 기준) 창업중심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창업중심대학은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6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호서대학교)으로 운영중이며, '23년에는 창업중심대학 신규(3개) 선정을 통해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BM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 2인 이상 팀 단위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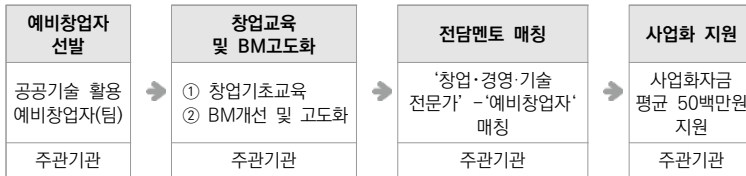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BM고도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BM고도화)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VC 컨설팅 연계지원, 사업계획 기반 BM개선
  - (교육·멘토 지원) 공공기술 활용에 중점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기초교육, 기술 전담멘토 제도 등 운영

### 〈 주요 사업절차 〉



##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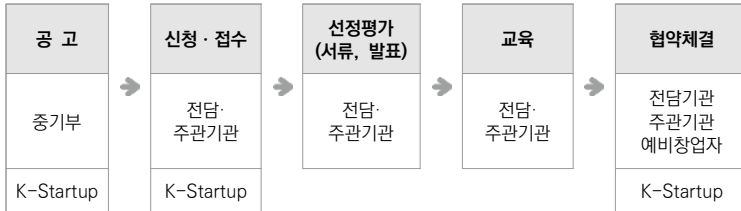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활용방안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30명 내외(19.65억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청년창업실) : 044-410-1814, 1816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참조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생애최초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기술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 현재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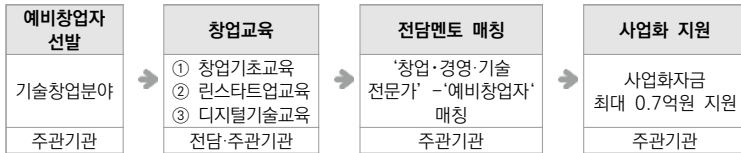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기업이 정신, BM 구체화 등 창업기초부터 린스타트업, 디지털 기술교육 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절차 〉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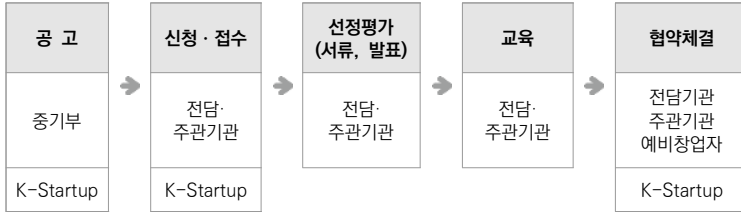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술·창업아이템과 협동·융합방안 등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120명 내외(78.6억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청년창업실) : 044-410-1814, 1816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명의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팀장(대표자)으로 한 사내벤처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 그 외 지원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 (성장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제공

## 신청·접수

- 2023년 3월, 8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68, 176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사내벤처팀(예비창업팀)은 언제 분사해야 하나요?

A

사내벤처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어 설명

**운영기업** :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지원인력 및 재원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고 분사창업기업과 협력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 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 신청·접수

- '23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c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92, 189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61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http://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angwon">ccei.creativekorea.or.kr/gangwon</a>	세종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sejong">ccei.creativekorea.or.kr/sejong</a>
경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gi">ccei.creativekorea.or.kr/gyeonggi</a>	울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ulsan">ccei.creativekorea.or.kr/ulsan</a>
경남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a>	인천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incheon">ccei.creativekorea.or.kr/incheon</a>
경북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a>	전남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jeonnam">ccei.creativekorea.or.kr/jeonnam</a>
광주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wangju">ccei.creativekorea.or.kr/gwangju</a>	전북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jeonbuk">ccei.creativekorea.or.kr/jeonbuk</a>
대구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daegu">ccei.creativekorea.or.kr/daegu</a>	제주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jeju">ccei.creativekorea.or.kr/jeju</a>
대전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daejeon">ccei.creativekorea.or.kr/daejeon</a>	충남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chungnam">ccei.creativekorea.or.kr/chungnam</a>
부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busan">ccei.creativekorea.or.kr/busan</a>	충북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chungbuk">ccei.creativekorea.or.kr/chungbuk</a>
서울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seoul">ccei.creativekorea.or.kr/seoul</a>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개인-)협업-)로컬브랜딩 지원을 통한 로컬 육성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 개인 :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최대 3천만원)
- 협업 :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최대 7천만원)
- 로컬브랜딩(신설) :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협업을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로컬 팀 지원(최대 2.5억원)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1월 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창업 아이템 사업화



### 지원규모

- 200개사(54억원)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3, 1885, 192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Q&A

**Q** 로컬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

\* ①지역가치 ②로컬푸드 ③지역기반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 브랜드 ⑥디지털문화체험 ⑦자연친화활동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 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시장조사, 유망산업,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 제공
사업화	• 마케팅(광고,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및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킹	•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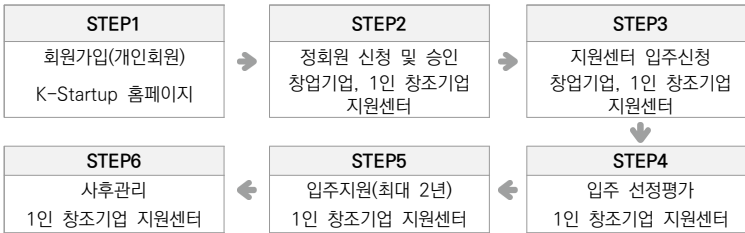
##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8개소 내외(50억원)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926, 1929, 1930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Q&A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K-스타트업 정회원 신청 시 선택하신 센터에서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모집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A** 지원센터별 모집시기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원센터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받으면 입주가 되는걸까요?

**A**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은 '1인창조기업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입주 신청은 센터별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하신 뒤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천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	경남	진주시	055-772-3610
	성북구	02-941-7257		양산시	055-380-9656
경기	성남시	031-707-5961~2		김해시	055-310-9260~1
	의정부시	031-850-5815~6		통영시	055-649-0215
	고양시	031-936-7485	충북	청주시(상당구)	043-254-8666
	안양시	031-8045-6715		청주시(서원구)	043-217-1311
인천	이천시	031-639-5896	충남	당진시(읍내동)	041-356-8748
	남동구	032-726-3883		서산시(해미면)	041-660-1327
강원	춘천시	033-244-2255	논산시(내동)	041-730-5786	
	원주시	033-769-1903~4	대전	유성구	042-939-4740
부산	금정구	051-580-9020~1	전북	익산시	063-851-7480
울산	동구	052-209-1510		전주시	063-711-2153-4
	울주군	052-277-1996		군산시	063-446-6700
대구 · 경북	달서구(계명대)	053-643-7994	광주	광주 동구	062-610-9520, 9522
	수성구	053-784-8261	전남	전남 목포시	061-280-7499
	달서구 (계명문화대)	053-589-7932	제주	서귀포시	070-7732-0202
	칠곡군	054-973-9605			
	경산시	053-856-3840			



## 판교 창업존 운영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7년이내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선정 후 입주전 채무변제완료 증빙시 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 입주 이력 또는 입주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보육공간 제공 :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및 규모별 회의실, 행사 공간 등
  - \* 보육공간 위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층~8층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구분	주요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지원 : 통·번역, 3D 제작보육실 및 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분	주요내용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 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2G~4G)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 내·외부 환경 이해도, 창업자 및 직원 역량 보유, 사업 아이템 기술성, 비즈니스 모델 분석, 시장성 등
- (발표평가) 창업자 역량 및 의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925, 1928
- 판교창업존 : 070-4164-8950, 8936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Q&A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전용면적 3.3㎡당 평균 50,000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사용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 주된 업종이 유희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부가세 별도) 이내 바우처 지급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평가선정
  -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비스 활용 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최종 선정
- 모집시기
  - '23년 3월 중 모집공고 예정

## 문의처

- 전화상담(바우처 콜센터) : 1670-1357
- 창업진흥원(재도전창업실) : 044-410-1987, 1984, 1983, 1990
- 홈페이지(사업신청 등)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 Q&A

**Q** 동일 대표자가 2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 대표자가 복수 운영하는 사업자 중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선정이 되면 바우처 플랫폼에 접속하여 결제수단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발급받은 후 플랫폼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공급기업에 거래상담 등을 진행하고, 공급기업에서 거래를 수락하면 수요기업이 최종 결제 완료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30%) 및 부가세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선정된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휴·폐업 등으로 최초 선정 당시 기업의 상태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바우처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공급기업** :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요기업**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 또는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





## 청소년 비즈쿨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 교사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3월(예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1~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용어 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 혁신창업스쿨

(예비)창업자 대상 기술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창업 기본교육, 맞춤형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시장검증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

### 지원대상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2,100명 내외)

### 지원내용

- (혁신창업스쿨)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역량 함양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을 위한 온라인 창업 기초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교육
- (딥테크스쿨)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창업 교육
  - 미래기술과 인문학 교육, 토론식 수업 및 팀빌딩, 가상시스템을 통한 모의 경험·체험 등을 통해 미래 첨단기술 창업교육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창업스쿨 지원사업 내 “딥테크스쿨” 트랙을 신설하여 미래 첨단기술, 토론식 수업을 통해 미래기술 창업자 양성 추진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55, 1958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Q&A

**Q** 기존에 창업한 경우에도 사업참여가 가능한가요?

**A** 기창업자의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이종업종 창업예정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 기존에 창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일 경우

**Q** 혁신창업스쿨 수강 시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정부 지원사업으로 교육은 무료입니다.

---

**Q** 혁신창업스쿨 교육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있나요?

**A**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을 위해 4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Q** 혁신창업스쿨 교육후 연계 지원이나 후속지원이 있나요?

**A** IR 피칭교육, 예비창업패키지 연계지원(2단계 교육 수료시 차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서류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용어 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 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 메이커 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등 혁신 제조창업 촉진

### 지원대상

- 민간 공공기관 및 단체 등 법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메이커 스페이스 컨소시엄형(3개 이상 기관) 5팀 내외 ('23년 신규), 기존 구축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163개('23년 기준) 내외 운영 지원
- 지원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공간 및 메이커 문화확산, 제조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1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메이커 스페이스 컨소시엄형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절차 : ①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② 대면평가
- 신청기간 : 2023년 3월 초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사업추진역량, 공간 입지 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860, 1861, 1862, 186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Q&A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Q** 컨소시엄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엇인가요?

**A** 컨소시엄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이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컨소시엄(주관 1개+참여 2개 이상)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및 컨설팅, 창업사업화 지원 등 고도화된 제조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제조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 용어 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 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엔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 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 지원대상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입상 제외)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예산) 21.15억원, (규모) 20개팀 내외

### 지원내용

- 상금 (총 15.3억원, 20팀(최대 3억원))
-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20점)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 신청·접수

- 1~3월 중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통합 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접수
- 부처별 예선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1, 171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초과 창업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7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전시 준비 사전 교육 : 전시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선배기업, 마케터 등과 전시 준비 노하우 전수 등
  - 전시회 별 피칭 고도화 : 피칭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서면 피칭 자료 검토, 예선 제출용 영상 촬영 및 리허설 진행 등

-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 현지 투자자, 바이어와의 매칭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 등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 해외전시회 변경

▶ (2022) SWITCH, SLUSH, CES → (2023) SWITCH, VIVA TECHNOLOGY, CES

###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http://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항목은 지원 전시회 별로 상이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9.171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Q&A

**Q**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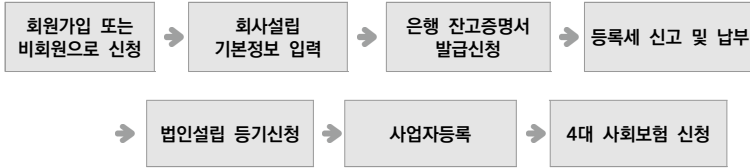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처리절차



##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창업ICT공공구매실) : 044-410-1653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참조([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



## Q&A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 창업지원포털(K-Startup)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대국민)
  -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 ⑤ 재창업(재창업자) 등 사용자 정보 기반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 네트워크, R&D 정보 등)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제공



## 신청·접수

---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 문의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ICT공공구매실) : 044-410-1653~9, 1664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서류)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
-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 간소화

- (신청 및 처리기간) 상시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내 처리

##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창업ICT공공구매실) : 044-410-1771~82
-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http://www.cert.k-startup.go.kr)) 참조



## Q&A

**Q**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순 없나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 제9부

---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전경련경영자문단 무료경영자문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 206명과 법무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전경련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스케일 업을 위해 무료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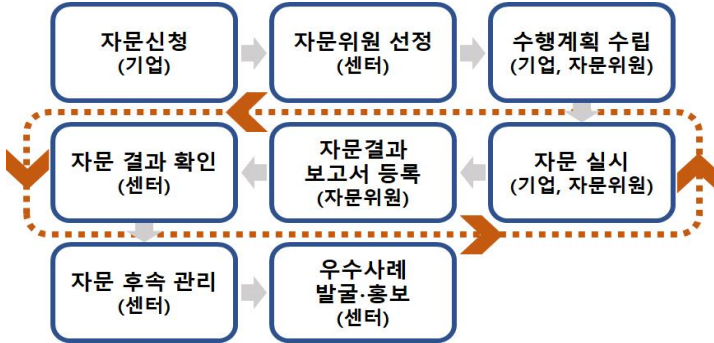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일반자문(단기)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관리, 마케팅, 기술생산품질, 해외진출, 자금·재무, 인사노무 등 희망 자문분야에 대해 원포인트 현장자문 제공
- 비즈니스 멘토링(중장기)
  - 전경련 경영자문위원이 6개월간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중장기 무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일반자문 진행 중 종합적인 경영자문 희망 시 센터에 서류 요청 및 제출 후 진행

##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목표 달성시까지 지속 자문(장기·밀착·공동 자문)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 Q&A

**Q**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전경련경영자문단 경영자문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배정된 자문 위원이 기업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목표 수립 후 진행됩니다.

---

**Q** 목표 달성까지 지속 자문이라 되어 있는데, 횟수 제한이 없는건가요?

**A** 네, 저희 자문은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무료로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경련경영자문단은 대기업 퇴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

**Q** 자문은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A** 자문 내용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 대표 또는 임원 이상 의사결정권자가 자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경영닥터제

대·중견기업, 협력업체, 경영자문단 3자 협력 자문으로 대·중견기업 1·2차 협력업체(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중심 자문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 대·중견기업의 협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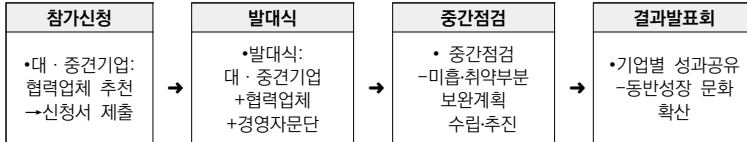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실천

협력업체	전경련 경영자문단	대·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신청→대·중견기업</li> <li>-경영애로 및 경영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매칭→협력업체, 대·중견기업 결과 안내</li> <li>-담당자문위원 선정(매칭)</li> <li>-자문프로그램 기획·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추천→센터</li> <li>-참여업체 추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협조</li> <li>-경영자문 CEO 참여</li> <li>-자문이행 전담TFT 설치·운영(권장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제공(6개월 이내)</li> <li>-종합 경영진단, 강점·약점 분석</li> <li>-마케팅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li> <li>-협력업체에 무료경영자문, 경영 노하우 전수</li> <li>-맞춤형 교육 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점검</li> <li>-협력업체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협력업체 애로 파악 지원</li> <li>-협력업체 경영닥터제 성과 분석·취약부분 보완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결과 성과분석</li> <li>-실행내용에 대한 성과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관리</li> <li>-결과발표회, 비즈니스멘토링 등 사후 지원·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관리</li> <li>-협력업체에 대한 지속 관리</li> </ul>

## 신청·접수

- 센터 공문발송(대·중견기업) 및 홈페이지 공지 → 대·중견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여기업 확정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3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http://www.fkilsc.or.kr)



## 중소기업 경영진단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연구개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경영역량을 분석하고 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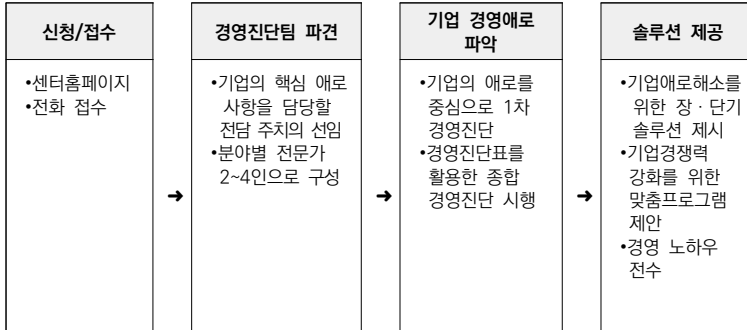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 지원내용

- 경영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종합 경영진단 시행
  - 진행기간 : 1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 가능)
  - 장 소 : 현장방문
  - 진단위원 : 전경련 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4인으로 구성된 경영진단팀
  - 진단대상 : 중소기업(CEO, 부문별 임원, 부서 등)
  - 진단내용 : 기업을 방문하여 각 분야별 현장진단 실시
  - 진단비용 : 투입 인력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유·무료 협의

##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화(02-3153-7953)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3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 맞춤형 교육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개척, 법무 등 기업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대상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 CEO 및 임직원
  - 교육접수 : 연중수시
  - 교육장소 : 신청기업에서 준비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커리큘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개척, 창업, 법무, 기타 8개 분야별 86개

### 신청·접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or.kr](http://www.fkil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http://www.fkilsc.or.kr)



## Q&A

**Q** 교육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 CEO 및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주제에 맞춰 자문위원 강사를 매칭 및 파견해 드립니다.

**Q** 교육커리큘럼에 희망하는 교육이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희망하는 교육이 커리큘럼에 없는 경우 센터에 직접 연락하시어 희망하는 교육을 말씀해주시면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 드립니다.



## 자문 우수기업 선정

한 해동안 전경련 경영자문단을 통해 자문을 받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와 좋은 자문사례를 창출하여 본보기가 된 중소기업을 우수자문기업으로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대상) 전경련경영자문단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우수자문기업 상패 수여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명의 상패 수여
- 전경련경영자문단 자문 우수사례집 발간
  - 자문우수기업의 성과가 담긴 우수사례집을 통해 사례 공유,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자문 참여 유도 및 자문 선순환 확산

### 신청·접수

- 전경련경영자문단의 추천을 받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fkils@gmail.com)

● 선정과정



| 문의처 | \_\_\_\_\_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Q&A**

**Q**

자문을 받아야만 우수사례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자문위원 추천이 필수요건이므로, 전경련 경영자문단을 통해 자문을 받아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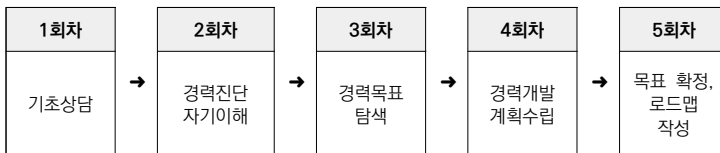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과 함께 재무·심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중인 만 45세 이상의 재직자
  - \*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 제외 기업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커리어 목표에 맞춘 경력 개발 계획 수립
  - 진행 : 총 10시간, 1회당 2시간의 1:1 상담 총 5회
  - 분야 : 이직, 전직, 직장 내 경력개발, 창업, 재무, 심리 상담 등
  - 비용 : 무료
  - 기타 : 5회차의 상담 종료 후, 경력개발 로드맵 제공



## 신청·접수



##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5 or 7959



## 중장년내일센터

40세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대상으로 전직스쿨, 생애설계, 재도약프로그램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알선·매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 지원내용

- 전직스쿨프로그램
  - 내용 : 중장년 퇴직예정자(2개월 이내 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전직계획 수립 및 구직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 : 기업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나눠서 운영
    - \*기업과정 : 기업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단위별로 운영
    - \*일반과정 : 10인 이하의 소규모 퇴직으로 기업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퇴직예정자를 위한 과정 운영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내용 : 40대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의 경력·진로설계를 위해 경력점검·미래계획 수립 등 장년에 진입하는 시점에 생애주기의 이해와 생애경력 점검을 통해 인생 후반부 일(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구성 : 구직자과정과 재직자과정으로 나뉘서 운영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 재도약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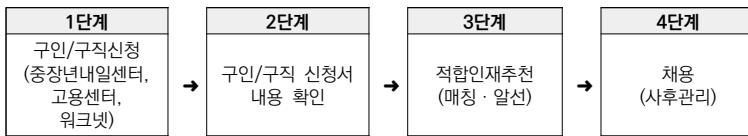
- 내용 :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퇴직 후 변화관리, 역량진단, 눈높이 조정, 취업 역량 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재취업 및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인생 2막을 지원

- 구성 : 구직자 과정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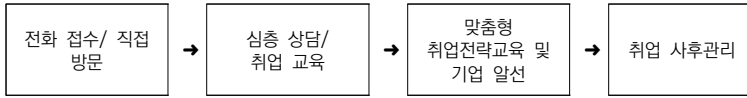
● 취업 알선

- 내용 : 중장년 채용 희망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맞춤 일자리를 알선



**신청·접수**

- 중장년내일센터(02-3153-7962~3)에 전화 신청·접수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문의처

- 중장년내일센터 : 02-3153-7962~3

## Q&A

**Q** 40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사업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Q** 비용은 무료인가요?

**A** 네, 저희 센터에서 제공되는 중장년 교육 및 취업 알선은 모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제10부



# 기타





##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기존 관광 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형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재)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이하(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이하(공고일 기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 ▶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일부제한)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는 응모불가



##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 단계별 3천만원~1억원 내외(자부담 매칭/ 확정금액은 공고안 확인)
    - \* 인건비, 임차료, 시제품개발을 위한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창업기업 성장지원
    - \* 기업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진단·담임·전문 교육·컨설팅 제공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 협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데모데이, 오픈이노베이션,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http://www.tour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 사업의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사업의 지속가능성, 관광산업 연광성, 리더십 등 (공고안 확인)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 처리절차

- 공모전 공고(2-3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발표·현장평가 등/3~4월)  
→ 지원사업 협약체결(5월) → 기업별 사업화 및 성장지원(5월~11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66)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biz.or.kr](http://www.tourbiz.or.kr))



##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관광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민간 투자유치 등을 통해 관광기업의 단기간 고속성장을 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

- 초기 관광 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 세부기준은 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제공
- 한국관광공사 보유 관광산업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지식인프라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 우수 참여기업 대상 투자 유치 지원 등
  - 세부사항 모집 공모문 참조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투어비즈 홈페이지(tourbiz.or.kr)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3~4월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심사내용 : 기업역량, 시장 적정성, 사업아이템 경쟁력, 관광산업 관련성 등 (심사 기준은 액셀러레이터별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3)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

### 용어 설명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전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관광 분야 중소기업 및 융·복합 관광기업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관광 혁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 바우처 제공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관광 혁신 바우처 서비스
관광 특화 혁신 지원	관광 혁신 서비스 개발	<b>관광 상품/서비스 기획</b> 관광 부문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개발, 기존 비즈니스 모델 진단, FIT 여행 상품 개발 등
		<b>관광 산업 특화 리서치</b>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관점에서의 관광산업 동향 및 동종 업계 관련 시장 조사, 빅데이터기반 여행자 동향조사(소비지출, 이동동선, 상권분석) 등
	관광 혁신 서비스 구현	<b>스마트 기반기술 도입</b> 실감형(VR/AR) 콘텐츠 제작, AICBM 기술 구현, 챗봇 도입, 여행 상품 큐레이션 기능 개발 등

분야	프로그램	프로그램관광 혁신 바꾸어 서비스
		<b>UX 고도화</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홈페이지 UI/UX고도화, 모바일/O2O 플랫폼 구축,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및 솔루션 개발 등
컨설팅 및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	<b>경영 컨설팅</b> 인사조직, 경영체계, 구조개선 등의 경영 개선 진단, 사업전략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자문 등
		<b>기타 전문 서비스</b> 세무, 재무, 노무, 법률 관련 전문 자문 서비스
	디지털 역량 강화	<b>디지털 역량 진단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b> 기업 디지털 역량 및 정보기술환경 분석과 진단, 개선 APP의 QA Test, MICE 온라인 컨설팅 등
		<b>서버 및 개발환경 구축</b>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IaaS) 구축, 관광기업 SW 개발을 위한 ICT 환경 구축, 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b>ICT 솔루션 도입</b> ERP/CRM/Analytics 등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SaaS-based ICT 솔루션 도입 등	
마케팅	홍보/마케팅/광고	<b>마케팅 전략 수립</b> 마케팅 콘텐츠 전략, 채널 믹스 전략, SEO마케팅 전략 디지털/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전략 수립, SNS마케팅 방안 수립 등
		<b>홍보 지원</b> 광고 콘텐츠제작, 국내외 마케팅/홍보/광고 집행, 유튜브 영상 제작, 기업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라이브 커머스 활용 등
	디자인 개발	<b>브랜딩</b> 브랜딩, 네이밍, 브랜드 콘셉트 도출, 기업 맞춤형 BI/CI 개발 및 고도화 등
		<b>디자인/콘텐츠 제작</b> 상품디자인, 오프라인 홍보물, 모션그래픽 영상, App/Web UI SNS콘텐츠 제작, 패키지 디자인, 3D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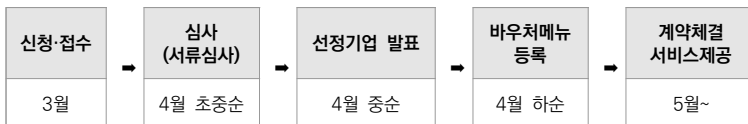
- ▶ (서비스메뉴판 개선) 업계의 디지털전환 수요를 감안, 관련 서비스 확대 및 마케팅 부문 서비스 축소(예정)
- ▶ (네트워킹 촉진) 팬데믹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기업매칭, 성과공유 등 네트워킹 강화
- ▶ (신기술 도입 지원 강화) 전통 관광부문에 접목 가능한 타 분야의 신기술 보유 제공 기업 풀 확대

## 신청·접수

- 공모기간 \*잠정 일정이며 변동 가능
  - (수혜기업) 2023년 4월
  - (제공기업) 2023년 3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운영시스템을 통한 접수
    - 홈페이지 : <http://tourvoucher.or.kr>
- 공모일정/방법 \*잠정 일정이며 변동 가능
  - (수혜기업) ▶ 서류심사(공통) ▶ 발표심사(중형·대형만 해당) ▶ 최종선정
    - (평가방법) 혁신가능성, 바우처활용계획 등, 총점 상위순 선정 (상대평가)
    - (평가위원) 관광, IT, 창업, 투자 부문 외부전문가



- (제공기업) ▶ 서류심사 ▶ 최종선정/서비스 등록
  - (평가방법) 서비스 품질 적정성, 안정성 등 총점 60점 이상시 선정(절대평가)
  - (평가위원) 조직·인사/재무회계 부문 외부전문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성과평가
  - (수혜기업) 바우처서비스 종료 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검수를 통해 서면평가
  - (제공기업) 서비스별 평가결과를 매년 집계,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으로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 도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4)
- 관광 혁신바우처지원 홈페이지([www.tourvoucher.or.kr](http://www.tourvoucher.or.kr))





##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혁신 성장이 가능한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멘토링, 판로개척,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최근 3개년 중 1개년 ① 연간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 ②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③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④ 최근 3개년 이내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등 조건 중 1개 이상 달성한 관광분야 중소기업
  -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 (사전 역량강화) 멘토링 및 교육 등 해외 진출 전략 수립
  - (사업화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판로개척
  - (후속 지원) 성과평가를 통한 맞춤형 후속지원(홍보마케팅, 투자유치 등)
  -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연계) 싱가포르(동남아) 현지화 지원

## 신청·접수

---

- 신청기간/신청방법
  - 3월~4월 예정 / 온라인 접수(엑셀러레이터별 개별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방법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영문)
- 심사내용 : 창업기업의 우수성 / 사업성 / 관광산업 연관성 / 현지 진출 적합성 등

## 문의처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02-792-9552)
- 관광기업지원 홈페이지([www.tourbiz.or.kr](http://www.tourbiz.or.kr))



##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 지원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 지원상담실)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전문분야 상담
상담 분야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원사업 안내</li> <li>·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li> <li>· 창업 관련 법규 및 관광 관련 법규 (여행업, 숙박업 등)</li> <li>· 일반 애로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검토(아이디어)</li> <li>· 상품/서비스 기획</li> <li>· 투자유치 지원</li> <li>· 유통/판로</li> <li>· 해외진출</li> <li>· 홍보마케팅 지원</li> <li>· 디지털 전환(IT)</li> <li>- 플랫폼, 기술 등</li> <li>· 지역특화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특허</li> <li>· 인사/노무</li> <li>· 세무/회계</li> <li>· 제도 개선 제안 (규제샌드박스)</li> <li>· 해외마케팅</li> </ul>

## 처리절차

단 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 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 용	애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애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 지역 관광센터 연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온라인
  - 전화 : 02-729-9454/9494(평일 09:00~18:00)
  - 온라인 : [www.tourbiz.or.kr](http://www.tourbiz.or.kr) 내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내방상담 및 심화상담 시 미리 일정 협의)
- 처리기간 : 단순상담 및 문의는 접수 후 1~3일 내 처리, 심화 상담은 상담 주제에 적합한 자문위원 섭외 후 일정 조율까지 약 1~2주 소요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http://www.tourbiz.or.kr))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  
(단,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지원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 휴가샵 온라인몰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 제공
    -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우대 등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우대 등
- (우수기업) 정부포상, 기업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상품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휴양소 운영 등

## 신청·접수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http://vacation.visitkorea.or.kr))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 처리절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8)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Q&A

**Q**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휴가샵 온라인몰 상품을 미리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나요?

**A** 휴가샵 온라인몰은 참여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샵에서는 여기어때, 제주도닷컴 등 40여개 제휴사 및 10만 여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휴가샵 대표상품 카탈로그'를 클릭하시면 휴가샵 입점 상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A** 2023년 근로자 휴가지우너사업 참여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3년도 12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산하여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가 참여기업 계좌로 일괄 환불되며, 참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50%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

**Q** 사업 참여 도중 취소를 원하거나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여행적립금이 환불 되나요?

**A** 기업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kto-cust.benepia.co.kr)에서 근로자의 중도참여 취소신청을 하면 해당 근로자의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정지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취소 시점으로부터 익월 초에 환불 처리됩니다.

---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전국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지역 1인·중소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 지원내용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저작권 전문가가 저작권 분쟁, 해외 진출 등 저작권 관련 문제해결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
- (저작권 교육) 저작권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저작권 일반상담)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등 일반상담 제공
-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저작권 등록, SW 임치, 저작권 분쟁 조정 수수료, 권리구제를 위한 변호사 검토보고서 등을 지원
  - \* 지역센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 지원 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 \*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센터 선택 신청

## 지원규모

- 전국 15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3.3억원)
  - \* 지역센터 현황: 서울(서울테크노파크),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산업지원팀(본부) : 055) 792-0331
- 2023년 15개 지역센터 운영 지역





##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 영리기업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7년 이상 중소기업(법인)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 개인사업자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 세부 제한내용은 사업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신청·접수

공고: 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cca.kr) 및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분야)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산업분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산업 분야 중 선택
    - \* (예시분야) 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공연, 미술공예, 문화재, 전통문화, 대중문화예술 등
- (사회적 가치창출분야) 문화산업분야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되, ①문화산업안전, ②문화소외계층 품목 신청
  - ※ 본 사업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15p 내외) 접수 후 서면평가 통과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지원대상 선정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총 53.4억원, 18개 과제, 과제당 평균 2.97억원
  - \* '22년 지원현황 : 과제수 17개, 지원금 49.3억원, 과제당 평균 2.9억원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팀 : 042-330-6643, 6647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문화콘텐츠 유통사와 유통계약(선판매계약)을 체결 후 문화상품을 제작 중인 국내 콘텐츠기업
  - 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10개

〈선판매계약 예시〉

방송/애니	영화	게임	공연(뮤지컬)
방영계약	배급계약	퍼블리싱계약	대관&티켓판매계약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 또는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15억원 내외 (영화, 방송 장르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 보증신청금액 요건별 차등적용

보증신청금액 요건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b>30%이상</b> 자금조달 확정 (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b>50%이상</b> 자금조달 확정 (본건 대출 제외)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콘텐츠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2가지 방식
  - 방법①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assess.kocca.kr) 신청
  - 방법②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상담을 통한 보증기관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방법① : 매월 1일~10일
  - 방법② : 수시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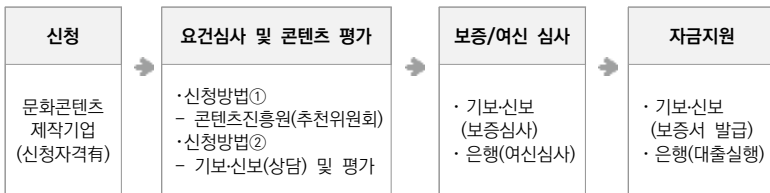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 제출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 완성보증 사업계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유통계약(선판매계약서) 사본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포함)
- 총제작비 예산서
-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200억원 내외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7)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042-480-1322)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710-4562, 4567)  
글로벌게임허브팀(031-725-6802)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061-900-6267)



## Q&A

**Q** 자금조달확정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Q**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완성 보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완성 보증을 포함하여 보증한도를 계산합니다.

**Q** 문화산업전문회사도 완성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 회사로 등록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목적회사도 금융회사가 완성 보증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면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선판매계약** : 제작기업과 유통업체(배급사, 방송국, 퍼블리셔, 티켓판매사, 판권사업자 등)간 제작 완성 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 (특성에 따라 명칭은 달리 운용)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콘텐츠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스포츠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 스포츠기업 대상 예비초기창업지원/도약센터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육 사업화 지원 및 투자유치 특화 보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 3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도약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3년 미만 기업 중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
- (사회적기업전담센터)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 ~ 7년 미만 사회적기업
- (재창업지원센터) 폐업 경험 보유한 예비 ~ 3년 미만 재창업자
- (액셀러레이팅 지원)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예비 창업자 제외)

### 지원내용

- (예비초기/창업도약/사회적기업/재창업) 센터별 보육기업 선발 통해 창업이론 교육, 창업보육 멘토링, 컨설팅, 마케팅, 데모데이 등 수준별 맞춤 창업보육(10개월), 사업화자금(45~50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팅 지원) 투자유치·연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직접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투자유치 역량강화, 멘토링, 컨설팅,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통해 스포츠융복합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10개월), 사업화자금(45백만원 내외) 지원

\* (액셀러레이터) 보조금의 20% 직접 투자 필수, (선정기업) 지원금의 10% 자부담 필수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창업 및 재창업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기업 수 축소(190개 → 150개) 및 사업화 자금 확대(36백만원 → 45~50백만원)
- ▶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의 수료기업 대상 후속지원 시행(스포츠기업 투자매칭 상담회 개최 등), 투자유치 우수기업에 대한 기획기사 보도지원(신규)

## 신청·접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2~3월 예정

## 처리절차

- 스포츠 예비 창업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등 220개사  
\* '23년 예산 13,508백만원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2), 기업금융지원팀(02-410-1565)



##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성장동력확보 및 사업기반지원, 혁신지원 과제)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으로의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 아래 해당 중소기업
  -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재무제표 기준(2021년)을 말함
  -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
  -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30억 이하

### 제외대상

- ▶ 부채비율 500%이상인 기업/전액자본잠식/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 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등
- ▶ 스포츠분야 업력 7년이상이며,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기준, 2~3개 과제 이내 자율선택, 기업당 최대 1~1.5억원 지원
  -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과제 프로그램	지원비율	비고									
성장동력확보 (필수)	제품경쟁력 강화	총 사업비의 7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1~1.5억원</li> </ul> <table border="1"> <tr> <th>매출규모</th> <th>보조금</th> <th>자부담</th> </tr> <tr> <td>30~80억 원</td> <td>150백만원</td> <td>25%(50백만원)</td> </tr> <tr> <td>30억원미만</td> <td>100백만원</td> <td>20%(25백만원)</td> </tr> </table>	매출규모	보조금	자부담	30~80억 원	150백만원	25%(50백만원)	30억원미만	100백만원	20%(25백만원)
	매출규모			보조금	자부담							
	30~80억 원			150백만원	25%(50백만원)							
	30억원미만			100백만원	20%(25백만원)							
	마케팅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수립												
사업기반지원 (일반)	IPO/자금조달 컨설팅	(기업 자부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지원기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 당 과제 수는 3개 이내여야 함</li> <li>'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배분</li> <li>'혁신성장지원' 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배분 시 계량평가 가점 적용 (단, '혁신지원' 분야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과제는 추후 타 과제로 변경 불가)</li> </ul>									
	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스마트서비스											
혁신성장지원 (일반)	지식재산권 인증취득	ESG경영	DX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참가											

## ●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지원분야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성장동력확보 (필수)	①제품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제품 개발 및 기획, 기존제품 개선 컨설팅</li> <li>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기술분석, 시장분석 등)</li> <li>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li> <li>※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인건비 지원 가능(총 사업비의 50%이내)</li> </ul>
	②마케팅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컨설팅 등</li> <li>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li> <li>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li> </ul>
	③경영개선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li> <li>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li> <li>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설계 / 스마트서비스 관련 컨설팅 등</li> </ul>
	④IPO / 자금조달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평가, 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li> <li>기업 성장지원(당해연도에 한함)</li> </ul>
사업기반지원 (일반)	⑤제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개발/개선용 원부자재 구입 등</li> </ul>
	⑥국내·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표정지, 전자 종이 카달로그 등</li> <li>-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제품 홍보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li> <li>• 크라우드펀딩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li> <li>• 광고송출(단, 광고송출비는 2천만원 한도)</li> <li>• 국내 또는 해외(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스토어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포함) 입점 수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 프로세스, 해외 지사 및 법인설립 지원 포함</li> </ul> </li> <li>* 단, 온라인쇼핑몰(쿠팡 등)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li> </ul>
	⑦스마트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영업환경, 재택근무, 클라우드 업무환경,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도입 지원</li> </ul>
	⑧지식재산권 · 인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IP)* 및 인증 취득, 시험 및 테스트비용 등</li> <li>* 산업재산권(발명·특허·상표·디자인 등) 및 저작권</li> </ul>
	⑨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인사제도·노무·법무·성과평가 보상 등 각종 전문가 자문</li> </ul>
	⑩해외전시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스임차비·장치비·편도운송비(전액) 해외파트너 발굴비(100만원 이내), 기업별통역인력(100만원 이내), 온라인전시회 콘텐츠 제작비(동영상·VR콘텐츠·e카달로그 등 총 500만원 이내)</li> <li>- 지원기업이 참가희망 온·오프라인 전시회 선택하여 자율참가</li> <li>- 지원기업 최종선정 이후 참가한 전시회부터 지원 가능</li> </ul>
혁신성장 지원 (일반)	⑪ESG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관련 인증취득·시험비 지원, 친환경기술 및 설비 구축 지원, 친환경 제품개발 등</li> </ul>
	⑫DX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인증(시험)* 비용, 웹/앱개발, 디지털시스템 구축/개선 등</li> <li>* 국제공인인증, SW, 정보통신시험 인증, 신뢰성 시험, NEP-NET 인증 등 디지털 기술관련 인증(시험) 비용</li> </ul>

## 처리절차

- 스포츠중소기업 65개사 내외( '23년 예산 8,019백만원)
  -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3, 1545)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해외진출 및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 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비중 10%이상, 3년 평균 아래 매출액을 달성한 중소 스포츠기업
  - (용품제조업)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달성
  - (서비스업, 시설업)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달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 지사나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영업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 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사업분야	지원내용
사업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지식재산권(IP) 및 친환경인증 취득 관리, 영업 마케팅 전략 및 실행, 원가생산성 및 품질 향상, 신규사업 개발 전략,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경영지원 등 국내외 컨설팅 지원</li> </ul> </li> </ul>
해외판로 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신시장 경영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 지원</li> <li>바이어 발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li> </ul> </li> </ul>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브랜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홍보·광고 영상 제작, 해외 매체 홍보활동 지원</li> <li>해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등</li> </ul> </li> </ul>

● 연차별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년 지원)

구분	지원사업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 지원(필수)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총 사업비의 75~80% (자부담 비율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기업은 연도별 필수 사업 포함 2개 사업분야 이상, 최소 2.5억원 이상 지원 신청해야 함</li> <li>기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2.8억원</li> <li>* 한 사업 분야에 최대 2억원 까지 가능</li> </ul>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에 따라 자부담율 차등적용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필수) 해외마케팅 지원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출 규모</th> <th>영업 이익률</th> <th>자부담율</th> <th>자부담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0억 이상</td> <td>3.8% ↑</td> <td>25%</td> <td>2.8억기준 94,00만원</td> </tr> <tr> <td>3.8% ↓</td> <td>20%</td> <td>2.8억기준 7,000만원</td> </tr> </tbody> </table>	매출 규모	영업 이익률	자부담율	자부담액	200억 이상	3.8% ↑	25%	2.8억기준 94,00만원	3.8% ↓	20%	2.8억기준 7,000만원
매출 규모	영업 이익률	자부담율	자부담액											
200억 이상	3.8% ↑	25%	2.8억기준 94,00만원											
	3.8% ↓	20%	2.8억기준 7,000만원											
			연매출 200억이상 & 평균영업이익률* 3.8%이상 기업 25% 자부담 적용(3년간) * 스포츠산업평균영업이익률											

## 처리절차

- 스포츠 중소기업 30개사 ( '23년 예산 8,808백만원)
  - 지원기간 3년으로 10개사 이내 선정 예정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02-410-1544)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 IP제품혁신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신제품기획, 제품고도화, 제조-서비스 융합 등 제품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식 재산 사업화 통합 솔루션 지원

###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 중소기업
  - 협업기관별 추가 지원자격은 별도 공고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내용

구분	지원규모 (최대 비용/기간)	지원내용
신제품기획	11천만원 / 7개월 (민관 협업과제)	가.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나. 적용 신제품기획 및 검증 + 협업 후속지원 다. [지식재산 융합, 제조-서비스 융합, 플랫폼 개선 포함]
문제해결	7천만원 / 7개월 (단독과제)	라. IP기반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 솔루션 제공 및 검증 + 협업 후속지원
제품고도화	8천만원 / 5개월 (민관 협업과제) 4천만원 / 3개월 (단독과제)	마. IP기반 제품·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BM, 브랜드 등 지식재산 융합 고도화 및 검증 + 협업 후속지원
크라우드펀딩(가칭)	5백만원/5개월	바. 既 수혜기업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크라우 드펀딩 진입 컨설팅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지식재산 융합 지원, 제조-서비스 융합, 플랫폼 개선 등 지원내용 및 분야 확대
- ▶ 클라우드 펀딩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70개 기업 이내 (기업분담금 기업매출에 따라 10~40%)

### 신청·접수

- 공모기간 중 해당 사업신청관리시스템으로 신청(1~4월)
  - (협업과제) 협업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신청관리시스템 접수
  - (단독과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접수([www.kipa.org](http://www.kipa.org))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식재산 활용 현황, 제품 경쟁력, 기업 경쟁력, 사업 경쟁력 등
  - \* 지원신청서, IP활용계획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등 제출

### 문의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 042-481-359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팀 : 02-3459-2798, 2937
- 홈페이지 : [www.kipa.org](http://www.kipa.org)



## Q&A

**Q**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제품화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협업과제와 단독과제에 중복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협업과제 지원 탈락기업이 단독과제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협업과제, 단독과제 순차공고) 단, 중복지원을 위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IP활용계획서** : 특허적용제품 정보, 핵심 니즈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로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기술, 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舊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수출(예정 포함)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가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포함)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22년 수출 예정\*\* 기업
  -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2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 동 사업 졸업기업 중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개발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등),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전문 컨설턴트 상담 및 기업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제공

## 신청·접수

-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 (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량평가(IP스펙트럼) 40점 + 정성평가 60점
  - \* 정량평가(IP스펙트럼) : 연구역량, 지재권역량, 기업역량, 글로벌 역량에 대한 정량 평가
  -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역량 및 파급효과, 경영자의 의지 및 사업 비전 등을 종합평가

### 제출서류 및 지원절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 및 세부사업선정

컨설팅 수행

##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 Q&A

**Q**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

**A**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 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 협약체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 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舊국제 지적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적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 상황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개별대응 :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종인 기업
-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적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지 원 내 용	
특허	분쟁 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FTO),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 행사	사전준비	특허피침해 분석
		분쟁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특허권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상표 디자인	분쟁 대응	상표 무단 선점대응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 전략
		위조·형태 모방 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 전략
	권리 보호	해외 현지 권리화	해외 현지에서의 권리 보호 전략, 콘텐츠 지재산 보호 전략 등

\* 공동대응은 특허(분쟁방어), 상표·디자인(분쟁대응)만 지원 가능

- 기업 당 최대 1억원(지원유형별로 상이하고 기업부담 포함) 지원
  - 지원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는 경우 연 2회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 \* 연속지원 유형 : (개별대응) 소송방어 전략,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전략 (공동대응) 전 유형

#### <지원대상별 기업부담률>

구분	개별대응			공동대응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 부담률		30%	30%	50%	30%
	현금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
	현물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23년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 신청·접수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정기모집 : 매월(3월~8월 예정) 1일~21일 모집(사전대비 유형)
  - 수시모집 : 모집공고 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분쟁대응 유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선정) 심사 결과 80점 이상
  -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 관련 기술의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수출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산분쟁대응센터

- 특허 : ☎ 1600-8145, ARS 3번 / ipkoipa@koipa.re.kr
- 상표·디자인 : ☎ 1600-8145, ARS 4번 / kbrand@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 www.ip-navi.or.kr



## Q&A

**Q**

현재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출을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에서 수출예정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Q**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해외기업과의 분쟁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특허 분쟁 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분야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도 특허침해 소송대응, 공동대응 등 일부 유형은 동일 사건에 대해 연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입니다.



##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사업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상표를 모니터링하여 우리기업에 제공 및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URL) 삭제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중
  - 지원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당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 출원중이거나(출원신청서, 출원확인서 미인정)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 유효기간이 경과한 권리 등

### 지원내용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게시물 차단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대상국가 확대 :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가에서 전세계 30개 국가 이상으로 지원대상 확대

※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23년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 신청·접수

- (신청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사업 공고 확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월 / 5월 / 8월 ※ 신청기간 변동가능
- (처리기간) 3개월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규모, 위조상품 유통규모, 지재권 보유현황 등을 기반으로 종합평가(서면) 후 선정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실
  - 1600-8145, ARS 5번 global@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 Q&A

**Q** 해외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요?

**A** 아닙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더라도, 해외 지원 국가 내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외)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

### 용어 설명

**상표브로커** : 우리기업 관련 상표를 해외에서 3건 이상 다수 출원한 상표 도용 의심자



##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대학생 포함),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 창업보육매니저 등 기업보육담당자도 교육 대상자에 포함 운영

###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력으로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거점 교육센터 선정 및 지식재산 교육 운영
  - 거점 교육센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풀 구성
  - \* 각 창업보육센터 수요에 따라 ①범용센터(지식재산 개요 중심교육) ②심화센터(센터 맞춤형 심화 지식재산교육)로 구분하여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의 기술분야별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

- \* 회차당 3시간 내외로,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개요교육부터 분쟁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

##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진행
- 추진절차(안)

(1-2월)	(3-4월)	(5-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기관 협력체계구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수요 발굴 및 수요기반 교육기획, 강사 발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 교육 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과 발굴 및 공유, 개선 사항 도출 등</li></ul>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Q&A

**Q**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 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일반환경분야(청정대기, 자원순환, 물, 탄소저감, 일반환경), 에너지분야(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수소·암모니아·바이오가스의 포집·운반·공급 등에 대한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운반·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산업,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자)
- ▶ 비정상 또는 불량거래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경우
- ▶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사업 공고년도 및 직전년도)
- ▶ 동일 및 유사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등



## 지원 내용

지원구분	지원수*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76인	최대 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자금 지원</li> <li>· 창업역량 강화 교육</li> <li>· 창업아이템 검증 등 시장검증 프로그램</li> <li>· 투자유치 역량강화</li> <li>· 창업 사업화 멘토링 등</li> </ul>
초기창업기업 (3년 이내)	66개사	최대 110백만원	
성장창업기업 (7년 이내, 기투자금액 10억 이상)	10개사	최대 250백만원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성장창업기업 부문 신설 : 업력 7년 이내, 기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기업

##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K-Startup 홈페이지, 이메일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2, 670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 ☎ 032-540-2112, 2142



## Q&A

**Q**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친환경 인증, 환경분야 특허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의 경우 가점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1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4월까지 선정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가 진행된 후에 지원과제로 선정이 된다면, 올해 10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녹색산업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합니다.



## 환경창업대전

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 등 유망 환경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역량 강화(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를 통해 녹색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전국민, 업력 7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환경창업 아이디어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 환경창업 스타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타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을 초과한 기업
-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9년 ~ 2022년 기 수상자(팀원포함) 또는 수상아이템(특별상 수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유망 창업아이템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지원

- 창업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1:1 컨설팅
  - 시장검증 프로그램(창업아이템 종합 및 진단 등)
  - 투자유치 역량강화(IR자료 제작 및 고도화, 실전 IR 등)

## 신청·접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한 공고 및 지원서류 온라인 신청·접수('23.3월 예정)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2, 670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032-540-2133)



## Q&A

**Q** 모집부문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이시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의 경우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만 참가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도전! K-스타트업** : 환경부, 중기부, 교육부 등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 포상하고 창업 후속 지원함.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개척까지 전 과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녹색산업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제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창업·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기술 로드맵 및 특허전략(IP-R&amp;D) 수립지원</li> <li>◦ 기업 수요중심의 실증화 R&amp;D지원</li> <li>◦ 기술개발 협업 파트너 매칭</li> <li>◦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li> <li>◦ 원료공급 및 실증연구 장소 제공</li> <li>◦ 일자리 박람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경영 컨설팅 지원</li> <li>◦ 오픈이노베이션 연구회 지원</li> <li>◦ 시제품 제작 지원</li> <li>◦ 인·검증 취득 지원</li> <li>◦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li> <li>◦ 법률,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컨설팅 지원</li> <li>◦ 환경 박람회 참가 지원</li> <li>◦ SNS, 방송 등을 통한 홍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벤처센터(창업 보육센터) 설치·운영</li> </ul>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연구단지 일자리 박람회 개최('22.6월)
- ▶ ESG 경영 컨설팅 신규 지원('22.6월)
- ▶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신규 운영('22.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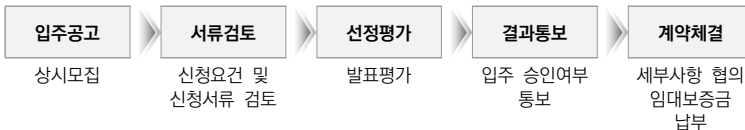
### 신청·접수

- 환경산업연구단지 포털 홈페이지([www.etechhive.or.kr](http://www.etechhiv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점 평가하여 최종점수 70점 이상의 기업 선정

### 선정절차



### 입주기간

- (일반기업) 최초 4년까지 입주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
- (벤처기업)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최대 4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 시설

구분		전용면적(㎡)	개수	임대사용료		주요용도
				임대료	관리비	
연구 실험동 (A,B, C)	연구사무실	75~100㎡	76실	5,790원/㎡·월	4,820원/㎡·월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전용실험실	75㎡ 내외	50실			
본부동	벤처사무실	50㎡ 내외	33실	4,050원/㎡·월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사무공간
연구 시설 부지	파일럿 테스트시설	110㎡ 내외	55실	4,280원/㎡·월	1,100원/㎡·월	8개 실험분야 파일럿플랜트
	테스트베드	최소 306㎡ 사용	-	1,540원/㎡·월	70원/㎡·월	실증실험 부지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7)
- (일반기업 입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주기업지원실(032-540-2223)
- (벤처기업 입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주기업지원실(032-540-2211)



## Q&A

**Q**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의 업력과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에게는 20~30평의 사무실, 실험실, 실증실험 공간이, 벤처 기업에게는 13평 내외의 사무실이 제공됩니다. 벤처기업이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서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Q** 입주 상담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담당 문의처에 전화 주신 뒤 상담 일정을 확정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실, 평가 일정, 입주기업 지원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창업보육센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부터 지정받아 창업초기기업(예비 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공간을 말함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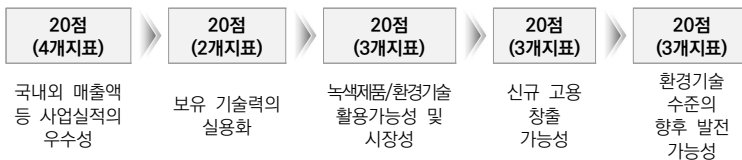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하여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 지정기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현장조사 및 최종심의  
\* 심사위원회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 신청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 이익을 초과한 경우 등

##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역
브랜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매체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홍보</li> <li>• 우수환경산업체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li> </ul>
국내·외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환경박람회 환경기업 홍보관 운영</li> <li>•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연결 지원</li> <li>• 환경기업 및 기술 홍보영상 제작 지원</li> </ul>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술개발, 금융, 수출, 고용 등 지원사업 연계</li> <li>•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 입주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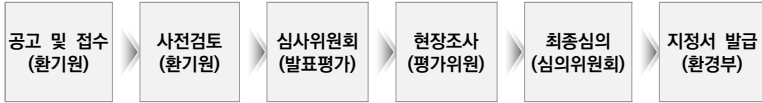
## 공고·접수

- 공고 기간 내 평가관리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http://www.konetic.or.kr/scale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신청서(1부)
- 사업현황 설명자료(1부), 사업자등록증(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부)사업현황 설명자료(1부), 사업자등록증(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부)
-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공고일 기준 전월말, 전년·전전년 가입명부 1부)
- 수출거래 실적증명서, 지식재산권, 납품실적 등 기타 증빙서류 (해당기업)
- 환경신기술 인증서 등 가점항목 증빙서류(해당기업)

## 처리절차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02-2284-1715 / 02-2284-1722  
이메일 : sjha529@keiti.re.kr / cb.kang@keiti.re.kr



##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지원

환경일 자리를 창출한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 표창 수여 및 근로환경개선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이면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인 기업
-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최근 3년 이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기업
-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납이 있는 기업
- ▶ 근로기준, 산업안전, 장애인 의무 고용, 공정거래 등 법 위반 기업
-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공공부문 업종\* 기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
- ▶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기업
- ▶ 신용등급(NICE평가정보) CC+이하 등급 기업

## 지원내용

- 환경부장관표창(10개 기업), 근로환경개선비

## 신청·접수

- 사업화 지원사업 홈페이지(support.keiti.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담당자 02-2284-1717  
※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사업화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Q&A

**Q**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무엇인가요?

**A** 양질의 일자리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환경산업계의 인식을 확산 시키고자 2018년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업의 고용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업 성장성, 환경개선 기여, 사회적 가치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Q** 1명 이상만 채용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 증가율이 3% 이상 되면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 이상,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래환경산업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게 시설설치와 경영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등\*
  - 중소·중견기업인 환경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비·장치 등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 환경표지 인증제품,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참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
- ▶ 과거 1년간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 등

### 지원내용

- 환경산업 시설설치 및 성장기반 자금
  - (시설설치자금) 국내 환경산업체가 제조,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사업장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구축 자금

- (성장기반자금)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내 사업장 가동·운전 및 해외 현지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필요 자금

\* 해외 현지 공장, 현지 제조현장이 아닌, 납품영업·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사업소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성장기반자금의 적용 금리 변동(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고정금리)

구분	지원분야/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 산업	시설설치자금/ 1,700억 원	80억 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성장기반자금/ 1,000억 원	20억 원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분기별 고정금리

\* 환경정책자금 대출금리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용자금 지원 조건(환경부 고시)」 [별표] 참조

-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 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시설 및 장치로써 부속장치와 부대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오염방지시설자금의 적용 금리 변동(분기별 고정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구분	지원분야/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녹색 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1,000억 원	80억 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 환경정책자금 대출금리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용자금 지원 조건(환경부 고시)」 [별표] 참조

## 신청·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onetic.or.kr/loan](http://www.konetic.or.kr/loan))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32-540-2176~2181)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http://www.konetic.or.kr/loan))



## Q&A

**Q** 환경산업체란 어떤 기업인가요?

**A** 통계청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및 환경부 물산업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말하며,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고객센터'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비싸서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는 무엇인가요?

**A** 환경정책자금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은행의 담보심사, 채권보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 환경정책자금 대출 용자승인 시 여신심사통과 가능성 및 예상 대출 규모, 담보 준비 등에 대한 상담 후,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은행(영업점)의 확인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어 설명

**대출금리**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용자금 지원 조건(환경부 고시)」 [별표]에서  
용자사업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로의 교체·신설 비용(설계, 부대시설 및 기존 시설 철거비 포함)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로의 교체·신설 비용(설계, 부대시설 및 기존 시설 철거비 포함)
  - \* (필수요건) 지원 대상시설과 함께 ‘계량기·계측기’ 반드시 설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참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
- ▶ 과거 1년간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 등

###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 설비·장비 및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온실가스 감축) 등 경제활동

- (대상시설)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 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기기, 연료전환, 가열로 및 열처리로, 공정개선, 공정가스 설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폐기물전처리 장치, 유체커플링, 온실가스 포집기술,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열분해시설,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 장치 등
- (경제활동)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분(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부문(순환경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 세부 지원범위는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참조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을 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지원분야/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온실 가스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1,000억 원	80억 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 환경정책자금 대출금리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 조건(환경부 고시)」, [별표] 참조

## 신청·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onetic.or.kr/loan](http://www.konetic.or.kr/loan))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32-540-2176~2181)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http://www.konetic.or.kr/loan))



## Q&A

**Q**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은 무엇인가요?

**A**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Q**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비싸서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는 무엇인가요?

**A** 환경정책자금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은행의 담보심사, 채권보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주거래은행 등을 통해 환경정책자금 대출 용자승인 시 여신심사통과 가능성 및 예상 대출규모, 담보 준비 등에 대한 상담 후,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에 은행(영업점)의 확인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어 설명

**녹색분류체계**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대출금리**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용자금 지원 조건(환경부 고시)」 [별표]에서 용자사업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개선·산업전환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 등\*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내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설비 자금
  -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자

###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개선·산업전환 등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 일반시설자금 대출금리 - 우대금리\*(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50% 부담)

● 기업규모별 우대금리 안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최대 3.0%	최대 2.8%	최대 2.6%

- (지원비율) 계획사업 소요자금 중 지원분야 대상 설비의 비중에 따라 차등적용

소요자금 중 지원분야 설치비용 비중	소요자금 지원비율
20% 이상	소요자금 100% 지원 가능
20% 미만	지원가능비율 = 지원분야 대상설비 비중 ÷ 20%

- (기타) 대출 기간 및 대출 한도 등은 참여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 신청·접수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참여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자금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필요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32-540-2176~2181)



## Q&A

**Q** 이차보전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정책기관에서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이차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은 무엇인가요?

**A**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Q** 우대금리와 대출가능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원 대상 대출상품 신청서와 온실가스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면, 온실가스 검증기관에서 확인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대금리와 대출 가능한 상한금액을 결정합니다.

### 용어 설명

**녹색분류체계**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우대금리** : 금융기관이 대출금리 결정 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출상품에서 감면하는 금리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 소 분야의 기술을 보유중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일 때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일 때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8개월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
    - ※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80%, 민간 20%으로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분야)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물, 기후대응, 일반환경 등 환경 쏘 분야
    - ※ 세부 기술분야는 공고문 참조
  -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전략 컨설팅</li> <li>■ 기술컨설팅</li> <li>■ 경영컨설팅</li> </ul>	최대 0.5억 원
	② 기술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지도</li> </ul>	최대 1억 원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li> </ul>	최대 2억 원
	④ 인·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인증 취득비용</li> </ul>	최대 1억 원
⑤ 시장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마케팅 소요자금</li> <li>■ 자금유치 컨설팅</li> </ul>	최대 0.5억 원

※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 최대 3억 원

- (지원요건) ‘시제품 제작’, ‘인·검증’ 프로그램은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R&D 성공 증빙 또는 특허출원 이상) 필요
-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2년 이내(1차년도 지원 후 연차평가를 거쳐 2차년도 지원)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
  - (지원분야) 바이오가스, 초순수 및 물부품, 환경AI·ICT, 자원순환, 기후테크 등 5대 녹색신산업
    - ※ 세부 기술분야는 공고문 참조

-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세부내용) 상동,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은 연간 3억 원(2년 총 지원금 최대 6억 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세부사업 조정(상용화 지원사업 종료 및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개시)

## 신청·접수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http://www.konetic.or.kr/scaleup))
  - \* 사업 세부내용 및 사업 신청·접수는 공고문 참조('23.01월 중 공고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공고 내용에 부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적합여부 검토
- (선정평가) 서면평가(필요시) → 발표평가 → 최종선정평가
-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진필요성, 추진체계, 수행역량, 추진방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032-540-2186 ~ 2193)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http://www.konetic.or.kr/scaleup))



##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종 업계가 모여 있는 조합·협회 단위로 업종 및 기업별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단, 조합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만 가능)
  - (주관기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회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이 휴먼상태, 해산건의,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 세금 체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참여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의 친환경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진단으로 개선이 필요한 주요 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조합협회 단위 맞춤형 환경 컨설팅 제공
  - (ESG 컨설팅)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원 절약, 환경경영 체계구축 등
  - (ESG 멘토링) 멘토-멘티 연결을 통해 환경경영 노하우 전파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타지원사업(스마트 생태공장) 소요 사전파악 및 시범지원(예정)

## 신청·접수

- (공고) 매년 상반기 공고 및 접수(연 1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처리절차) 적격여부 기반 선정평가로 지원 조합·협회 선정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TF 02-2284-1961



##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사업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및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상기술
  -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기술
- 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및 기술검증 검증수수료(현장평가비용)의 지원(VAT 제외)
  - (신기술인증)「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1차 심사)의 현장조사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시험·분석비용의 70% 이내 금액(단,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원

- (기술검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별표7],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평가수수료 및 측정분석비(검증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금액(단,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원

- \* 탄소저감성능(포집, 활용, 저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수수료 및 시험·분석 비용 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비용 산정기준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 정부로부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의 경우, 정부 지원금(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환경신기술인·검증 지원금을 합하여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탄소중립기술 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환경기술검증 지원금 등을 합하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 측의 사유로 중도 취하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 ▶ 탄소저감성능(포집, 활용, 저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수수료 및 시험·분석 비용 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신청·접수

- 지원시기
  - (신기술인증) 신기술인증 2차 심사 완료 후, 지원대상자가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 비용을 납부한 증빙자료와 함께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 (기술검증) 지원대상자가 기술검증 현장평가 협약을 체결한 후 평가 수수료와 측정 분석비를 납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검증 수수료 지원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044-201-667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02-2284-1643



##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R&D)사업 성과 및 탄소중립 기여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로 기업의 초기 시장 창출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패스트트랙 I, FT1)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대학·출연(연)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신청 가능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패스트트랙 III, FT3)
    - [혁신성 인정 제품]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및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 제품
- \* 녹색제품 :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제품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업 등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된 경우
- ▶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패스트 트랙Ⅲ 의무)
- ▶ 이미 패스트트랙 I~Ⅲ에 지정/접수된 경우
- ▶ 동일 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 ▶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신청·선정)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의 경우는 공급 기업과의 공동 협약서 필요

###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및 탄소저감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수의계약 체결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구매자 면책 :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매 여건 개선
- 시범구매사업 참여 : 수요 매칭을 통해 조달청/환경부 예산으로 혁신제품 구매, 수요기관에 제공하여 시범 사용
- 우수조달물품 신청 자격 특례 적용 : 시범구매사업 참여를 통해 매칭된 기관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혁신성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일 시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특례 적용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혁신제품 지정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과 자문위원 간 1:1 자문(컨설팅) 운영 중
- \* 자문을 위한 별도 소요 비용은 없으며, 기업에서 희망 시 진행

## 신청 · 접수

### 신청방법·기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 3회(3월, 6월, 9월) 공고

### 지정 제도 절차

- ①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기업) → ② 혁신제품 공고·접수 → ③ 서류평가(조달적합성) → ④ 혁신성 평가(FT1) 또는 사전심의(FT3) → ⑤ 총괄조정(FT1) 또는 공공성 평가(FT3) → ⑥ 평가 결과 통보 → ⑦ 심의예정 공고 → ⑧ 인증서 발급 → ⑨ 지정 정보 통보 및 전자조달 등록 → ⑩ 지정제품 사후관리

※ (FT1) 혁신성 발표평가 후 현장평가

※ (FT3) 사전심의 발표평가 후 조달연구원 공공성 평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준) 혁신성(40점),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30점),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30점)
- (현장평가) 제품의 성능, 공장/생산시설현황, 생산실태, 품질 경영체제 등 현장 확인
- (총괄조정) 기술의 혁신성 인정, 현장평가 통과한 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 여부 최종 의결

### 처리기간

- 지정 신청부터 지정 인증서 발급까지 약 3개월 소요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02-2284-1622/1629



## Q&A

Q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동시에신청할 수 있나요?

A

혁신제품 제도는 부처별로 운영하지만, 지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부처별 중복 지정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Q

우수조달제품도 혁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 모두 기재부 총괄로 혜택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우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 후에는 우수제품 신청 필수서류(조달청장명의 실증결과 성공 판정 시 품질 자료)가 면제됩니다.

Q

혁신제품 지정 이후에 제품 추가가 가능한가요?

A

지정받은 혁신제품과 주요 성능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물품추가 신청 및 현장평가 진행 후 추가지정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과 환경규제에 맞도록 현지 기관(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변형·개조하고 이를 실증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준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 세금납부 불이행자(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사업책임자,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
-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로 3개 이상의 과제를 기수행 하고 있는 경우(종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과제는 제외)
- ▶ 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국가에서 동일한 분야로 1건 이상의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종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과제는 제외)
- ▶ 기존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를 수정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
-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 ※ 대기질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자원순환, 토양·지하수복원·관리, 측정분석장비·장치, 소음·진동관리, 친환경 소재·제품, 생태계 복원/관리, 위해성평가/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공정, 청정생산/설비
- 지원대상국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기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단년도 또는 다년도 택1)

사업 구분	사업 기간	지원내용	지원 금액	비고
단년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해외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li> <li>▶ 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li> <li>▶ 시제품 운송, 현지설치, 운전</li> <li>▶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li> </ul>	최대 5억원	당해연도에 현지실증화 가능 업체
다년도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해외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li> <li>▶ 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등 비용</li> <li>▶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li> </ul>	최대 5억원	1단계 사업 종료 후 중간평가 실시하여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1단계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운송, 현지설치, 운전</li> <li>▶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li> </ul>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장비의 유형(설비 vs. 측정장치) 및 진출국 성격(선진국 vs. 개도국)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 상이(과제당 3억~5억, 선정평가시 검토)
- ▶ 단년도 단계별(1단계, 2단계) 지원사업에서 단년도 및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변경
- ▶ 단년도 사업은 1~2 단계를 통합하여 1년이내 신청 가능(1단계+2단계 지원금액 한도)

##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연간 1회(12~1월)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로그인 후, 좌측의 메뉴 [사업신청-신청계획서 입력/조회]로 들어가 우측 상단의 신규과제신청 클릭

- ▶ 사업신청시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사전에 과학기술인 등록 필요 (<http://ecoplus.keiti.re.kr>)
- ▶ 진출대상국 현지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현지 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 ▶ 상대국 위탁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추진 계획 등)
- ▶ 현지사업화 가능성(현지수요 및 시장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후속사업 파급효과)
- ▶ 사업수행능력(책임자의 수행관리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 사업비 설정 및 집행(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77, 1779



## Q&A

**Q** 국제공동사업 진출대상국 기관이 반드시 위탁으로만 참여해야 하나?

**A**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에 밝은 현지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제관리 및 지적재산권 소유 등을 감안하여 국내기관이 수행기업으로, 진출대상국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시 위탁기관과의 MOU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국내기관의 경우도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까?

**A**

현지 사업화 대상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된 기술이므로 기술 개발 등의 이유로 국내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행기업 이외에 국내 다른 기업이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

수혜국 지역주민들의 경제, 사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환경기술 보급 지원을 통해 한국형 적정기술 전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수혜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 강화 노후자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

### 지원내용

- 한국형 적정기술 전파와 수혜국 보건·환경 개선이 가능한 개도국 수요에 맞는 환경 특화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 (분야) 물, 정수, 폐기물, 보건·위생, 생태환경,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등
  - (규모) 과제당 2억원 내외
  - ※ 세부내용은 공모문 확인



##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 내 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02-2284-1774

### 용어 설명

**환경적정기술** : 낙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로 해당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여건에 맞는 기술



##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무역 전문가 및 전문법인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환경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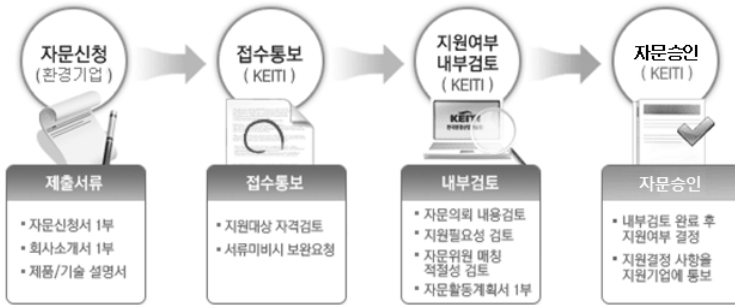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수출애로사항 온·오프라인 상담
  - 온라인(www.konetic.or.kr)·오프라인(현장방문/내원상담) 모든 상담창구 상시 운용을 통한 One -Stop 상담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자문단을 통한 종합무역컨설팅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무역전반의 애로사항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실무 무역전문가 및 전문법인의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지원단 구성	국내의 무역전문가 78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관세법인 더블유 다인합동관세사무소
자문 분야	· 해외시장개척, 온라인 마케팅, 무역실무 · 계약서검토, 기술 도입·이전 · 외환·무역금융, 해외투자, 국제입찰	· 해외진출 관련 기업법무 자문 · 매매·대리점, 독점·플랜트, 비밀유지 계약 등 각종 계약서 검토	· 해외진출 관련 FTA 전문 컨설팅 · AEO인증취득, 수출입 리스크관리 등 자문 · 통관·관세·환급

## 신청·접수

- 상시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www.konetic.or.kr) 접속 ⇨ 회원가입 ⇨ 해외진출 컨설팅 ⇨ 신청하기
- 접수 절차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78, 1776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www.konetic.or.kr)



## Q&A

**Q**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수출현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 시 보다 빠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소개자료 또는 제품브로셔 업로드 필수)



##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

수출에 특화된 글로벌 종합무역상사의 네트워크를 중소환경기업에 공유하여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성사까지 밀착지원하는 원-원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환경 신산업(순환경제,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절감분야 지정 지원 (예정)
  - ※ 무형산업 및 B2C 제품은 바이어 매칭·사업 확장성이 낮아 지원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 국제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 국가개발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중에 있는 경우
- ▶ 학회, 협회 등 단체
- ▶ 기업채무 불이행 등이 확인된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정지 또는 중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 동일과제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 ▶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하여 현지 네트워크 제공·바이어 발굴을 통한 해외 환경조달시장 참여
- 지원유형
  - (수요지정형) 시의성 있는 현지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발굴한 수요를 공고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
  - (기업발굴형)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과 수출계획을 수립한 중소환경기업이 종합무역상사의 진출지역·지사를 선택하여 참여
  - (공공조달형) 정부주도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출 및 국제기구 등 공공조달시장의 제한경쟁 입찰 참여계획이 수립된 기업을 선정
- 사업분야 및 정부지원금
  - (사업분야) 환경 전 분야
    - ※ 환경신산업(순환경제,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절감 분야 지정 지원(예정)
  - (정부지원금) 기업 별 연간 최대 4~8천만 원 지급(정부지원금 80%, 민간부담금 20%)
- 지원내용
  - (수요지정형 및 기업발굴형) 규격취득비, 성능평가비, 샘플 제작 운송비, 마케팅비, 신규인력 육성보조, 현지활동비, 통·번역비 등
  - (공공조달형) 입찰참여·보증비, 현지활동비, 통·번역비, 현지법인 설립 서류대행비 일부 등
- 선정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신청기업 발표 및 패널평가

##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 내 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본관3층)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과 044-201-6709, 670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02-2284-1775, 1786



## Q&A

Q

지원유형별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A

수요지정형 및 기업발굴형은 제품과 상품의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글로벌중합무역상사와 함께 과제를 추진합니다. 과제 수행은 2개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조달형의 경우 프로젝트 입찰 참가 계획이 있는 기업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단년도로 수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순환경제(MR, Mechanical Recycling)** : 정제 과정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으로 재생하는 공정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

**순환경제(CR, Chemical Recycling)** : 분리작업 없이 플라스틱의 화학구조를 변화시켜 원료로 재생하는 공정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

**바이오매스** : 음식물, 분뇨, 폐농축산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공정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 세계 유망 환경시장을 보유한 국가의 책임자(의사결정자)와 유력 발주처를 초청하여 국내 환경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수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 수주 유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발주처의 의사결정자 및 발주책임자
  - ▶ 1순위 : 국내업체 초청 희망 발주처 및 기존 연관 사업 참가 발주처로 수주계약 체결 대상
  - ▶ 2순위 : 수주가능성, 규모, 초청자의 적정성이 검증된 발주처, EPC, Developer
  - ▶ 3순위 : 대형 프로젝트 발주처, 글로벌 기업,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 ▶ 4순위 : 민간 프로젝트 발주처, 설비 및 기자재 수입 희망 바이어

### 지원내용

- (정기상담회)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초청 왕복 항공임, 숙박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통역) 등
- (상시상담회) 왕복 항공임, 숙박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통역) 등

## 신청·접수

---

- 우선 초청 대상자
  - (공공) 유력 환경프로젝트 발주처 책임자 및 의사결정자
  - (민간) 현지 주요 환경프로젝트 관련 기업(EPC 등) 책임자 및 의사결정자
  - (기타) 현지 주요 환경프로젝트 관련 국제기구, 원조·차관사업 책임자
- 초청자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프로젝트 규모, 협력 의지 등

## 문의처

---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65, 1754





## 탄소중립, 그린 ODA 사업(프로젝트 ODA)

개도국 녹색회복 및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기후환경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ODA 신설하였고, 수원국 환경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특정시설, 인프라구축 및 기자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산업체
  - 제품, 시설,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등

### 지원내용

- 수질, 수량, 댐&홍수 관리, 수력발전 등 물 관리 및 폐기물, 대기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분야 전반
  - ODA 수원국, 한국 정부 외교정책(신남방, 신북방, 중점협력국) 위주
- 사업당 약 50~100억 지원
  - ※ 사업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접수

- (수행기업) 매년 상반기
  - ※ 2023년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향후 지침 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처

- 환경부 국제협력과 ☎ 044-201-6564, 656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7, 1762



##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및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산업체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
  -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불이행 또는 참여제한 중인 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평가 시 감점사항으로 반영
- ▶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의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비 지원(프로젝트 당 약 6~9억원)
  - ※사업 대상국가, 지역 및 범위에 따라 상이

## 신청·접수

---

- (수행기업) 매년 1~2월 경(4주 이내)
  - 환기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마감기한 내 제출서류 방문 제출
  - \* 수행기업 공고는 대상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7, 1762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환경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의 현지 적용가능성 등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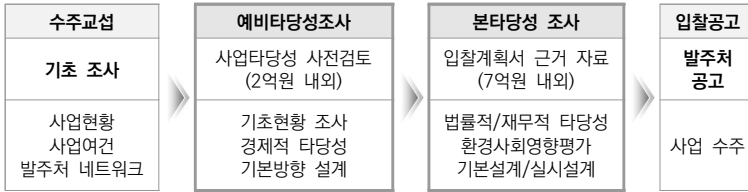
- 환경산업체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인 경우(신청기업)
  -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경우
  -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제안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2억원 내외, 본 타당성조사 7억원 내외의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견/중소+대기업 60%)



\* 정부간 협의에 의한 지정공모의 경우 전액 지원 가능

## 신청 · 접수

- 매년 1~2월 경(정기, 4주이내), 필요시 상시공고
- 본타당성조사 상시접수 가능
  -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발생 등 필요시 상시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 후, 공고기간 내 제출서류(신청서, 제안서 등) 방문 접수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0,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6, 1766, 1768



## 다자개발은행(MDB)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

MDB 재원 지원 가능성이 큰 개도국 친환경·저탄소 프로젝트 발굴,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 제고

### 지원대상

- 컨설팅, 환경산업체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 세금납부 불이행자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 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술원과 MDB 공동으로 발굴한 기후·환경분야 협력사업 기본 계획 수립 지원 (프로젝트당 4억원 내외)
- MDB 환경프로젝트 발주처 네트워킹 지원 (온·오프라인 워크숍 및 세미나 등)

## 신청·접수

---

- (수행기관) 매년 1~2월 경(4주이내)
  - 환기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마감기한 내 제출서류 방문 제출
  - 매년 1~2월 경(정기, 4주이내), 필요시 상시공고

## 문의처

---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8, 1761



## 환경산업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국내 중소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해외환경정보 제공,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등) 제공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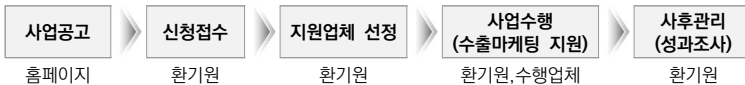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환경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등) 내 홍보물 등록(기술·제품 상세페이지 등) 및 홍보 확대(키워드, 페이지 링크 등)
기업 홍보물 제작·개선	우수 환경기업의 기술·제품 홍보 영상, 리플렛 등 신규 제작 및 개선으로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될 콘텐츠 제작
기업 홍보물 번역	진출 희망 국가의 언어로 기업 홍보물 번역 등

### 지원절차





## 문의처

---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65, 1754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사업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 확대를 막기위해 조성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후기금(GCF, AF 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후환경기업의 사업제안서 혹은 부속서류 등의 사업 개발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산업단체 등
  -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기후 변화대응사업 개발에 관심있는 기업·기관
  - \* 중점지원분야 : 온실가스 저감/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 부문
    - ▶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림·토지 이용, 기후적응 인프라 개발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개발사업에서 해약, 중단, 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 국제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 기타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혹은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에 제한을 받는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GCF·AF 등의 기후기금 추진에 필요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원

구 분	세부구분	지원금액
초기사업개발	Readiness 요청서 작성	5천만원 이내
	PPF 요청서 작성	5천만원 이내
	컨셉노트 작성	1억원 이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1억원 이내
본사업개발	사업제안서 작성	2억원 이내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3억원 이내
	부속서류 작성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2억원 이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1개 과제별 1개 분야(컨셉노트 혹은 예비타당성 중 택 1) 지원가능

## 신청·접수

- 연간 1~2회 자유 및 지정 공모를 통한 신청
  - \* 자유공모 : 기후기금사업 관련 기업이 발굴한 사업
  - \* 지정공모 ; 환기원 혹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개발 수행기관 선정

## 문의처

- 환경부 국제협력과 ☎ 044-201-656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 02-2284-1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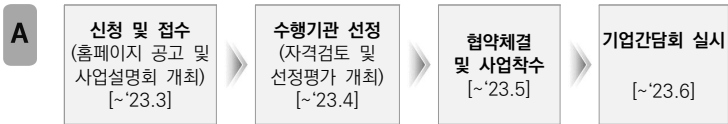


## Q&A

**Q** 본사업개발에 지원하고 싶은데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본사업개발 부분은 사업제안서/타당성조사/부속서류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에 필요한 부분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초기사업 0.5억~1억, 본사업 1억~3억입니다.

**Q** 협약체결까지의 주요 사업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향후 사업계약 및 진행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용어 설명

- **GCF** : 녹색기후기금, 개도국/군소도서국 대상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 지원 128개국 200개프로젝트(\$402억) 지원 중, 증여/비증여 형태 운영 가능
- **AF** : 적응기금,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CDM을 통해 발행된 인증서(CER)지분의 2%가 재원, 증여(grant) 형태 운영

##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

발행년월 : 2023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세종시 가림로 180 (어진동666)

전화 : (044)204-7477

팩스 : (044)204-7479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http://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원사업 검색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앱스토어 '기업마당')



기업민원(사업내용 변경, 시험·인증·실적 증명서 발급)을  
기관 방문없이 처리하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www.g4b.go.kr)



기업애로해결은 국번없이  
1357 (월~금, 09:00~18:00)